

정책보고서 97-11, 270쪽, 1,000부

障礙人·老人을 위한 便宜施設 擴充方案

朴純一 權善進
全學錫 金成禧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급속한 經濟發展과 더불어 각종 건물과 시설 그리고 경제·사회적 활동은 증대하여 왔다. 그러나 건물 및 시설의 증가는 일반인에게도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老人·障礙人·妊産婦 등 거동 취약계층에게는 시설물과의 接近조차 용이하지 않고 접근해서도 내부 구조상 활동을 크게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각종 建物이나 内部設備가 一般人만을 고려한 설계에서 이루어지고, 거동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극히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公共建物을 중심으로 障礙人과 老人 등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便宜施設이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왔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障礙人·老人·妊産婦 등의 便宜增進 保障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이들의 원활한 社會活動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便宜增進을 위한 구체적인 方案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社會參與 增進方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편의시설의 공급 및 수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여 기존 대상시설 이용의 편의증진 방안과 앞으로의 편의시설 설치확대 방향, 그리고 便宜施設設置基金의 운영방향 등 효율적인 便宜增進方案을 모색코자 하였다.

本 研究는 便宜施設에 대한 법적 검토, 전국자료를 이용한 편의시설 공급실태 및 登錄障礙人의 시·도 및 시·군·구별 분포의 분석,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의 이용실태 및 욕구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29개의 주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近隣生

活施設, 公共業務施設, 事業場으로 나누어 편의시설 설치실태, 개선필요도 및 설치 優先順位를 분석하여 支援方案을 제시하였다.

本 報告書는 本 院의 朴純一 연구위원과 權善進 책임연구원, 全學錫 책임연구원 및 金成禧 주임연구원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이들 研究陣의 구체적인 담당분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便宜増進法の 內容과 意義(朴純一)

障礙人便宜施設 供給實態 및 現況(朴純一)

障礙人の 便宜施設 利用實態 및 欲求(權善進·全學錫·金成禧)

便宜施設 擴充 및 便宜増進 方案(朴純一·權善進·全學錫·金成禧)

이와 함께 專門家の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청각장애자협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체육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 시민모임, 도로교통안전협회의 諮問과 助言을 반영하였으며 研究陣은 이들의 협조에 謝意를 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의 편의시설 실태 및 관련자료를 제공해 준 保健福祉部 再活支援課 신꽃시계 사무관과 登錄障礙人 전산화일을 분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國立再活院 및 총무처의 관계자에게도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障礙人·老人·妊産婦의 便宜増進 保障에 관한 法律』의 1997년 통과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본격적인 편의시설의 설치확대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參考資料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研究陣의 의견이며, 본 研究院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1997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 長 延 河 清

目次

要約	15
第1章 序論	28
第1節 必要性 및 目的	28
第2節 研究方法	28
第2章 便宜増進法の 内容과 意義	32
第1節 ‘便宜増進保障에 관한 法律’의 内容	32
第2節 便宜施設 關聯 制度의 國際比較	34
第3章 障碍人 便宜施設 供給實態 및 現況	42
第1節 便宜施設 供給實態	42
第2節 障碍人의 類型別 및 地域別 分布	48
第4章 障碍人의 便宜施設 利用實態 및 欲求	69
第1節 障碍人 便宜施設에 대한 欲求調査	69
第2節 調査對象 障碍人의 社會經濟的 背景	74
第3節 障碍人의 對象施設에 대한 欲求現況 分析	78
第4節 對象施設別 利用實態 및 欲求	85
第5節 障碍人 便宜施設 需給實態 및 優先順位 分析	164
第5章 便宜施設 擴充 및 便宜増進 方案	190
第1節 便宜施設 政策決定의 基本原則	190
第2節 便宜施設 擴充 및 便宜増進方案	198

第 3 節 對象施設別 便宜施設 改善方案	207
參考文獻	211
附 錄	215
附錄 1. 우리나라의 對象施設別 便宜施設設置 義務·勸告事項과 地域別 障礙人 便宜施設 供給實態	216
附錄 2. 障礙人·老人·妊産婦 等の 便宜増進保障에 관한 法律案(代案)	220
附錄 3. 1997年 全國 市·郡·區의 登録障礙人數 分布	234
附錄 4. 障礙類型·對象施設別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239
附錄 5. 障礙人의 便宜施設에 대한 欲求調査 調査票	245

表 目 次

〈表 2- 1〉 便宜施設 基準 項目別 國際比較	39
〈表 3- 1〉 障礙人 便宜施設設置 推移	42
〈表 3- 2〉 對象施設의 便宜施設 設置比率(1996年)	44
〈表 3- 3〉 便宜施設 種類別 設置比率(1996年)	46
〈表 3- 4〉 15個 市道의 主要 便宜施設의 設置比率	47
〈表 3- 5〉 登録障礙人의 類型 및 性別 分布(1995年)	49
〈表 3- 6〉 市·道別 障礙類型別 登録障礙人의 必要 補裝具	50
〈表 3- 7〉 登録 肢體障礙人의 障礙等級別 分布(1995年)	51

〈表 3- 8〉	重複障碍人의 分布	53
〈表 3- 9〉	障碍類型別 學歷水準	54
〈表 3-10〉	障碍類型別 職業 및 就業狀態 分布	55
〈表 3-11〉	障碍類型別 所得水準 分布	55
〈表 3-12〉	障碍類型別 社會保障 加入形態 分布	56
〈表 3-13〉	障碍類型別 要望事項 分布	56
〈表 3-14〉	登録障碍人 市·道 地域別 分布(1995年)	58
〈表 3-15〉	地域別 登録障碍人 分布 比率(1995年)	59
〈表 3-16〉	市·道地域의 年齡別 登録障碍人 分布	60
〈表 3-17〉	障碍人口比率이 1.0% 以上인 市·郡·區의 登録障碍人數 分布	63
〈表 3-18〉	全國 市·郡·區의 登録障碍人數 分布(1995年)	63
〈表 3-19〉	地域別 肢體障碍等級의 分布	65
〈表 3-20〉	市·道別 重症 障碍人의 分布	66
〈表 3-21〉	登録障碍人의 必要 補裝具	68
〈表 4- 1〉	調査對象 障碍人의 外出時 必要 補裝具	70
〈表 4- 2〉	調査對象 障碍人의 障碍類型別 分布	74
〈表 4- 3〉	調査對象 障碍人의 障碍等級 分布	75
〈表 4- 4〉	調査對象 障碍人의 年齡別 分布	75
〈表 4- 5〉	調査對象 障碍人의 學歷別 分布	75
〈表 4- 6〉	調査對象 障碍人의 家口規模別 分布	76
〈表 4- 7〉	調査對象 障碍人의 結婚狀態別 分布	76
〈表 4- 8〉	調査對象 障碍人의 家口所得 水準別 分布	77
〈表 4- 9〉	調査對象 障碍人의 無職 理由	77
〈表 4-10〉	調査對象 障碍人의 住居形態	78
〈表 4-11〉	調査對象 障碍人의 住宅保有 形態	78

〈表 4-12〉	調査對象 障碍人の 障碍部位 分布	79
〈表 4-13〉	調査對象 障碍人の 學校 및 職場 以外の 外出 目的	80
〈表 4-14〉	調査對象 障碍人の 外出頻度(學校 및 職場 除外)	81
〈表 4-15〉	便宜施設이 가장 잘된 對象施設	83
〈表 4-16〉	便宜施設이 가장 必要한 對象施設	84
〈表 4-17〉	交通施設の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86
〈表 4-18〉	地下鐵·鐵道 驛舍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88
〈表 4-19〉	버스터미널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89
〈表 4-20〉	地下鐵·鐵道·電鐵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90
〈表 4-21〉	電鐵·鐵道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91
〈表 4-22〉	버스·택시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92
〈表 4-23〉	主로 利用하는 道路의 便宜施設 設置度	93
〈表 4-24〉	主로 利用하는 道路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94
〈表 4-25〉	主로 利用하는 道路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94
〈表 4-26〉	公共業務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現況	95
〈表 4-27〉	公共業務施設(市·郡·區廳)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	96
〈表 4-28〉	公共業務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97
〈表 4-29〉	近隣公共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現況	98
〈表 4-30〉	近隣公共施設の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100
〈表 4-31〉	近隣公共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00
〈表 4-32〉	住居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程度	103
〈表 4-33〉	住居施設の 便宜施設 改善 必要 程度	104
〈表 4-34〉	住居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05
〈表 4-35〉	住居施設の 便宜増進 方案	106
〈表 4-36〉	슈퍼마켓·藥局·理·美容室의 便宜施設 設置 程度	108
〈表 4-37〉	슈퍼마켓·藥局·理·美容室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 程度 ..	109

〈表 4-38〉 슈퍼마켓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10
〈表 4-39〉 藥局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11
〈表 4-40〉 理·美容室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12
〈表 4-41〉 銀行의 便宜施設 設置 程度	113
〈表 4-42〉 銀行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 程度	115
〈表 4-43〉 銀行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16
〈表 4-44〉 市場의 便宜施設 設置 程度	117
〈表 4-45〉 市場의 便宜施設 改善必要 程度	118
〈表 4-46〉 市場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19
〈表 4-47〉 公衆沐浴湯의 便宜施設 設置程度	121
〈表 4-48〉 公衆沐浴湯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 程度	122
〈表 4-49〉 公衆沐浴湯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23
〈表 4-50〉 食堂·커피숍의 便宜施設 設置程度	124
〈表 4-51〉 食堂·커피숍의 便宜施設 改善必要 程度	125
〈表 4-52〉 食堂·커피숍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26
〈表 4-53〉 主要 交通手段	128
〈表 4-54〉 就業障碍人の 就業職種	129
〈表 4-55〉 就業障碍人の 就業類型(自營業 與否)	130
〈表 4-56〉 就業職場의 規模	130
〈表 4-57〉 就業障碍人の 主要 出退勤 手段	131
〈表 4-58〉 事業場内の 便宜施設 設置 有無	133
〈表 4-59〉 事業場内の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134
〈表 4-60〉 就業障碍人の 出退勤 不便與否	136
〈表 4-61〉 就業障碍人이 希望하는 不便改善 方案	136
〈表 4-62〉 醫療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現況	137
〈表 4-63〉 醫療施設의 便宜施設 設置有無	138

〈表 4-64〉	綜合病院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40
〈表 4-65〉	病·醫院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40
〈表 4-66〉	주로 利用하는 宗教施設	141
〈表 4-67〉	宗教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現況	142
〈表 4-68〉	宗教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有無	143
〈表 4-69〉	宗教施設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144
〈表 4-70〉	宗教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44
〈表 4-71〉	老人·障礙人福祉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現況	145
〈表 4-72〉	社會福祉施設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147
〈表 4-73〉	社會福祉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47
〈表 4-74〉	觀覽集會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現況	149
〈表 4-75〉	展示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現況	149
〈表 4-76〉	觀覽集會 및 展示施設의 改善 必要程度	150
〈表 4-77〉	觀覽集會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51
〈表 4-78〉	展示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51
〈表 4-79〉	運動施設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152
〈表 4-80〉	運動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53
〈表 4-81〉	運動施設의 便宜施設 設置方案	154
〈表 4-82〉	公園 및 遊園地의 便宜施設 設置 程度	156
〈表 4-83〉	公園 및 遊園地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57
〈表 4-84〉	動物園/植物園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58
〈表 4-85〉	販賣施設(3,000m ² 以上)의 便宜施設 設置 現況	159
〈表 4-86〉	販賣 및 宿泊施設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160
〈表 4-87〉	販賣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161
〈表 4-88〉	學校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現況	162
〈表 4-89〉	教育研究施設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163

〈表 4- 90〉	調查對象 障礙人의 便宜施設에 대한 滿足狀態	164
〈表 4- 91〉	對象施設別 便宜施設의 供給實態 및 必要度の 比較	166
〈表 4- 92〉	道路의 便宜施設 設置狀態 및 改善 必要度	167
〈表 4- 93〉	公共 및 文化·餘暇·販賣施設의 便宜施設 改善必要 與否	169
〈表 4- 94〉	障礙人 便宜施設의 對象施設別 優先順位 分布 (第1順位)	171
〈表 4- 95〉	障礙人 便宜施設의 對象施設別 優先順位 分布 (第2順位)	172
〈表 4- 96〉	便宜施設이 가장 必要한 對象施設의 程度	173
〈表 4- 97〉	障礙人 便宜施設의 對象施設類型別 選好程度 및 順位	174
〈表 4- 98〉	便宜施設擴充을 위한 支援方案의 選好度 比較	175
〈表 4- 99〉	障礙類型別 調查障礙人의 學校 및 職場 以外 外出目的	176
〈表 4-100〉	障礙類型別 障礙人의 便宜施設에 대한 滿足狀態	177
〈表 4-101〉	障礙類型別 便宜施設이 잘 設置된 對象施設의 選好度 比較	177
〈表 4-102〉	障礙類型別 便宜施設 設置가 必要한 對象施設의 選好度 比較	178
〈表 4-103〉	障礙類型別 便宜施設擴充 支援方案의 選好度 比較	179
〈表 4-104〉	地域間 便宜施設 設置 必要 對象施設의 比較	180
〈表 4-105〉	地域別 大衆交通 便宜增進方案 選好度の 比較	182
〈表 4-106〉	地域別 便宜施設擴充 支援方案의 選好度 比較	182
〈表 4-107〉	所得階層別 調查障礙人의 學校 및 職場 以外的 外出目的	184

〈表 4-108〉	所得階層別 便宜施設 設置가 必要한 對象施設 比較	185
〈表 4-109〉	所得階層別 便宜施設擴充을 위한 支援方案의 選好度比較	186
〈表 4-110〉	年齡別 障碍人의 學校 및 職場 以外의 外出 目的	187
〈表 4-111〉	年齡別 障碍人의 便宜施設에 대한 滿足狀態	187
〈表 4-112〉	年齡別 便宜施設 設置가 必要한 對象施設 評價 比較	188
〈表 4-113〉	年齡別 便宜施設擴充을 위한 支援方案의 選好度 比較	189
〈表 5- 1〉	事業別 投資便益	191
〈表 5- 2〉	障碍人의 活動形態別 欲求類型 例示	197

附 表 目 次

〈附表 1-1〉	우리나라의 對象施設別 便宜施設設置 義務 및 勸告事項	216
〈附表 1-2〉	便宜施設 地域別 供給實態	218
〈附表 4-1〉	地下鐵·鐵道 驛舍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障碍類型別)	239
〈附表 4-2〉	버스터미널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239
〈附表 4-3〉	電鐵·鐵道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239
〈附表 4-4〉	버스·택시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239
〈附表 4-5〉	主로 利用하는 道路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障碍類型別)	240

〈附表 4- 6〉 公共業務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障碍類型別)	240
〈附表 4- 7〉 近隣公共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障碍類型別)	240
〈附表 4- 8〉 住居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240
〈附表 4- 9〉 슈퍼마켓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241
〈附表 4-10〉 藥局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241
〈附表 4-11〉 理·美容室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	241
〈附表 4-12〉 銀行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241
〈附表 4-13〉 市場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242
〈附表 4-14〉 公衆沐浴湯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242
〈附表 4-15〉 食堂·커피숍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	242
〈附表 4-16〉 事業場 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	242
〈附表 4-17〉 綜合病院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243
〈附表 4-18〉 病·醫院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243
〈附表 4-19〉 宗教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243
〈附表 4-20〉 社會福祉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障碍類型別)	243
〈附表 4-21〉 運動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244
〈附表 4-22〉 公園/遊園地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	244
〈附表 4-23〉 動物園/植物園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障碍類型別)	244
〈附表 4-24〉 販賣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244

要約

I. 研究目的 및 方法

- 기존의 각종 建物·設備들은 대체로 일반인만을 고려한 설계이어서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 脆弱階層에 대한 배려는 극히 부족한 실정임(公共施設의 편의시설 설치율 36.8%).
- 本 研究는 거동이 불편하여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社會參與 增進方案을 모색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공급 및 수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評價·分析하였음.
 - 이를 위해 외국의 편의시설 設置基準을 검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設置實態와 장애인의 지역별 人口分布를 전국 자료 및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음.
- 이와 함께 政策의 費用效果를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의 욕구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리라고 추정되는 障礙人 密集地域에 대한 調査를 실시하였음(영구임대아파트 및 일반 주거지역의 총 595명).

II. 便宜增進保障에 관한 法律의 內容과 意義

- 우리나라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設置基準은 對象施設別로 설치하여야 하는 便宜施設의 種類를 제시하고 있음.
- 法에 규정된 便宜施設은 건물 및 시설에의 접근을 위한 媒介施設

로서 진입로, 출입구, 주차장 등이며, 건물내부에서는 출입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등임.

- 이들 편의시설의 설치는 각 대상시설별로 차이를 두면서 義務事項과 勸告事項으로 구분됨.
-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편의시설의 기준의 유형이나 범위는 先進國에 크게 뒤지지 않음.
 - 예컨대, 1990년 美國 障礙人法(ADA)이나 日本 東京都의 복지거리를 위한 정비계획과 비교할 때, 편의시설의 종류는 많음.
- 우리의 법적기준은 對象施設에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정해졌으나, 시설내부의 편의시설 종류 및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신축건물이나 증개축 건물에 적용하고 있는 先進國에 비해 부족하고 기본설비 설치의 強制性이 취약함.

III. 障礙人 便宜施設 供給 實態 및 需要分析

1. 便宜施設 供給實態

- 우리나라의 주요 公共 및 民間 對象施設에서 障礙人 便宜施設設置는 필요수준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障礙人, 老人 및 妊産婦들의 가정, 근린, 민간 및 公共施設에서의 活動이 크게 제약됨.
- 1990년대 이후 便宜施設의 設置數 및 比率은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便宜施設은 양적 및 질적으로 기본적인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1996년 정부에서 기본적인 便宜施設의 設置가 필요하다고 평가

한 對象施設 중 便宜施設이 갖추어진 對象施設의 비율은 36.8%에 불과함.

- 더욱이 장애인들이 日常生活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설치기준 이하의 建物 및 施設에서는 편의시설이 더욱 부족함.

2. 登錄障礙人의 類型別, 階層別 및 地域別 分布

- 障礙人에게 필요한 便宜施設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남.
 - 登錄障礙人의 67.1%가 肢體障礙人이며,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肢體障礙人의 76.6%는 남성임.
- 登錄障礙人의 대부분은 所得水準이 낮으며,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대상자 비율은 전체 肢體障礙人의 27.6%, 視覺障礙人의 60.7%, 聽覺 및 言語障礙人의 29.9%, 정신지체인의 27.2%임.
- 市·道地域別 人口 및 登錄障礙人의 분포를 보면 大都市 보다는 其他 地域에 障礙人이 많이 살고 있음.
 - 1995년 6대도시의 인구비율이 45.3%인데 비해 障礙人 分布比率은 37.1%이고,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障礙人의 17.5%가 밀집되어 障礙人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지만 전국 인구에 대한 서울 인구비율이 23.8%이어서, 障礙人 密集程度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이에 반해 9개 도지역에서는 인구비율(54.7%)에 비해 登錄障礙人의 分布比率(62.9%)이 매우 큼.

3. 障碍人の 便宜施設 利用實態 및 欲求調査

- 便宜施設 欲求調査는 총 595명의 登録障碍人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66.4%, 중소도시인 군산 43.6%로 標本을 추출하였음.
- 본 조사에서 조사대상 障碍人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편의시설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人口의 비율은 12.8%이었고,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편의시설 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는 人口의 비율도 14.8%로 편의시설의 이용이 불필요한 人口의 비율은 27.6%임.

4. 障碍人の 對象施設에 대한 欲求現況의 分析

- 便宜施設은 장애인들의 外出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장애인들의 主要 外出目的은 日常生活 相關시설에의 外出이 가장 많음.
- 外出頻度는 슈퍼마켓이 주 2~3회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종교시설, 은행, 약국, 이미용실의 순이었음.
- 편의시설 설치가 안되어 있는 對象施設을 보면,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일상생활 공간인 슈퍼마켓, 이미용실, 약국 등은 便宜施設이 가장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비해 많은 장애인에 의해 비교적 자주 이용되는 병·의원, 동사무소, 은행, 종교시설은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조사결과, 편의시설이 가장 필요한 대상시설은 병·의원, 슈퍼마켓,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원 및 유원지, 시장 등의 순임.
- 따라서 利用者數, 利用頻度 및 設置狀態를 근거로 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우선순위와 장애인이 응답한 편의시설 설치 필요 대상시설의 순위를 종합하여 볼 때,

- 대체로 병의원, 슈퍼마켓, 종교시설, 사업장, 사회복지시설, 은행, 시장, 약국, 동사무소, 이·미용실, 공원 및 유원지, 학교, 공중목욕탕, 식당 및 커피숍, 시·군·구청 등의 순위로 便宜増進優先順位가 설정될 수 있음.

5. 障碍人の 便宜施設 需給實態 및 優先順位 分析

- 본 조사에 의하면 편의시설의 設置에 대한 不滿足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됨.
 - 비교적 便宜施設이 잘 갖추어졌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극소수이고 약 70% 이상의 응답자가 매우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展示效果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포함하면 92.2%의 장애인이 현재의 편의시설 설치실태에 불만을 나타냄.
- 대상시설 유형별로 편의시설 改善의 優先順位를 보면, 근린생활시설, 종교·복지시설, 문화여가시설, 주택 및 공장에서는 모두 계단이 제1순위로 그리고 편의증진요원, 주차구역, 화장실, 단차제거 등이 2순위로 주로 나타남.
 - 公共施設 및 病醫院에서는 편의증진요원과 계단의 순위로, 교통에서는 장애인지정석, 계단, 출입구(문)의 순위를 보이고 있음.
 - 對象類型別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가장 選好되는 편의시설의 개선은 階段이며 다음으로 인적 서비스지원인 便宜増進要員임.

6. 對象施設別 便宜施設 利用實態 및 欲求

- 道路·交通施設
 - 地下鐵이나 鐵道驛舍에 있어서는 계단과 승강기에 대한 요구가

높아, 손잡이나 유효폭 등의 정비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신축역사나 터미널 등의 경우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높게 나타남.

- 道路에 있어 횡단보도는 신호길이의 개선 필요성이 높으며, 교통수단인 鐵道·地下鐵이나 버스 등에 있어서는 노인, 장애인을 위한 지정석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남.

－ 公共業務施設

- 공공업무시설인 市·郡·區廳의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창구의 설치와 편의증진요원의 배치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음.
- 이들 시설의 경우 주로 民願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특성상 물리적인 시설보다는 주로 장애인의 人的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事業場施設

- 조사대상중 就業障礙人은 30.7%로 대체로 단순노무·생산직에 근무하고, 업체규모는 대부분 50인 이하임.
- 事業場의 경우 편의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肢體障礙人의 경우에는 계단, 장애인용 주차구역, 화장실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視覺이나 聽覺障礙의 경우에는 점자블럭이나 증폭전화기의 설치 등을 희망하고 있음.
- 事業場에의 通勤手段 지원방안으로는 직장근처로의 이사지원, 장애인용 차량, 통근버스 운용 등이 필요하며,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도 通勤手段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住居施設

- 住居施設의 경우 건물내 계단, 화장실, 욕실 등의 개선 필요성

이 높았으며, 특히, 視覺과 聽覺障礙人을 위한 시설이 상대적으로 더욱 미비되어 있어 높은 욕구를 보임.

－ 近隣生活施設

- 障礙人의 이용빈도가 높은 슈퍼마켓의 경우, 계단의 개선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등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으며, 약국은 출입문, 단차제거, 이·미용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계단의 개선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銀行의 경우는 편의증진요원의 배치 필요성이 높았으며, 聽覺障礙人의 경우는 자막안내방송의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음.
- 公衆沐浴湯에 있어서는 바닥미끄럼의 방지와 非常燈의 설치, 식당·커피숍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메뉴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

－ 醫療·福祉施設

- 장애인 이용이 빈번한 醫療施設에서 綜合病院은 안내인과 같은 편의증진요원의 배치와 장애인용 화장실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 社會福祉施設은 편의증진요원의 배치 요구가 많았으며, 장애인의 절반 정도가 이용하는 宗教施設의 경우 계단과 화장실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文化餘暇施設

- 觀覽·集會施設은 장애인들의 이용이 빈번하지는 않으나 장애인용 주차구역이나 지정관람석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展示施設에서는 편의증진요원의 배치를 필요로 하고 있음.
- 公園·遊園地는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이나 시설설치를

은 매우 낮은 실정이며, 우선 설치하여야 할 시설은 계단, 장애인용 화장실임.

－ 販賣·宿泊施設

- 大型 販賣施設이나 宿泊施設은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대체로 낮으며, 이들 시설의 경우 화장실과 편의증진요원의 배치에 대한 요구가 높음.

7. 地域別 對象施設과 便宜施設의 利用 實態 및 欲求

- － 調査對象 지역인 서울과 군산지역의 경우 장애인들의 외출형태나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상태 및 필요도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음.
- － 그러나 對象施設을 방문 혹은 외출하는데 이용하는 주요 交通手段에서는 이용행태 및 선호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양 지역 모두 버스가 주요 交通手段이며, 서울은 지하철이 다음으로 많은 반면, 군산은 승용차와 택시의 이용빈도가 높음.
 - 大衆交通 편의증진을 위한 방법에서도 양 지역 모두 대중교통의 편의증진을 위해 버스 및 택시 교통비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
- － 아파트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비교하면 外出目的 및 頻度 그리고 대상지역의 평가에서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임.

IV. 便宜施設 擴充 및 便宜增進方案

1. 便宜施設の改善에 대한 需要가 가장 큰 對象施設 및 便宜施設에 대해 政策을 強化

- 便宜施設 설치상태, 설치필요성, 정책의 우선순위,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障碍人의 欲求를 기초로 한 편의시설의 선호순위를 평가하면 첫째, 전 대상시설에서 편의시설설치 정책의 우선순위는 계단, 단차제거, 편의증진요원, 경사로, 화장실, 출입구 등의 순임.
 - 그 동안의 便宜施設 공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便宜施設의 공급이 부족하므로 이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현재 大型施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의시설도 주민 이용도가 큰 근린시설을 중심으로 供給支援政策이 強化될 필요가 있음.

2. 障碍人·老人등의 便宜增進을 위해 人的 서비스를 擴大

- 障碍人 및 老人 등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施設 등의 물적 서비스에 치중하여 왔으나 편의증진요원과 같은 인적 서비스가 가장 선호하는 便宜增進 手段의 하나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위하여 便宜增進要員 대상으로서 公益要員의 활용이나 輕犯者들의 선도차원의 활용과 군입대예정자 중 중증질환자나 장애인을 제외한 군복무 결격사유자들의 福祉要員 對象者로 義務化하는 방안을 검토함.

3. 障碍類型·地域·所得階層·年齡別 特性의 差異를 反映한 便宜增進政策 樹立의 必要性

- 편의시설 설치의 優先順位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소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평가 및 선호도를 보면 장애유형, 거주지역 및 주거 유형, 연령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편의시설의 무차별적 공급 보다는 계층간의 차이를 고려한 便宜增進 政策이 중요함.
- 장애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위해 視覺·聽覺障碍人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보다 열악하여 이에 대한 投資의 限界效率性이 매우 큼.
 - 따라서 視覺 및 聽覺障碍人 선호의 편의시설인 비상등·경보기, 자막안내, 점자표판, 점자블럭 등의 순위로 편의시설설치 우선 순위가 설정되어야 함.
- 便宜施設 需要가 큰 地域에 政策의 優先順位를 賦與
 - 첫째, 便宜施設 설치의 한계효율성이 큰 저소득 장애인이 밀집하여 사는 지역의 建物 및 施設에 정책의 비중을 둠.
 - 둘째, 大衆交通 편의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지역간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과 같은 大都市는 지하철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전용 버스의 운영을 크게 선호하는 데 비해, 中小都市 지역은 전용 버스, 전용택시의 운영, 차량구입융자 확대를 보다 선호함.
 - 셋째, 大都市를 제외한 지역의 편의시설 설치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위하므로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한 차별적 지역편의시설 대책을 수립함(예컨대, 1995년 기준 3,000명 이상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20개의 시·군·구, 2,000명 이상~3,000명 이하 거주지역 62개 시·군·구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함).

4. 便宜施設の 集中化・規模化・連繫化를 통한 政策의 效率性 増大

-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設置支援의 집중화로 정책 및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 첫째, 각종 近隣施設에의 편의시설의 공급 및 편의시설 설치촉진 정책 및 기금지원은 일정 범위의 지역안에 집중화할 필요가 있음(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안내책자의 보급 및 이동서비스 등).
 - 둘째, 필요하면 일정 지역범위내에서 單位施設別로 障礙人 便宜増進施設을 지정하여 각종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강구함.
 - 셋째, 장애인 주택 및 시설의 규모도 일정 단위 이상으로 하여 개별 주택의 便宜施設 欲求에 대응하면서도, 가구집중에 의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함.
- 편의시설에 접근도를 높여 편의시설 이용을 증대시킴으로써 政策의 效率性을 높임.
 - 첫째, 道路 및 交通手段의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장애인 전용 콜택시 제도의 도입 및 비용을 지원하여 증대된 편의시설의 이용도를 높임.
 - 둘째, 路面狀態가 양호하고 비교적 近距離의 경우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공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5. 政府和 民間의 便宜増進施設 供給의 分擔을 통한 政府財政 負擔 縮小와 政策의 效率性을 増進

- 첫째, 需要規模나 所得水準에서 볼 때 민간업자가 수익 사업화하

기 어려우나 福祉性이 큰 편의시설에 대해 정책적 지원 및 障礙人 施設 設置基金을 주로 투입함.

- 둘째, 福祉性도 크고 收益性도 있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는 민간이 시장의 필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하여 障礙人 施設 및 設備産業 육성을 위한 각종 支援政策을 개발함.

6. 便宜施設 設置 및 事後 管理監督 強化

- 첫째, 便宜施設이 설치되더라도 障礙人, 老人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안내되어야 하므로 便宜施設設置의 의무 뿐 아니라 장애인 등 이용자의 조사를 기초로 사후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되어야 함.
- 둘째, 이러한 의미에서 매년 시·군·구 단위의 『障礙人 便宜增進評價大會』(가칭)를 개최하여 포상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촉진과 사후관리를 강화함.
- 셋째, 민간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시·군·구 단위의 障礙人生活環境改善 促進諮問委員會를 설치하여 편의시설 수급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 및 노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감시 및 방안을 개발함.

7. 便宜施設 設置基金 運營方案

-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편의시설설치 지원을 위한 基金의 投資 方案은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優先順位와 시설간의 選好度の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함.

8. 便宜施設設置 關聯法令의 調整

- 先進國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法令이 매우 광범위하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엄격성이 부족함.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설치 대상 및 지역은 선진국보다 좁게하되 기본적인 편의시설설치는 엄격히 하는 費用效果的인 政策을 집행함.
- 기타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시에는 학교 등 障礙人·老人便宜施設地域을 지정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집중화를 통한 效率化를 기함. 또한 새로운 공동주택 설립시 일정비율의 주택은 障礙人 및 老人을 위한 便宜施設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권장함.

第 1 章 序 論

第 1 節 必要性 및 目的

급속한 經濟發展과 더불어 각종 건물 및 시설과 경제·사회적 활동이 증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老人·障礙人·妊産婦 등 거동 취약계층에게는 이러한 시설물への 接近이 용이하지 않고, 시설물 내부에서도 활동을 크게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각종 건물 및 시설의 내부장치가 一般人만을 고려한 설계에서 이루어지고, 거동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극히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는 거동이 불편하여 社會活動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社會參與 增進方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편의시설의 供給 및 需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障礙人 便宜施設의 설치실태, 장애인의 지역별 인구분포,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조사, 그리고 外國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실태 등을 바탕으로 기존 대상시설 이용의 편의증진 방안과 앞으로의 편의시설 설치확대 방향, 그리고 便宜施設設置基金의 운영방향 등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便宜增進方案을 모색코자 한다.

第 2 節 研究方法

장애인 등 肉體的 活動制弱者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효율적 공급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便宜施設의 供給實態와 이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편의시설 需要를 비교·분석하는 접근

방법을 선택하였다. 열악하나마 최근에 들어 부분적으로 障礙人을 위한 편의시설의 공급이 증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측면만의 분석을 통한 政策構想의 問題點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편의시설 공급실태와 비교된 수요를 비교·분석하여 政策代案을 摸索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현재의 수요는 장차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증대될 편의시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국민소득수준 범위내에서 지향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수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편의시설의 設置實態 및 欲求調査를 통해 超過需要를 推定코자 하였다.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施設物의 성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상시설별로 필요한 편의시설이 다르거나 필요도에 차이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은 일종의 公共財이므로 비용부담에 따른 利用의 制約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각각의 편의시설 이용 및 수요가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所得階層에 따라 어느 정도 이용하는 대상시설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對象施設別 便宜施設 欲求의 差異를 조사·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타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는 결국 각자의 편의시설 이용의 制約 興件, 즉 장애 유형, 장애의 정도, 그리고 활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연령, 성, 직업, 거주지역 등에 의존할 것으로 가정하여, 수요를 조사함에 있어서 이들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편의시설의 공급에 있어서 供給者의 意志와 현재의 國家經濟 發展段階 등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費用負擔도 중요한 요인이므로 비용효과적인 供給方案을 분석하였다. 즉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便益/費用을 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報告書의 구성도 편의시설의 공급실태를 보고, 편의시설의 수요를 파

악하기 위하여 장애의 유형, 정도 및 이들의 지역간의 집중도, 그리고 각 대상시설에서 편의시설 설치 필요정도와 각 시설별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의 종류와 수준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는데, 韓國障礙人福祉體育會, 交通開發研究院, 建築工學關聯 學者들, 그리고 각 障礙類型別 障礙人團體 등에서 關係 專門家들이 연구를 축적해 오고 있어 이들의 자문을 활용하였다. 지금까지 편의시설 관련 연구를 보면 서울시 및 충청남도도 각각 1995년과 1996년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需要調査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연구는 본 연구의 방향에서 볼 때 많은 제약을 갖고 있다.

기존의 서울시(1995년) 및 忠淸南道(1996년)의 조사연구는 처음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需要調査를 실시하였다는 데 意義가 있다. 서울시와 서울市政開發研究院은 1995년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肢體 및 視覺障礙人 502명을 표본으로 장애 내용, 활동빈도 및 장소, 편의시설 욕구를 조사하는 한편, 기존의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충청남도, 1996)를 기초로 供給實態를 분석하였다. 기타 사례연구로서 장애인들의 외출행태를 조사했다는 점에서는 분석의 총체적 틀이 본 연구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 研究는 서울시에 국한되었을 뿐 아니라, 욕구도 개개 對象施設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광범위한 대상시설에 대해서 매우 일반적이고 막연하게 조사되어서, 그러한 欲求가 어떠한 장소, 건물 및 시설에서 발생하였는가를 밝히지 못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忠淸南道는 1997년 도내 登錄障礙人의 30%에 해당하는 5,459명에 대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調査의 일환으로 건물 일반에 대한 接近滿足度를 조사하고, 버스, 택시, 그리고 도로 등에 대한 不便度를

조사함으로써 편의시설에 대한 欲求를 분석하였다(충청남도, 1996). 이 조사에서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어느 곳에서 문제가 큰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비용 效果的인 供給方案을 개발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障礙人 便宜施設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本 研究는 편의시설 需要와 供給을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별로 조사(8월 20일~9월 5일)를 실시하여, 현재의 편의시설실태에 비한 욕구의 정도를 파악하여 政策의 우선순위 방향을 유도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였다.

- (1) 障礙人 및 거동불편 老人의 居住實態 및 편의시설 供給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수집한 전국 시·도의 주요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설치실태 자료를 참고하였다.
- (2) 조사능력의 한계상 편의시설 욕구가 가장 큰 지역인 장애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欲求를 調査하였다.
- (3) 동시에 전국 시·군·구의 지역별 장애인 分布資料를 제시하여 표본 조사지역의 욕구내용을 이용하여 전국 규모의 수요량을 확대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현재의 편의시설 실태 및 욕구수준에 기초한 中·短期의 政策方向과 더불어 長期的 政策方向을 모색코자 선진국의 편의시설 관련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방향에 적합한 선진국의 자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先進國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을 참고로 先進國의 정책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第 2 章 便宜増進法の 内容과 意義

第 1 節 ‘便宜増進保障에 관한 法律’의 内容

우리나라의 便宜施設 설치 관련 法的 要求事項은 일부 先進國의 수준과 비교해 크게 미흡하지 않다. 便宜施設 설치기준은 대상시설별로 어떠한 편의시설을 어느 수준에서 요구하는가를 보아야 하고, 그것이 障礙人들의 욕구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반응한 것인가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으로는 需要에 비한 설치기준 및 실태수준을 파악할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과 관련된 비교 분석을 제한된 수준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便宜施設 設置基準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對象施設로는 장애인 및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거나 이용하여야 하는 公共施設 등을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특히 公共建物の 경우는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등 近隣公共施設, 종교시설, 복지시설, 의료 및 교육시설, 공공 및 일반업무시설, 숙박 및 판매시설,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교통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시설 등 거의 대부분의 施設類型이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다소 적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障礙人 등의 이용이 빈번한 슈퍼마켓, 소매점, 음식점, 목욕탕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便宜施設의 설치가 의무화 혹은 권장되고 있다(附表 1 참조).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은 건물 및 시설에의 접근을 위한 媒介施設로서 접근로, 출입구 단차제거, 주차장이 편의증진을 위한 법적 설치대상

으로 지정되었다. 건물내부에서는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가 법적 설치를 요하는 便宜施設로 선택되었고, 衛生施設로는 화장실,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이, 기타 시설로는 관람 및 열람실, 접수대 및 작업대, 매표소, 음료대, 판매기 등이 요구되고 있다. 視覺障礙人을 위한 안내시설로 점자블럭, 유도안내 및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가 규정되었다.

이들 便宜施設의 설치는 각 대상시설별로 차이를 두면서 의무적인 것과 권고대상인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 同法은 거의 모든 대상시설에서 건물 및 시설에의 접근로, 출입구의 턱(단차)제거, 출입구의 편의증진을 義務化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복지시설, 업무시설 등 규모있는 公衆利用施設에 대해서는 복도, 계단 혹은 승강기 등의 편의증진 설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 시설물에는 전용주차구역, 복도, 대소변기 등의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活動性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勸告事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 정도의 규정으로는 편의증진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大型施設物인 학교, 병원, 경찰서, 구청 등의 근린공공시설, 복지시설, 백화점 등에서 視覺障礙人을 위한 유도 및 안내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까지의 진입로의 정비는 활동증진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대·소변기의 설치를 권고사항으로 그친 대상시설이 많은데, 이와 같은 必須的 設備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시설의 자유로운 방문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주택가 근처의 슈퍼마켓, 약국 등 近隣生活施設과 체육관 및 운동장 등에서는 진입로, 턱제거, 출입구 개조 등만을 의무화시키고 있어, 시설내부에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장애요인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아파트 및 상가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약국, 은행에 들어가는데 계

단의 높이나 손잡이의 결여, 복도의 협소나 손잡이 결여 등은 肢體障礙人을 위한 기본적 편의시설이나 이것도 勸告事項으로 그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애인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近隣生活施設에 視覺障礙人을 위한 유도블럭이나 안내가 필수적이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는 便宜增進保障法律이 보편적 적용원리를 추구하면서 투자비용의 제약성을 고려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필수적인 시설은 반드시 의무화하고, 다만 그 設置對象施設을 장애인에게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대상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投資費의 제약을 극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施行令은 보편성을 추구한 나머지 障礙人이 빈번히 이용하는 건물 및 시설에서도 필수적 便宜施設의 설치를 배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문제를 안고 있다.

第2節 便宜施設 關聯 制度의 國際比較

한국의 便宜施設 기준의 유형이나 범위는 대체로 先進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현실에 적용할 때 대상시설을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 類型 및 程度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편의시설수준이 우리의 발전단계에서 障礙人의 욕구수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인지 그리고 先進國 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法的 基準은 對象施設에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정해졌으나, 편의시설 종류의 규정에서는 先進國에 비해 부족하다. 1990년 美國의 障礙人法(ADA)이나 日本 東京都의 복지거리를 위한 정비계획과 비교할 때, 우리의 법적 기준의 내용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조철호, 1997). 이는 국내외의 기준 항목의 비교나 기본 편의시설의 구체적 항목의 비교에서나 마찬가지이다(조철호, 1997). 이러한 결론은 韓國障礙

人福祉體育會의 기준표의 비교에서도 동일하다(表 2-1 참조). 즉 법적 기준은 선진적 수준을 추구하고 있다.

先進國의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규정은 매우 보편적이고 구체적이다. 편의시설이용 대상자를 障礙人에 국한하고 있는 英國¹⁾ 및 프랑스²⁾를 제외한 美國³⁾, 日本⁴⁾, 獨逸 모두에서 老人 등의 노약자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의 法 적용대상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對象施設은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면 비교국가들이 普遍的 適用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들 國家에서는 예외적인 대상시설을 명시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에 적용받게 하였다. 예컨대, 地形的이나 建物構造上 편의시설의 설치가 제약을 받는 경우, 歴史的 保存의 가치가 있는 시설물, 다른 사람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개인주택,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 등은 대부분의 國家에서 예외적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便宜施設의 설치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 혹은 권장하고 있다.

設置를 법적으로 명시한 便宜施設 類型은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요 시설은 동일하다. 그리고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요건은 대체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設置의 責務는 미국이 최소의 設置要件을 명시하였고, 프랑스는 시설물 이용의 용이성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면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英國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法規의 입증이 없으면 법의 준수를 강제하고 있다. 다만 日本은 규정의 준수를 노력해야 한다고

1) 1991년 제정된 건축법규 Schedule 1 및 Regulation 7 - 이는 1985년의 건축법규의 개정임.

2) 1975년 장애인을 위한 법률 NO. 75-534 및 1978년 법령 NO. 78-1167 참조.

3) Federal Register,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49 CFR Parts 27, 37 and 38, Transport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inal Rule, September 6, 1991, ADA(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4) 1987년 東京都의 복지도시 만들기의 정비지침

정하고 한국은 義務와 勸奨事項으로 구분하여 놓음으로써 법의 강제성이 취약하며, 이는 이들 국가의 장애인편의시설 수준과 연관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과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을 통해 자세히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法的 位置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의 規定方式과 비슷한 일본의 편의시설 관련 규정을 1987년 東京都의 “복지도시 만들기의 정비지침”을 통하여 보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종류는 우리 보다 광범위하고, 시설 내외의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증진 방안도 구체적이다. 日本의 장애인편의시설 규정은 障礙人 및 高齢者를 포함한 모든 동경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福祉都市를 만들기 위한 책무의 명시와 함께 시설 정비의 기술적 표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對象施設로는 공공적 건축물로 표현되는 17가지 유형의 건축물과 공공교통기관과 부대시설, 도로 및 부대시설, 공원·녹지·공원 및 부대시설로 나누고 있다. 日本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公共建築物은 병원, 진료소, 백화점, 슈퍼마켓, 기타 물품 판매업소, 음식점, 이발소, 미용실, 공중목욕탕, 유흥오락실,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전시장, 체육관, 수영장, 은행, 신용금고, 우체국, 전화국, 호텔, 여관, 관공소, 각종 복지시설, 전수학교를 포함하는 각종 학교, 공동주택 및 기숙사, 대규모 사무소, 기타 東京知事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대상시설 유형별로 설치하여야 할 便宜施設로는 진입로, 주차장, 출입구 주변, 경사로, 출입구 혹은 문, 복도, 계단, 핸드레일, 휠체어 용변소, 일반 용변소, 세면소, 욕실, 샤워실 및 껌의실, 객실·침실, 관람석·객석, 옥상·발코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 설비(카운터 및 기재, 공중전화 및 우체통, 자동판매기 및 음료기, 콘센트 및 스위치류), 표시 및 유도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적 설치 요건을 자세히 지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便宜施設

種類 및 設置 要件과 거의 같다.

이러한 對象施設의 광범위성 및 편의시설의 다양성 및 구체적 설치 요건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부서, 시설의 설치 관리자 및 道民의 책무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同 指針 제12조) 우리의 義務條項보다 약하다.

원자료의 비교가 가능하고 편의시설의 설치내용이 보다 의무적이고 구체적인 美國의 예를 보면, 1991년 미국은 ‘接近과 관련된 法制度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한국아·태장애인 10년연구모임, 1997) 障礙人 便宜施設規程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y Act)(Federal Register, 1991)를 제정하였다. 이 법이 제시하고 있는 빌딩 및 시설물에 대한 接近可能性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매우 상세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시설내용을 담고 있고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普遍性을 유지하고 있다. 즉 역사적, 구조적 및 용도상의 성격으로 인한 예외적인 시설에 대한 설치요건을 제외하면 신축되거나 증개축될 모든 건물에 대해 明示의 指針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ADA가 명시적으로 규정한 편의시설의 유형으로는 허용면적 및 도착지범위(Space Allowances and Reach Ranges), 접근로(Accessible Routes), 돌출물(Protruding Objects), 지표 및 마루바닥 표면, 주차 및 여객승차지역, 제어경사로(curb ramps), 경사로(ramps), 계단, 엘리베이터, 리프트, 창문, 문, 입구, 냉각기, 음료대, 담수조(water closets), 화장실(toilet stalls and rooms), 소변기, 세면대(lavatories) 및 거울, 욕조(bathtubs), 샤워장(shower stalls), 목욕실 및 시설, 싱크대, 저장소(storage), 손잡이(handrails and grab bars) 및 샤워의자, 통제 및 조작기기(controls and operating mechanisms), 경보장치, 도로, 문 그리고 차량통행지역의 감지장치(detectable warnings), 표식판(signage), 전화, 고정 혹은 자동의자 및 테이블, 집회소(assembly areas), 자동응답기, 옷장 등이 있다. 이러한 便宜施設은 다른 考慮事項이 기

술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이 설계되고 건설되는 건물 및 시설의 모든 지역과 기존 건물의 増·改築되는 부분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외의 추가적 시설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첨부하고 있다. 예컨대 ADA는 최소의 條件項目에서 식당 및 카페테리아, 의료시설, 도서관, 접근가능한 숙박소(accessible transient lodging), 교통시설과 같은 對象시설에 대해서는 追加的 便宜施設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비교된 先進國은 공공건물 혹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便宜施設設置 基準이 제시되고 있는데 비하여, 독일의 경우는 공공건물 이외에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내부의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자세한 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몇몇 先進國과의 비교를 통해보면, 먼저 일반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은 여러 가지 취약한 내용 가운데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先進國에 못지 않음을 <表 2-1>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便宜施設에 대한 설치기준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종류수에서는 구미 선진국 보다 많다. 예컨대,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美國의 경우 매우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肢體障礙人에 대한 편의시설 요건에서 발견되지 않는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관람석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施行細則에는 보다 다양한 편의시설 및 내용을 담고 있어 先進國이 규정한 기준을 종합 망라한 감이 없지 않다. 이는 우리의 설치기준이 더 구체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거나 구태여 設置基準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社會慣行上 잘 지켜지고 있는 시설들로 판단된다.

〈表 2-1〉 便宜施設 基準 項目別 國際比較

번호	편의시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1	유효폭(공간)	○		○		○	
2	접근로	○	○	○			○
3	장애물	○		○	○	○	
4	유도형블럭	○	○	○		○	○
5	주차공간	○	○	○			
6	경사로	○	○	○	○	○	○
7	계단	○	○	○	○	○	○
8	승강기	○	○	○	○	○	○
9	출입문	○	○	○	○		
10	식수대	○	○	○			
11	화장실	○	○	○	○	○	○
12	세면기	○	○	○		○	
13	욕실	○	○	○	○	○	
14	감지경고	○		○	○		
15	전화기	○	○	○		○	○
16	카운터,작업대	○	○	○		○	
17	관람석	○	○		○	○	
18	부역시설			○			○
19	객실	○	○		○	○	
20	에스컬레이터	○	○			○	
21	보도		○				
22	핸드레일	○	○	○	○		○
23	자동판매기		○			○	
24	콘센트 스위치류		○				
25	개찰구	○	○				
26	승강구	○	○				
27	배수구		○				
28	벤치		○				
29	휠체어 크기		○				
30	휠체어 이동	○		○			
31	리프트	○					
32	변기	○	○	○	○	○	○
33	샤워실	○		○		○	
34	수납시설	○		○			
35	자동발매기	○	○				

資料: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방법 및 세부기준연구』, 1992, p.1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의시설 기준은 先進國에서와 같이 치밀하고 엄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첫째, 美國, 英國, 프랑스 등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新築建物 및 増改築建物 부위에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美國의 경우를 보면 편의시설 설치의 最小基準이 모든 신축 및 증개축 건물에 적용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규모와 종류별로 제한된 설치대상 건물 및 시설 보다 보편적이고 광범위하다. 이 最小基準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및 시설은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構造的으로 편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것이 증명되거나, 안보적 목적의 관측장소, 사다리의 이용 혹은 기어 오르는 곳, 비좁은 길,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관리 및 수리를 위한 장소 등이다.

둘째, 法이 요구하는 설치시설의 強度도 다르다. 우리의 경우 설치義務施設과 勸奨施設로 구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美國의 최소설치기준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韓國의 의무적 설치를 요하는 편의시설은 진입로이고 돌출부위제거는 모든 건물 및 시설에 적용되고, 대형 건물에는 출입구 및 주차구역 등이 의무적 편의시설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비해 韓國과 日本을 제외한 비교된 先進國은 모든 명시된 편의시설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美國은 강제조항 이외에도 最小設置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최소의 기준이 적용되는 편의시설로는 진입로, 돌출부위의 제거, 지포 및 마루바닥, 주차지역, 화장실, 건물표식, 건물내외의 계단, 하나의 엘리베이터(3층이하의 건물 및 쇼핑장이 아닌 층당 3,000스퀘어 피트 이하의 시설은 예외, 또한 기타 엘리베이터의 대용물 예컨대 리프트가 있는 시설 등은 예외), 창문, 문, 비상구(exit), 음료대, 화장시설, 보관소, 선반, 전시장소, 감지경보기, 공중전화, 고정 및 이동식 의자와 테이블, 집회장소, 자동응답기(automated teller machines), 탈의실(dressing and fitting rooms)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新築建物 및 施設은 물론 기

존 시설의 増改築에서도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개념으로 의무적 설치의 시설이 거의 대부분이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어 普遍的適用의 原則을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美國의 경우 빌딩표식판의 경우를 보면 방 및 공간의 위치 표시, 빌딩의 기능적 공간배분을 國際的 標準基準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 이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지역, 이용 가능한 승하차지역, 진입로 및 진입로로의 접근로 표시, 화장실 및 세면실 등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화장실의 경우에도 설치될 출입문, 바닥면적, 담수조 위치, 소변기, 세면소 및 거울, 휴지걸이(controls and dispensers)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駐車地域의 경우도 전 주차규모별로 최소의 전용주차지역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까지의 접근로 및 폭, 승하차지역, 거동불편자의 의료 등 기타 서비스 공급시설까지 접근 용이를 위한 최단거리 접근로, 폭, 표식판, 기타 장애물 제거 등 각종의 구체적 便宜増進方案을 活動線을 따라 具體化시키고 있다. 기타의 모든 최소설치조건의 대상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외부에서 내부에 이르기까지 便宜増進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편의설치기준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對象施設이 제한되고 최소조건이 先進國의 수준에 못미침은 우리의 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열등하고 우리의 경제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현재의 우리의 여건에서 선진국과 같은 보편적 편의시설의 설치에 투자의 대규모 성과 이에 따른 다른 부분과의 경쟁성 및 상대적 효율성의 문제에 부딪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기준을 현재의 기준이 편의시설 공급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능력의 증대와 더불어 지향해야 할 목표로 삼고, 이를 향한 방향 설정의 기준치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第3章 障碍人 便宜施設 供給實態 및 現況

第1節 便宜施設 供給實態

우리나라의 주요 公共 및 民間 對象施設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는 필요수준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장애인 및 이와 비슷한 육체적 조건을 갖고 있는 老人 및 妊娠婦들의 家庭, 近隣, 民間 및 公共施設에서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물론 1990년대 이후 편의시설의 설치수 및 비율은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유도블럭 및 경사로 등의 가시적 효과가 큰 편의시설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편의시설의 供給實態는 매년 읍·면·동에서 조사 보고되어 保健福祉部에 취합되고 있는 대상시설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의 자료(附表 1-2 참조)에 의하면 1996년 화장실 및 경사로의 설치수는 1990년의 수에 비해 각각 13.6배, 12.1배 증가하였으며, 유도블럭도 약 4배 증가하였다.

〈表 3-1〉 障碍人 便宜施設設置 推移

(단위: 개소)

구분	음향신호기	유도블럭	턱낮추기	공중전화	경사로	화장실
1989	1,177	3,498	13,796	1,967	951	471
1990	1,209	5,034	12,812	2,277	1,799	768
1993	2,040	7,849	17,104	2,739	4,791	2,300
1996	4,779	20,365	44,967	4,936	21,928	10,464

註: 유도블럭은 대부분이 횡단보도 유도블럭이나 지하철유도바닥재도 포함.
資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 1995, p.70.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7.

그러나 최근의 便宜施設의 급속한 설치 증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편의시설은 양 및 질적으로 기본적 수준조차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1996년 정부에서 기본적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對象施設⁵⁾ 중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대상시설의 비율은 36.8%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을 편의시설 설치 기준 이하의 건물 및 시설에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더욱 부족하고, 그리고 이미 설치된 편의시설의 양적 및 질적 내용도 충분치 못함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建物 및 施設의 편의시설의 수준은 質量面에서 기본적 필요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6년 편의시설 설치 대상건물 및 시설 중에서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시설은 공항(75.0%), 향만여객시설(59.6%), 전신전화국(58.7%), 전시시설(56.2%), 의료시설(56.0%)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50% 이상의 설치비용을 보이고 있는 시설은 3,000m² 이상 면적의 도소매점,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에 불과해 대부분의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이 구비정도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近隣公共施設의 대피소, 공중화장실, 노인 및 장애인시설을 제외한 노유자시설,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공장 및 산업시설, 1,000~3,000m² 규모의 도소매점, 지하도·육교의 便宜施設設置率은 20~29%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타 30~39%의 편의시설을 갖춘 대상시설로는 횡단보도, 공원, 종교시설, 학교, 일반업무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으로서 대체로 40% 이하의 설치율을 보인 대상시설은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건물 및 시설이어서 障 碍 人 및 老 弱 者의 일상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40~49%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대상시설은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방송국, 도시철도역사 등이다. 전체적인 경향은 40% 이상의 편의시설 설치비

5) 對象施設은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1995)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모든 건물 및 시설을 말함.

율을 보이고 있는 對象施設에서는 의료 및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을 제외하면 장애인 및 노인들의 이용빈도가 매우 적은 시설이다.

이에 비하여 40% 이하의 설치비율을 보이고 있는 對象施設은 주민의 利用度가 큰 시설들이어서 障礙人들의 이용도 보다는 대형의 건물과 對外的 評價가 중요시되는 시설 등에서 주로 설치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장애인 등 주민이 많이 찾는 소규모의 近隣施設에 대해서는 便宜施設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하므로, 장애인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 개선이 障礙人 活動增進效果가 매우 클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表 3-2〉 對象施設의 便宜施設 設置比率(1996年)

(단위: %)

대상시설	비율	대상시설	비율
횡단보도	36.9	도소매점(1,000~3,000m ²)	28.3
지하도·육교	26.5	관람집회시설	42.6
공원	37.7	전시회시설	56.2
근린공공시설	38.2	방송국시설	47.0
대피소·화장실	23.3	전신전화국	58.7
종교시설	33.1	국공립수련시설	51.3
노인·장애인시설	49.1	버스터미널	36.5
노유자시설	29.1	철도역사	32.2
의료시설	56.0	도시철도역사	49.7
학교	32.4	공항시설	75.0
직업·훈련·학원	28.8	항공여객시설	59.6
공공업무시설	43.7	공장	25.9
일반업무시설	31.9		
도소매점(3,000m ² 이상)	52.2	계	36.8

註: 근린공공시설 및 대피소·공중화장실은 근린공공시설내의 분류이고, 노유자시설에는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이 제외되었음.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7.

便宜施設의 設置實態를 보면 가장 많이 설치된 시설 중 턱낮추기, 출입구, 복도 등 비교적 利用頻度가 높으면서도 장애인 편의조건이 잘 갖춰진 경우가 있고, 세면대, 욕실, 샤워실, 객실·침실, 접수대 등이용이 소수에 제한되었으나 대형건물 및 시설에서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의 이용 접근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1차적 접근의 필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유도블럭, 계단, 승강기, 안내표시, 주차장, 휠체어리프트 등은 대상시설에서 20~32%의 매우 낮은 설치비율을 보이고 있고, 視覺障 碍 人의 필수시설의 하나인 음향신호기는 더욱 낮은 설치비율을 보이고 있다. 기타 필수성이 다소 적은 전화기, 판매기, 매표소, 음료대, 개찰구, 추락방지난간 등은 30~40%의 설치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필수적 성격이 짙은 편의시설의 설치비율보다는 보완적 성격이 강한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便宜施設은 대형건물 내에서 비교적 필수성이 적은 시설 중심으로 설치비율이 높아 그 동안의 편의시설의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障 碍 人 등의 시설이용에 기초적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對象施設에서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 중 유도블럭, 경사로, 안내표시, 주차장의 설치비율은 20~40%의 설치비율에 그치고, 시설별로도 차이가 많다. 비교적 설치비율이 높은 경사로를 보면, 공공시설, 의료시설,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전시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국공립청소년수련시설, 공항 및 항만여객시설 등에서는 50~80%의 높은 설치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障 碍 人 등의 利用度가 높은 공중화장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직업훈련소·학원·교육원, 도시철도역사, 1,000~3,000m²의 도소매점 등은 20~35% 정도의 설치비율을 보이고 있고, 對象시설 선정기준보다 규모가 적은 대부분의 近隣地域 시설들에서의 경사로 설치비율은 더욱 적을 것이다. 평균 23.6%의 설

치비율을 보이고 있는 유도블럭의 경우 주민의 利用頻度가 높은 거의 모든 대상시설에서 20% 이하의 설치비율을 보이고 심지어 읍·면·동 사무소를 포함한 일반업무시설은 9.4%, 버스터미널 8.1%, 학교 7.7%, 근린공공시설 8.3% 등의 10% 이하만이 유도블럭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항, 도시철도시설은 각 97.6%, 66.2%, 항만여객시설, 방송국, 전시시설 등의 대형시설에는 20%의 설치비율을 보이고 있다.

〈表 3-3〉 便宜施設 種類別 設置比率(1996年)

(단위: %)

편의시설	비율	편의시설	비율
턱낮추기	69.8	주차장	32.0
유도블럭	23.6	유도신호장치	22.0
음향신호기	12.5	전화기	39.2
경사로	40.1	접수대 등	52.7
출입구	56.8	판매기	33.0
복도	50.8	매표소	36.3
계단	31.5	음료대	38.5
승강기	22.8	안내표시	26.0
화장실	28.0	개찰구	46.8
욕실	64.9	추락방지난간	43.7
샤워실	64.7	휠체어 리프트	31.4
객실·침실	52.2	기 타	100.0
관람석·열람석	25.5	계	36.8

註: 기타는 근린공공시설의 경우만 해당됨.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7.

對象施設에서 주요 접근로가 되고 있는 계단의 경우 평균 설치비율은 불과 31.5%이고, 특히 대중의 利用度가 대체로 큰 지하철·육교, 근린공공시설, 학교, 공공업무시설, 老幼者施設,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에서 평균 이하 혹은 평균정도의 낮은 비율의 설치상태에 있다. 視覺障礙人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는 더욱 열악하여 음향신호기의 설

치율은 횡단보도의 경우만 조사하였을 때 유도블럭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12.5%의 설치비율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다양한 對象施設에 설치되고 있는 시각장애이용 유도신호장치도 공항, 항만, (도시)철도역사, 국·공립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설이 평균 설치비율인 22.0% 정도이거나 그 이하의 비율에 그치고 있다.

이상의 주요 편의시설의 예에서 보듯이 장애인 便宜施設은 필수적 성격이 큰 시설의 설치율이 낮으며, 그것도 장애인의 利用頻度가 큰 대상시설에서 설치율이 떨어져 便宜施設의 障 碍 人 活 動 增 進 효과면에서 效率性이 떨어지고 있다.

〈表 3-4〉 15個 市·道의 主要 便宜施設의 設置比率

(단위: %)

	계 ¹⁾	턱낮추기	유도블럭	음향신호기	경사로	출입구	계단	휠체어리프트
계	36.8	69.8	23.6	12.5	40.1	56.8	31.5	31.4
서울	42.4	74.3	45.2	14.6	38.1	58.7	35.2	29.7
부산	29.4	59.1	8.1	23.8	38.8	47.2	23.4	6.7
대구	36.5	73.7	17.8	19.3	21.4	73.1	41.4	16.7
인천	44.9	131.4	48.4	8.3	57.8	75.1	33.6	100.0
광주	34.4	83.3	35.9	12.2	48.5	55.6	22.8	0.0
대전	40.2	79.0	20.0	16.0	43.6	60.7	23.2	86.1
경기	34.2	74.0	23.7	2.7	40.5	57.5	31.2	55.7
강원	31.6	50.7	13.6	14.0	29.2	53.2	26.1	0.0
충북	30.9	60.5	15.1	17.1	30.4	38.7	8.2	0.0
충남	26.7	52.4	9.5	1.6	34.2	41.2	25.6	0.0
전북	31.8	73.8	18.1	23.6	39.7	64.8	17.7	31.8
전남	33.0	60.5	16.5	4.2	45.4	40.7	24.9	0.0
경북	22.6	57.8	9.6	19.2	26.8	33.3	11.1	3.2
경남	53.4	52.0	10.7	16.1	63.6	81.6	59.8	23.5
제주	23.4	70.0	0.3	7.0	30.2	47.5	15.0	25.0

註: 1) 〈表 3-3〉과 전체 편의시설의 수 및 종류와 관련된 총계임.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7.

시·도별 편의시설의 設置狀態를 보면 대체로 6대도시의 설치비율이 도지역 보다 크며, 6대도시 중에는 서울, 인천, 대전이 설치비율 40%를 넘고 있으나 부산의 설치비율은 29.4%에 불과하다. 15개 시·도 중에는 경상남도에서 편의시설 설치비율이 가장 큰데 이는 주로 설치對象施設 숫자의 비율이 가장 큰 안내표시의 설치비율(56.0%)이 전국 평균(26.0%)을 크게 웃돌고, 전체 對象施設의 비중이 큰 출입구, 경사로, 계단에서 평균 설치비율 보다 큰 비율을 보이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턱낮추기, 유도블럭 등에서는 평균비율을 밑돌고 있다. 이에 비해 경상북도 및 제주도에서는 편의시설 설치비율이 20%를 겨우 넘는데 그치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크다.

第2節 障礙人の 類型別 및 地域別 分布

1. 障礙類型別 對象의 分布

障礙人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登錄障礙人의 대부분은 肢體障礙人이어서 전체 등록장애인 약 249천명(1995년)의 67.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精神遲滯人의 비율이 크고, 聽覺·言語障礙, 視覺障礙人의 순이다. 등록장애인 가운데는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전체의 71.9%는 남성으로 성별 등록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3-5 참조).

〈表 3-6〉에 의하면 지체장애인은 하지보조기, 휠체어, 의수, 의족 등의 보장구에 가장 큰 수요를 보였는데 비해, 視覺障礙人은 義眼, 聽覺·言語障礙人은 보청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보장구로 선호하였다. 정부의 지원이 등록여부의 주요 원인이라면 중증장애인일수록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편의시설의 利用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편의시설에 대한 需要가 상대적으로 클 視覺 및 肢體障碍人의 경우 登錄率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므로, 登錄障碍人의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는 전 장애인의 수요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表 3-5〉 登錄障碍人의 類型 및 性別 分布(1995年)

(단위: 명, %)

구 분	등록장애인수	비율
지체장애	167,356	67.1
시각장애	17,548	7.0
청각·언어장애	30,524	12.2
정신지체	33,846	13.6
계	249,274	100.0

資料: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록장애인 전산자료, 1995.

障碍類型에서 肢體障碍人의 비율이 큰 것은 교통, 산재, 기타의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 주요 장애 원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기 뿐만아니라 청장년 이후의 발생비율이 큰 것은 교통 및 산재 등 각종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聽覺·言語障碍의 경우 선천성 또는 질병에 의해 주요 발생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장애는 대부분이 유아기에 발생하고 있어, 教育施設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급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障碍程度에 따라서도 필요한 편의시설의 내용과 그 정도에 차이가 날 것이다. 障碍等級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정도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障碍程度가 심할수록 편의시설에 대한 需要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表 3-6〉 市·道別 障礙類型別 登録障碍人の 必要 補装具

(단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체장애)																
목발(크러치)	2.1	1.4	2.0	1.8	1.6	3.3	2.3	2.0	1.5	1.1	2.1	3.0	2.2	2.7	2.8	2.9
휠체어	2.8	2.7	2.1	3.8	2.6	6.1	3.9	2.5	2.1	2.7	2.7	3.6	3.1	2.2	2.9	2.3
상지보조기	0.6	0.5	0.4	0.6	0.8	1.0	1.1	0.5	0.3	0.3	0.6	0.5	0.8	1.1	0.5	0.4
하지보조기	3.7	4.8	3.0	5.9	3.7	5.7	5.5	3.8	2.0	1.9	2.7	3.6	4.4	2.3	3.1	3.3
의수	2.4	1.5	2.2	3.5	3.3	4.6	3.1	2.3	2.8	2.4	2.2	2.1	3.1	1.9	3.2	1.1
의족	2.3	1.6	2.1	2.6	2.7	3.3	3.2	2.2	2.2	2.5	2.4	2.4	3.2	1.6	3.2	1.5
교정신발	0.1	0.3	0.2	-	0.2	0.1	0.09	0.2	0.08	0.01	0.06	0.1	0.03	0.03	0.1	0.04
척추보조기	0.1	0.1	0.1	0.2	0.03	0.2	0.3	0.2	0.2	0.04	0.1	0.07	0.1	0.2	0.1	-
요추보조기	0.07	0.04	0.06	0.05	0.2	-	0.2	0.07	0.08	0.2	0.1	0.07	0.06	0.05	0.08	-
불필요	0.4	0.3	0.3	0.2	0.3	0.2	0.4	0.4	0.07	3.0	0.8	0.1	0.2	0.4	0.6	0.3
기타	0.2	0.2	0.2	0.4	0.2	0.1	0.4	0.3	0.1	0.1	0.2	0.2	0.1	0.3	0.1	0.09
무응답	84.9	86.3	87.1	80.6	84.3	75.0	79.3	85.3	88.2	85.6	85.9	84.1	82.5	87.4	83.3	88.0
(시각장애)																
흰지팡이	1.0	0.1	4.4	0.9	1.6	0.2	0.4	0.4	2.6	3.3	0.4	0.5	0.07	0.3	1.6	0
의안	4.1	1.1	5.5	2.4	8.1	5.6	5.4	5.5	7.7	9.5	8.1	4.5	3.0	0.8	2.6	1.6
특수안경	1.4	0.3	1.4	0.5	0.2	4.1	0.9	0.7	3.7	4.4	3.6	1.2	0.7	0.4	2.4	1.6
전자감음장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불필요	0.4	0.3	0.5	0.2	0.4	0.7	0	0.1	0.1	0.1	0.5	0.5	0.4	0.9	0.8	0.4
기타	0.1	0.06	0	0	0.4	0	0.6	0.06	0.5	0.2	0.08	0.3	0.1	0.1	0	0
무응답	92.3	97.7	87.2	95.7	87.4	87.6	92.7	92.5	85.0	81.9	86.4	92.8	95.2	97.2	91.2	96.0
(청각·언어장애)																
보청기	12.4	18.3	18.1	7.7	7.1	9.5	8.4	12.2	18.8	31.0	8.7	4.3	8.6	6.4	14.9	8.7
불필요	0.6	0.2	0.3	0.3	0.4	0.1	2.2	0.2	0.2	7.1	0.6	0.2	0.2	0.4	0.2	0.6
기타보조기	0.2	0.1	0.2	0.1	0.4	1.1	0	0.1	0.4	0.08	0.05	0	0.4	0.1	0.3	0
무응답	86.4	80.8	80.9	91.8	91.6	87.9	89.0	87.0	79.8	69.7	89.6	95.4	90.7	93.0	84.3	90.4

물론 같은 3급의 장애인이라도 下肢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상지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비해 필요한 便宜施設의 종류도 다르고 필요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장애인인 경우 장애급수는 편의시설의 필요정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便宜施設에 대한 需要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 필요 補装具

중 휠체어에 대한 수요를 보면 휠체어 필요자의 대부분이 1급 및 2급에 몰려 있다.

〈表 3-7〉 登錄 肢體障礙人의 障礙等級別 分布(1995年)

(단위: %)

장애부위	장애등급	남	여	계
팔	1급	10.2	14.7	11.3
	2급	26.4	29.9	27.2
	3급	32.2	31.7	32.1
	4급	17.0	13.5	16.2
	5급	8.0	6.6	7.7
	6급	6.1	3.5	5.5
	계	100.0	100.0	100.0
다 리	1급	7.5	8.1	7.7
	2급	13.9	15.8	14.4
	3급	16.6	14.4	16.1
	4급	37.3	37.6	37.4
	5급	14.9	14.7	14.9
	6급	9.7	9.3	9.6
	계	100.0	100.0	100.0
몸 통	1급	9.6	8.8	9.4
	2급	13.3	13.1	13.3
	3급	33.4	29.5	32.3
	4급	2.7	1.9	2.4
	5급	39.3	45.6	41.0
	6급	1.8	1.1	1.6
	계	100.0	100.0	100.0

註: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록장애인 전산자료, 1995.

下肢障礙의 경우 87.0%, 上肢障礙의 89.5%, 몸통장애의 78.5%가 1급 및 2급 장애인이다. 또한 휠체어 필요자의 비율은 전체 장애인 응답자의 18.6%(169,412명 중 25,603명)이나, 신체부위별로 차이가 있어 팔 장애인 응답자의 약 17.7%(총 64,431명 중 약 8,500명), 下肢障礙人의 17.9%(89,024명 중 15,632명), 몸통장애인 응답자의 41.0%(9,623명

중 805명)가 휠체어를 필요 보장구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障礙等級을 보면 장애정도가 경미한 5급 및 6급 장애인이 약 94천명으로서 조사된 登錄障礙人의 56.2%에 이르지만, 휠체어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큰 2급 이상의 장애인 비율은 27.5%(약 46천명)나 된다. 특히 便宜施設에 대한 需要가 큰 다리부위의 1 및 2급 장애인은 약 2만명이고 몸통부위 1 및 2급 장애인은 약 2,100명으로 양부위 1급 및 2급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2.9%이다. 따라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는 전체 장애인의 적어도 27.5%에서 좀더 넓게 잡은 3급 장애인까지의 비율 43.8%까지 매우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남녀의 활동영역이 달라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에도 차이가 나겠지만 여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重症障礙人의 비율이 약간 더 커서 이들의 주요 활동 공간인 近隣生活施設에 대해서는 女性障礙人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커야 할 것이다.

또한 障礙가 중복될수록 장애의 정도도 심하고 편의시설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重複障礙 여부에 대한 응답자수를 重複障礙人으로 간주한다면, 登錄障礙人 중 중복장애인의 비율은 지체장애 8.2%, 시각장애 10.6%, 청각·언어장애 12.4%, 정신지체 57.0%로 장애의 중복성이 적지 않다. 특히 정신지체의 경우 언어 및 정서장애의 중복이 많아 31.0%나 된다. 또한 둘 이상의 중복장애의 비율도 전체 중복 정신지체인의 46.1%나 된다.

重複障礙의 비율은 정신지체,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의 순위를 보이고 있어 편의시설의 대책도 한 유형의 장애에 대한 편의시설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비율은 작지만 중복장애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肢體障礙의 경우도 뇌성마비와의 중복이 절대적으로 많아 34.6%에 이른다. 또한 肢體障礙人 중 언어장애와 중복된 비율도 매우 높다. 중복청각·언어장애의 경우에도 뇌성마비와의 중복

이 73.1%나 된다. 정신지체의 경우는 뇌성마비와 언어장애가 중복된 정신지체자의 비율 3.4%와 단순 뇌성마비와의 중복 정신지체자의 비율을 합하여 8.0%이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중복비율을 보이고 있다.

〈表 3-8〉 重複障碍人の 分布

(단위: %)

중복장애	둘이상	뇌성 마비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시각 장애	정서 장애	정신 질환	정신 지체	지체	응답수
지체장애+	25.9	34.6	2.7	21.5	7.5	0.2	1.0	6.0	-	13,678
시각장애+	27.1	14.2	5.4	15.0	-	0.4	1.5	6.9	28.8	479
청각언어장애+	6.5	73.1	-	-	4.1	0.2	0.6	9.1	5.7	4,206
정신지체+	46.1	4.6	0.6	18.5	1.0	6.9	5.6	-	15.2	19,295

註: 중복장애유형에서 경련, 평형장애는 제외됨.

資料: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록장애인 전산자료, 1995.

重複障碍에 따른 복합적 대응을 위하여 지체장애나 聽覺·言語障碍人的 경우 뇌성마비와의 중복에 따른 종합적 편의시설대책이 요망되며, 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언어장애와의 중복정도가 크므로 肢體障碍人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시 뇌성마비와 더불어 언어장애를 위한 편의시설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편의시설의 유형이 障碍類型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서로 배타적이어서는 안되고 보완관계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所得水準이나 學歷은 經濟 및 社會活動의 유형에 영향을 미쳐 필요한 편의시설의 종류 및 필요정도가 소득, 학력 및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장애인의 50.4%가 무학 또는 국졸이어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便宜施設의 종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예컨대, 전문적 해석능력이 필요한 문화예술공간보다는 大衆的 利用度가 큰 공원, 운동장, 극장 등에 대한 需要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저학력의

정도는 시각, 청각 및 정신지체인에게서 큼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편의 시설의 설치도 이들의 사용빈도 즉 이용조건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비해 肢體障礙人은 重症으로 인해 교육시설에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수학능력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이들의 상대적으로 저학력은 그들의 경제적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表 3-9〉 障礙類型別 學歷水準

(단위: %)

장애유형 \ 학력	미취학	무학	초등 교졸	초등 교재	중졸	중재	고졸	고재	대졸 이상	대재
지체장애	1.8	17.9	29.4	2.1	18.0	1.5	20.4	1.5	6.2	1.2
시각장애	1.5	32.8	24.0	3.4	13.5	2.0	15.7	2.3	4.2	0.6
청각·언어장애	3.8	40.8	19.2	7.5	10.9	3.7	9.9	2.5	1.4	2.8
정신지체	11.0	39.0	15.6	17.4	5.9	5.8	3.2	1.9	0.2	0.1
전 체	3.3	24.6	25.8	4.9	15.0	2.4	16.4	3.5	4.7	1.2

註: 전체비율은 유형별 비율에 각 유형의 점유비율을 곱하여 합한 것임.
資料: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록장애인 전산자료, 1995.

障礙人의 대부분은 無職者이어서 소득수준도 매우 적고, 이는 편의 시설 특히 대부분의 민간 便宜施設의 이용을 제약할 것이다. 특히 정신지체인의 경우는 약 80%의 사람이 무직 상태이어서 가족의 도움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지만, 도움도 크지 못하여 20만원 이하의 월 수입자가 약 66%에 이르러, 이들이 다양한 편의시설의 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응답한 사람은 대체로 취업연령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 중 19.4%만이 취업한 상태이다. 전 장애인으로 보아도 취업장애인의 비율은 肢體障礙人이 다소 높아 20.2%이고, 기타 視覺障礙人 13.1%, 聽覺·言語障礙人 9.4%, 精神遲滯人 3.1%의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 事業場 뿐 아니라 일반 편의시설의 이용에 경제적 제약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表 3-10 참조).

全體 登錄障碍人에서 취업한 장애인은 17.2%이고 취업자 중 월 60만원 이상의 수입자는 障碍類型別 分布比率을 가중평균한 비율로 볼 때 11.8%에 불과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알 수 있다(表 3-11 참조).

〈表 3-10〉 障碍類型別 職業 및 就業狀態 分布

(단위: %)

장애유형 \ 직업	근로자	농어민	자영업	무직	응답수
지체장애	22.6	17.3	16.6	43.6	59,939
시각장애	15.4	17.1	12.8	54.7	5,076
청각·언어장애	24.3	30.8	6.5	38.3	9,263
정신지체	7.9	9.1	2.4	80.6	5,475
전 체	20.4	17.8	13.1	48.7	79,753

註: 전체비율은 유형별 장애인구비율에 각 유형의 점유비율을 곱해 합함.
資料: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록장애인 전산자료, 1995.

〈表 3-11〉 障碍類型別 所得水準 分布

(단위: %)

장애유형 \ 소득	20만원 이하	21~40만원	41~60만원	60만원 이상	응답수
지체장애	48.3	24.4	12.7	14.7	30,326
시각장애	58.3	27.0	9.9	8.6	2,593
청각·언어장애	70.3	20.2	5.2	4.3	4,772
정신지체	66.0	20.6	7.6	5.8	929
전 체	54.1	20.5	10.8	11.8	38,620

註: 전체비율은 유형별 비율에 각 유형의 점유비율을 곱하여 합한 것임.
資料: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록장애인 전산자료, 1995.

경제적 취약 특성은 登錄障碍人의 적지않은 비율이 生活 및 醫療保護對象者라는 데서도 볼 수 있다. 생활보호와 의료보호에 해당하는 비율은 전체 肢體障碍人의 27.6%, 視覺障碍人의 60.7%, 聽覺·言語障碍

인의 29.9%, 精神遲滯인의 27.2%이다. 이에 반해 각종 사업장(5인이 상)의 정규적 취업을 요하는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1%에도 미치지 못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약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여건의 취약은 障礙人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나 이용빈도를 제약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中短期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시설설치 방안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表 3-12〉 障礙類型別 社會保障 加入形態 分布

(단위: %)

장애유형 \ 사회보장	의료 보험	의료 부조	생활 보호	산재 보험	보훈 대상	국민 연금	무응답
지체장애	28.0	13.9	13.7	1.2	1.2	0.8	41.3
시각장애	34.9	29.6	31.1	0.9	1.9	1.1	40.2
청각·언어장애	27.2	15.3	14.6	0.5	0.5	0.5	41.4
정신지체	26.3	15.0	12.2	0.5	0.3	0.5	45.2

〈表 3-13〉 障礙類型別 要望事項 分布

(단위: %)

장애유형 \ 요망사항	무응답	의료 시설	보조 장구	특수 교육	취업 훈련	생계비	시설 수용	자원 봉사	취업
지체장애	64.5	6.3	7.6	1.5	2.0	11.4	0.7	0.5	5.5
시각장애	62.8	9.0	3.5	2.5	1.5	15.6	0.8	0.7	3.7
청각·언어장애	58.2	6.7	6.7	6.0	2.8	13.0	1.0	0.3	5.2
정신지체	59.3	5.6	1.0	15.2	3.4	8.2	3.9	1.4	2.0

資料: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록장애인 전산자료, 1995.

障礙人들의 소득수준 및 학력 등의 취약성은 이들의 장애인대책 요망사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중에는 정신지체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生計費 支援에 대한 요구의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

고 있다. 다음 요망도가 큰 지원책이 醫療施設이나 보장구에 대한 지원이지만 희망자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表 3-13 참조).

2. 地域別 對象의 分布

가. 市·道別 分布

시·도 지역별 인구 및 登錄障礙人의 분포를 보면 등록장애인 중 약 17.5%가 서울에 있어 인구집중과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大都市 보다는 道地域에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人口分布에 비한 장애인의 분포비율도 大都市 보다는 道地域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1995년 6대도시의 인구비율이 45.3%인데 비해 장애인 分布比率은 37.1%이고,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장애인이 17.5%이어서 가장 많이 장애인이 사는 지역이지만 전국인구에 대한 서울 인구비율이 23.8%이어서, 장애인 密集程度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반해 9개 도 지역에서는 인구비율(54.7%)에 비해 登錄障礙人의 분포비율(62.9%)이 매우 높다. 그러나 도지역의 중소지역과 대도시를 합하면 시지역에 사는 障礙人 數는 군지역의 장애인 수 보다 많다(表 3-14 참조).

지역인구에 대한 登錄障礙人의 비율을 보면 전국의 등록장애인비율은 평균 0.62%인데 서울(0.45%), 부산(0.50%), 대구(0.45%), 경기(0.60%)가 평균 이하의 분포율을 보이고, 전북(0.84%)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기타 충북(0.79%), 대전(0.78%), 충남·전남(각 0.76%), 경북(0.75%), 강원도(0.72%)의 순으로 많이 分布되어 있다. 9개 도지역의 인구에 대한 登錄障礙人 비율은 0.71%이어서 6대도시의 0.50% 보다 높다. 즉, 大都市 보다 道地域의 장애인 비율이 높다.

〈表 3-14〉 登録障碍人 市·道 地域別 分布(1995年)

(단위: 명, %)

	총인구(천명)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	전체
전 국	40,420 (100.0)	167,356 (100.0)	17,548 (100.0)	30,524 (100.0)	33,846 (100.0)	249,274 (100.0)
서 울	9,626 (23.8)	29,396 (17.6)	3,608 (20.6)	4,530 (14.8)	6,250 (18.5)	(17.5)
부 산	3,512 (8.7)	12,086 (7.2)	1,275 (7.3)	1,821 (6.0)	2,144 (6.3)	(7.0)
대 구	2,028 (5.0)	6,552 (3.9)	578 (3.3)	1,033 (3.4)	1,164 (3.4)	(3.7)
인 천	1,385 (3.4)	6,953 (4.2)	493 (2.8)	784 (2.6)	1,163 (3.4)	(3.7)
광 주	906 (2.2)	4,058 (2.4)	408 (2.3)	753 (2.5)	841 (2.5)	(2.4)
대 전	866 (2.1)	4,507 (2.7)	465 (2.6)	682 (2.2)	960 (2.8)	(2.7)
경 기	4,793 (11.9)	19,834 (11.9)	1,753 (10.0)	3,367 (11.0)	3,966 (11.7)	(11.6)
강 원	1,724 (4.3)	8,624 (5.2)	925 (5.3)	1,560 (5.1)	1,316 (3.9)	(5.0)
충 북	1,390 (3.4)	6,632 (4.0)	839 (4.8)	1,349 (4.4)	2,041 (6.0)	(4.4)
충 남	2,134 (5.3)	10,145 (6.1)	1,188 (6.8)	2,171 (7.1)	2,582 (7.6)	(6.5)
전 북	2,201 (5.4)	12,051 (7.2)	1,269 (7.2)	2,655 (8.7)	2,491 (7.4)	(7.4)
전 남	2,842 (7.0)	14,389 (8.6)	1,366 (7.8)	3,626 (11.9)	2,387 (7.1)	(8.7)
경 북	3,010 (7.4)	14,692 (8.8)	1,594 (9.1)	2,844 (9.3)	3,283 (9.7)	(9.0)
경 남	3,515 (8.7)	15,143 (9.0)	1,536 (8.8)	2,966 (19.8)	2,836 (8.4)	(9.0)
제 주	488 (1.2)	2,231 (1.3)	247 (1.4)	354 (1.2)	414 (1.2)	(1.3)
무응답	- (0.0)	63 (0.0)	4 (0.0)	9 (0.0)	8 (0.0)	(0.0)

註: 전체비율은 유형별 비율에 각 유형의 점유비율을 곱하여 합한 것임.

資料: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록장애인 전산자료, 1995.

道地域에서도 中小都市 보다는 郡地域에 障碍人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군지역 인구의 총인구에 대한 비율이 1995년 21.4%인데 비해 군지역의 障碍人 비율은 37.4%를 보이고 있어 농촌지역의 장애인 인구비율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障碍人 및 老人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서 농촌 등 군단위의 便宜施設 政策을 소홀히 다룰 수 없다. 도소재지 중소도시의 장애인 비율도 25.4%나 되고 이들 지역이 읍·면 등 지역과 거리가 가까우므로, 中小都市와 공통의 성격을 갖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군 인접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연계하는 편의시설 供給方案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表 3-15〉 地域別 登錄障碍人 分布 比率(1995年)

(단위: 명, %)

구 분	대도시	기타도시	군지역	전국
총인구	35,036,473		9,572,253	44,808,726
지체장애	63,583 (38.0)	44,016 (26.3)	59,728 (35.7)	167,327 (100.0)
시각장애	6,828 (38.9)	4,061 (23.1)	6,657 (37.9)	17,546 (100.0)
청각·언어장애	9,604 (31.5)	6,619 (21.7)	14,293 (46.8)	30,510 (100.0)
정신지체	12,523 (37.0)	8,897 (26.3)	12,420 (36.7)	33,840 (100.0)
계	92,538 (37.1)	63,587 (25.5)	93,098 (37.4)	249,223 (100.0)
등록장애인/총인구	0.45		0.97	0.56

資料: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록장애인 전산자료, 1995.

이러한 의미에서 中小都市는 大都市와의 공통적 특성을 갖는 편의시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농촌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공급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중소도시 및 대도시를 포함한 도시 장애인이 62.6%에 이르고 있으므로 都市型 便宜施設의 공급이

중요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지역(郡)에 거주하는 障碍人 비율도 37.4%나 되므로 農村에 맞는 便宜施設 供給이 이루어져야 한다.

〈表 3-16〉 市·道地域의 年齡別 登錄障碍人 分布

(단위: %)

장애 유형	연령	전 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세 주
지체 장애	0~ 6세	0.3	0.5	0.3	0.2	0.3	0.4	0.7	0.4	0.1	0.3	0.1	0.2	0.07	0.1	0.2	0.04
	7~18세	3.9	4.6	4.4	3.6	3.6	4.3	4.1	3.9	3.8	4.6	3.6	3.6	3.3	3.1	3.9	3.7
	19~25세	6.4	6.8	7.1	5.5	5.9	6.6	5.7	5.6	5.8	6.5	6.4	6.9	7.1	5.4	6.1	12.0
	26~30세	8.8	10.8	9.5	9.2	9.8	9.8	7.8	9.0	6.7	8.8	7.1	8.6	7.9	7.3	7.8	15.6
	31~40세	23.9	26.9	24.7	27.8	29.5	25.3	28.5	28.4	20.1	23.1	20.3	21.6	18.1	21.2	21.0	18.6
	41~50세	21.9	21.6	23.9	25.7	23.5	22.4	23.6	22.1	21.7	21.4	21.7	21.7	19.2	21.1	22.0	15.2
	51~60세	19.3	17.6	18.0	17.2	17.4	17.7	17.0	17.5	24.1	20.0	22.8	19.7	21.5	20.7	20.1	17.5
	61세 이상	15.5	11.3	12.2	10.8	10.0	13.5	12.4	12.8	17.5	15.3	18.0	17.6	22.8	21.1	18.8	17.4
시각 장애	0~ 6세	0.4	0.2	0.4	0.9	0.4	0.5	1.3	0.7	0.4	0.7	0.2	0.2	0.4	0.2	0.3	0.4
	7~18세	4.5	5.6	4.7	5.7	9.1	6.9	4.1	2.7	2.5	7.3	2.7	3.1	4.3	1.9	3.7	5.3
	19~25세	6.0	8.3	6.7	6.1	5.7	6.9	8.8	4.2	3.8	7.9	3.7	5.6	5.4	4.1	5.0	4.0
	26~30세	5.5	8.2	6.0	8.2	6.1	6.4	10.8	5.6	3.7	6.7	2.0	4.3	3.2	3.8	4.2	4.9
	31~40세	15.7	21.3	16.7	21.3	27.2	15.4	18.7	18.8	12.8	13.3	6.1	12.5	9.9	10.5	12.8	9.3
	41~50세	20.1	23.3	21.0	24.3	21.3	21.8	19.4	21.5	19.6	16.2	11.4	18.0	15.8	19.7	18.6	15.0
	51~60세	22.5	19.7	22.3	21.7	16.2	19.4	20.4	21.5	27.0	25.9	14.5	24.3	25.7	23.9	23.0	21.5
	61세 이상	25.1	13.3	22.1	17.3	14.0	22.8	16.6	22.5	30.2	22.1	32.9	32.1	35.3	35.9	32.4	39.7
청각 · 언어 장애	0~ 6세	0.8	2.3	1.3	0.5	1.0	0.8	0.9	1.1	0.1	1.0	0.4	0.6	0.2	0.1	0.4	0.6
	7~18세	9.6	13.2	11.7	8.8	11.4	12.4	11.3	10.9	7.5	12.2	7.1	8.0	7.0	6.9	8.6	11.9
	19~25세	11.1	13.3	13.9	12.2	11.2	18.3	14.5	11.7	9.1	9.9	9.6	9.7	9.6	7.8	11.4	13.8
	26~30세	8.7	10.9	12.3	12.5	10.5	9.4	10.4	9.4	9.1	9.3	7.3	8.1	8.2	8.5	9.4	10.5
	31~40세	22.8	24.4	27.3	27.9	24.9	22.8	23.6	23.5	22.0	21.2	20.4	21.7	22.1	21.7	17.0	18.4
	41~50세	16.3	18.9	11.9	14.3	15.7	13.8	16.6	15.8	16.6	16.2	18.9	18.5	16.6	18.9	17.2	15.0
	51~60세	4.0	11.9	12.8	14.3	14.8	12.3	12.6	15.3	19.1	18.0	20.0	17.3	21.3	19.6	17.5	17.8
	61세 이상	13.2	9.4	8.7	9.5	10.6	10.1	10.1	11.6	16.1	12.0	16.2	16.2	15.1	15.7	15.7	12.1
정신 지체	0~ 6세	1.4	1.9	1.1	2.1	1.5	1.7	2.9	2.2	0.3	1.3	0.6	0.6	0.6	0.8	1.6	1.7
	7~18세	28.4	39.0	32.9	28.7	37.0	28.3	33.6	33.7	21.1	26.1	15.1	19.6	16.3	27.5	21.4	23.2
	19~25세	25.6	27.8	30.7	29.6	23.9	28.3	27.8	23.7	25.9	22.2	22.3	25.5	22.5	24.5	11.5	32.9
	26~30세	13.9	11.6	14.1	12.5	12.9	13.9	9.9	13.3	16.8	17.2	14.7	13.9	16.6	13.2	7.5	10.7
	31~40세	17.8	13.3	14.3	17.7	17.8	17.5	14.2	17.2	19.9	19.5	22.8	21.4	21.1	18.3	8.9	16.9
	41~50세	7.6	4.2	5.1	5.9	4.8	6.7	7.1	6.0	8.4	7.9	11.3	10.7	11.7	8.5	4.5	8.0
	51~60세	3.8	1.4	1.3	2.2	1.5	2.9	3.0	2.9	5.4	4.1	6.3	6.3	7.9	4.7	2.2	4.1
	61세 이상	1.7	0.7	0.6	1.4	0.6	3.7	1.4	1.1	2.1	1.8	3.0	1.9	3.2	2.3	2.2	2.4

資料: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록장애인 전산자료, 1995.

道·郡 혹은 農村地域에 장애인 이 상대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 및 대도시 지역에서의 거주경쟁력 취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道地域에서 장애인 중 高齡者(61세 이상)의 비율이 큰 것은 특히 視覺障 碍人에서 현저하다. 시각장애인 중 61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대도시는 22% 미만의 비율을 보이는데 비해, 제주(39.7%)를 비롯한 경기도·충북 제외한 모든 도지역에서는 30%가 넘는다.

전 登 録 障 碍 人 의 67.1%를 차지하는 肢體障 碍人의 경우에도 대도시의 노인 지체장애인의 비율은 10%를 넘는데 비해 道地域은 경기도 및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17~23%의 노인 지체장애인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精 神 遲 滯에서는 노인 정신지체자의 비율은 매우 적고 7~25세 사이의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크며, 이 비율도 도지역 보다는 대도시지역에서 높은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年 齡 分 布를 보면 총 인구수가 많은 중장년층에서 장애인 인수가 많아, 肢體障 碍人의 23.9%가 31~40세에 몰려 있고 이를 정점으로 장애인 점유비율이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視覺障 碍는 41~50세에서 20.1%, 聽覺·言 語障 碍는 31~40세대에서 22.8%, 精 神 遲 滯는 19~25세에서 25.6%의 정점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老人 등에 대한 편의시설이 특히 농촌 등을 중심으로 역점을 두고 제공되어야 하지만, 전체적인 편의시설 주요 공급대상은 20~60세 사이의 靑壯年層에 두어져야 한다(表 3-16 참조).

나. 市·郡·區別 分 布

市·郡·區는 장애인 이 便 宜 施 設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地域單位라 할 수 있다. 就業率이 낮고 거동의 不 便 度가 큰 이들이 주로 利用하는 근린공공시설 및 생활시설이 이 지역단위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장애인의 시·군·구 분포상태를 1995년 전국의 登 録 障 碍 人 통계를 이

용하여 보면, 전체 시·군·구지역의 인구에 대한 장애인의 비율은 평균 0.708%이고, 평균 이하의 장애인 인구비율을 보인 시·군·구는 약 62%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0% 이상의 장애인 비율을 보인 시·군·구는 약 23.1%로서, 이 지역이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1.0% 이상의 장애인 인구비율은 大都市 보다는 시·도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전남의 16개 시·군을 비롯하여 강원도 9개 시·군, 전북 및 경북 8개 시·군, 경남 7개 시·군, 충청남·북 각각 5개 시·군, 경기도 및 제주도 각 1개 시·군이다. 이에 비해 대도시인 인천광역시에서만 1.0%를 넘고 있다.

가장 登錄障礙人口 比率이 큰 지역은 강원도 정선군의 2.49%로서 인구 53,833명에 1,338명이 장애인이다. 장애인구비율이 그 지역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需要의 강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便宜施設의 성격상 그리고 그것이 갖는 公共財的 性格으로 인해 수요자의 규모가 중요한 수요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즉 비록 장애인구 비율이 크더라도 장애인수가 몇 명 안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供給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국의 장애인 인구비율이 1.0% 이상인 63개 시·군·구 중 50개 지역의 登錄障礙人數가 999명 이하이고 500명 미만의 지역도 12개나 된다. 그리고 1.0% 이하의 지역 중 2,000명 이상의 障礙人이 거주하는 지역이 17개에 이르나 1.0%를 넘는 장애 인구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없다. 더욱이 장애인인구 비율 1.0%가 넘는 지역이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1.0% 이상의 장애인구 밀도를 보이면서 가장 많은 장애인수가 사는 지역인 고흥군에 1,577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천명 이상의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도 장애인구비율이 1.0%가 넘는 16개 지역 중 4개에 불과하다. 강원도의 경우도 9개 시·군이 1.0%를 넘는 장애인구비율 지역이 있으나 정선군의 1,339명을 제외하면 모두 1,000명 미만이고 500명 이하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군도 6개지역이다(表 3-17 참조).

1995년 현재 障碍人數가 1,0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총 227개 시·군·구에서 82개 지역이다. 이 중에는 3,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를 비롯하여 2,0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 17개, 1,5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 40개에 이른다. 그러나 대도시 보다는 도지역에 1,000명 이하의 장애인이 사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다(表 3-18 참조).

〈表 3-17〉 障碍人口比率이 1.0% 以上인 市·郡·區의 登錄障碍人數 分布

장애인 규모	500명 미만	500~ 999명	1,000~ 1,499명	1,500~ 1,999명	2,000명 이상	계
시·군·구수	12	38	9	4	0	63

資料: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록장애인 전산자료, 1995.

〈表 3-18〉 全國 市·郡·區의 登錄障碍人數 分布(1995年)

구 분	500명 미만	500~ 999명	1,000~ 1,499명	1,500~ 1,999명	2,000명 이상	계
서울	3	1	9	4	9	26
부산	5	1	3	3	2	14
대구	2	1	3	1	1	8
인천	4	2	1	1	1	9
광주	1	0	2	2	0	5
대전	0	1	2	2	0	5
경기	9	13	3	5	1	31
강원	10	5	3	0	0	18
충북	3	7	0	0	1	11
충남	5	4	5	1	0	15
전북	4	4	3	1	1	13
전남	2	18	3	2	0	25
경북	10	10	3	0	0	23
경남	4	13	1	1	1	20
제주	1	2	1	0	0	4
계	63	82	42	23	17	227

따라서 障礙人 便宜施設의 지역별 설치는 첫째, 지역별 장애인 인구규모를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함으로써, 대도시 등 障礙人 密集地域에 우선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장애인 밀집지역의 공급치중은 장애인의 密集化 現象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빈민 장애인의 밀집에 따른 슬럼효과를 차단하면서 편의시설의 이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適正規模를 결정해야 하고, 이 지역내에서의 슬럼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도 장애인의 住居分布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資料가 수집되지 않은 인천과 전남을 제외한 1997년도에 장애인이 밀집된 市·郡·區를 보면(附表 8 참조) 6,003명의 노원구를 비롯하여 3,0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 7개구, 부산의 부산진구 1개구, 대구 달서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총 20개 지역이 있다. 全國에 2,000명이 넘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서울 19개구, 부산 6개구, 대구 4개구, 대전 3개구, 강원도 2개시, 경기도 9개시군, 충북 2개시, 충남 3개시, 경북 3개시, 경남 5개시, 전북 5개시 등으로 전남과 인천을 뺀 전국의 62개 시·군·구이다(附錄 3 참조).

둘째, 장애인의 人口分布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密集度가 높은 지역에도 편의시설 설치의 優先順位가 높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1995년 장애인 편의시설의 需要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판단되는 장애인 인구밀도가 크고(1.0% 이상) 장애인 수도 많은(1,000명 이상) 지역을 보면, 인천시 중구, 강원도 정선군, 충남 논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전북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고흥군, 화순군, 해남군, 제주 북제주군이 해당되고 있다.

셋째, 장애인 편의시설의 需要는 障礙의 程度에 의존하는데, 장애의 정도가 지역간에 차이가 나면 지역별 편의시설의 공급에 이를 반영하

여야 한다.

〈表 3-19〉 地域別 肢體障 碍等級의 分 布

(단위: 명)

장애부위	장애유형	대도시	기타도시	군지역	계
팔	1급	2,892	1,914	2,406	7,212
	2급	6,001	4,428	6,875	17,304
	3급	7,603	5,006	7,844	20,453
	4급	4,006	2,738	3,570	10,314
	5급	1,819	1,341	1,742	4,902
	6급	1,320	945	1,269	3,534
	계	23,641	16,372	23,706	63,719
다리	1급	2,685	1,886	2,164	6,735
	2급	5,196	3,136	4,293	12,625
	3급	5,386	4,052	4,667	14,105
	4급	12,445	8,494	11,890	32,829
	5급	4,856	3,307	4,895	13,058
	6급	2,948	2,196	3,284	8,428
	계	33,516	23,071	31,193	87,620
몸통	1급	354	263	287	904
	2급	394	380	495	1,269
	3급	875	1,033	1,182	3,090
	4급	62	91	80	233
	5급	1,275	1,170	1,477	3,922
	6급	57	53	44	154
	계	3,017	2,990	3,565	9,572

資料: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록장애인 전산자료, 1995.

〈表 3-19〉에서 보면 전체 장애인 중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큰 1급 및 2급 장애인의 지역분포는 대체로 전체 장애인의 지역분포와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다. 1급 및 2급 장애인의 약 35.9%가 군지역에 살고 있어, 도시에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고, 같은 비율의 정도로重症障 碍人이 많이 살고 있어, 障 碍 人 비율과 重症의 비율의 가중하게 되면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대도시에 1급 및 2급 장애인

이 38.1%나 살고 있어, 같은 비율 정도로 장애인이 大都市에 살고 있다면 전체 편의시설 수요의 약 40% 이상이 대도시에 공급되어야 한다. 특히 가장 重症인 1급 장애인의 약 40%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팔 40.0%, 다리 39.9%, 몸통 39.1%) 大都市에 편의시설의 集中度는 거의 50%에 육박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表 3-20〉 市·道別 重症 障礙人의 分布

(단위: 명, %)

	1급	2급	계
서울	3,090	14,629	17,719(18.1)
기타 대도시	1,511	17,457	18,968(19.4)
경기	1,399	10,552	11,951(12.2)
강원	206	4,266	4,472(4.6)
충북	1,164	3,647	4,811(4.9)
충남	1,233	5,423	6,656(6.8)
전북	507	6,547	7,054(7.2)
전남	357	7,032	7,389(7.6)
경북	1,254	7,699	8,953(9.2)
경남	609	7,978	8,587(8.8)
제주	64	1,122	1,186(1.2)
계	1,1394	86,352	97,746(100.0)

資料: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록장애인 전산자료, 1995.

시·도별 및 시·군·구별로 障礙類型 및 等級의 分布에 차이가 나면 이를 편의시설의 지역별 공급규모 결정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障礙類型別 分布는 전체 장애인 분포와 유사하다. 그리고 障礙程度에 따른 분류에서도 시·도간의 분포는 전체 장애인의 분포상태와 유사하다. 따라서 大都市에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集中度의 強化는 물론 시·도간에도 장애인의 分布比率과 같이 편의시설 供給을 더욱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서울의 장애인 분포비율은 17.5%이지만 1급 및 2급의 비율은 18.1%이고 편의시설의 必

要件이 큰 視 覺 障 碍 人의 比 率은 20.6%이어서 서울지역에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供 給은 최소한 전체 시설의 약 20%를 점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군·구별로도 障 碍 類 型 및 障 碍 等 級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인 분포비율과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분포비율은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障 碍 人의 數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1995년도에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도봉구에서 전체 장애인의 分 布 比 率은 서울 총계의 7.7%이고 肢 體 및 視 覺 障 碍 人의 分 布 比 率은 각각 8.2% 및 6.3%이었고, 장애등급 중 1급 10.4%, 2급 7.2%, 3급 7.3%이었다. 서울 30개구의 다른 구에서도 전체 분포비율과 障 碍 程 度를 나타내는 비율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시·군·구별 편의시설의 공급은 시·도별 공급에서와 같이 장애인 분포비율보다 약간 높은 비율에서 차등을 두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장애유형과 지역별 분포의 특성이 편의시설의 설치 必要水準의 決定에 영향을 주겠지만, 어떠한 유형의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의 규모와 내용으로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얻기는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登 錄 障 碍 人이 응답한 必要 補 裝 具의 종류별 비율이 需 要의 추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요보장구의 응답(응답자 25,603명)비율에서 불필요하다는 사람은 불과 2.9%이다. 물론 이 중에는 보장구도 전혀 도움을 못주는 장애인과 보장구가 없어도 活動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적지 않은 장애인이 편의시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障 碍 狀 態에 있음을 하지 보조기 및 휠체어를 필요 보장구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43.1%에 이르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특히 휠체어를 원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 응답자의 18.6%에 이르고 요추 및 척추보조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1.4%이어서 便 宜 施 設의 상당한 개선을 요구하는 障 碍 人이

적어도 약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表 3-21〉 登録障碍人の 必要 補装具

(단위: %, 명)

필요 보장구	비 율
목발	14.0
휠체어	18.6
상지 보조기	4.0
하지 보조기	24.5
의수	16.0
의족	15.5
교정신발	0.9
척추 보조기	0.9
요추 보조기	0.5
불필요	2.9
기타	1.5
계	100.0(25,603)

資料: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록장애인 전산자료

下肢補助器나 목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정상인 보다는 편의시설의 이용에 不便度가 클 것으로 보여, 전체장애인의 38.5%에 이르는 이들에게 적합한 유형의 便宜施設의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의족까지를 포함하면 이 정도의 개선이 필요한 장애인은 약 54%에 이를 것이다. 물론 상지보조기 및 의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는 重複障碍人이 있어 이들 중에도 便宜施設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의족 및 하지보조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는 편의시설의 이용에 별로 不便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하지 및 몸통에 문제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편의시설에의 接近과 利用에 불편을 느낄 것으로 가정할 때, 이들의 편의시설 改善欲求의 程度와 개선이 필요한 便宜施設의 類型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第 4 章 障碍人の 便宜施設 利用實態 및 欲求

第 1 節 障碍人 便宜施設에 대한 欲求調査

1. 標本の 選定

政策의 效果를 높이기 위해 便宜施設의 欲求가 集中的으로 발생되리라고 추정되는 障碍人 密集地域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편의시설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農村地域은 조사 연구의 제약상 제외하였다. 障碍人들 중에는 零細民이 상대적으로 많고, 또한 永久賃貸아파트에 몰려 있는 사람이 많으므로 아파트 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登録障碍人을 대상으로 각각 50% 정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선택된 標本內容은 다음과 같다. 지역은 장애인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서 大都市에는 서울 노원구 및 관악구를, 中小都市에서는 군산시의 나운1동 및 나운2동을 선정하여 서울 395명 및 군산 200명의 標本을 각각 배정하였다.

총표본 595명

서울: 영구임대아파트 - 노원구 중계3동 100명 및 월계2동 100명
일반주거지역 - 관악구 봉천2·3·5동, 96명 신림 7·13동 99명
군산: 영구임대아파트 - 나운2동 100명
일반주거지역 - 나운1동 100명

障碍人 중 편의시설의 이용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만이 便宜施設 增進 欲求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 장애인 중 이들만을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政策 對象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조사의 대

상인 登録障碍人들 중에는 편의시설 이용정도에서 장애인 개개인간 그리고 대상시설별로 차이가 많이 발견되었다.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경미하여 施設利用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함이 거의 없는 장애인들이 있는가 하면, 장애의 정도 및 유형에 따라 혹은 가족의 構成關係에 따라 이용가능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上肢를 못 쓰느냐 혹은 下肢를 못 쓰느냐에 따라 필요한 편의시설이 다를 뿐 아니라 가족 중 활동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는냐에 따라 便宜施設의 利用現況이 다르게 나타났다.

조사된 장애인 중 외출시 補裝具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편의시설의 利用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補裝具는 필요 없지만 노인 등과 같이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나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최소한 51.6%는 便宜施設에 대한 欲求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4-1〉 調査對象 障碍人の 外出時 必要 補裝具

(단위: %, 명)

필요 보장구	제 1순위	제 2순위
계	100.0(578)	100.0(577)
비해당	0.5	92.4
이용안함	47.9	0.0
목발·지팡이	23.2	1.4
휠체어	7.8	0.9
전동 휠체어	1.6	0.5
보조기	1.6	1.0
의수족	3.8	0.2
흰지팡이	4.2	0.3
시력보조기	2.4	0.2
보청기	4.7	0.0
체외전기후드	0.7	2.9
안내인	1.2	0.0
기타	0.5	0.0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욕구조사, 1997.

그리고 서울시의 1995년 登錄障礙人 조사에서도 경미한 장애로 이동에 불편이 없는 장애인의 비율이 15.3%(肢體障礙人 20.2% 및 視覺障礙人 4.0%)이어서(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37) 본 조사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보장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을 편의시설 欲求者로 분류하므로써 수요를 추정하는 기준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으나, 重症障礙로 인해 이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도 便宜增進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면, 편의시설 수요 크기는 본 조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다.

忠淸南道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5,459명 중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있음을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對象施設別로 차이가 있으나 가장 큰 비율은 시내버스의 51.3%이었다. 그러나 편의시설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데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면 충남 장애인의 편의시설 利用 不便者의 비율은 51.3%를 넘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조사, 서울시 및 충남조사를 해석해 보면, 전국 장애인 중 최소 51.3%에서 72.4% 정도는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欲求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全國의 약 105만의 장애인 중 51~73만명 정도가 편의시설의 이용 증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편의시설 개선욕구를 지닌 登錄障礙人들의 편의증진에 대한 욕구 정도는 서울시 調査資料에 의하면 5점척도의 滿足度 調査에서 불만족의 점수인 2.046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수준은 모두 12가지의 障礙人 福祉調査 항목 중 醫療保障制度 다음으로 2번째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으로써(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28), 서울시의 최근 편의시설 확충 노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70%에 이르는 등록장애인은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편의시설에 대한 需要規模가 적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 調査票 作成 基本方向

- 1) 기존의 서울시 및 忠南의 복지수요 및 편의시설 조사양식을 기초로 하되, 장애인의 입장에서 편의시설이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 대상시설별로 편의시설설치 優先順位뿐 아니라 현재의 설치실태 및 필요도에 대한 利用者の 판단을 조사함으로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政策 및 投資의 優先順位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 2)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需要는 규모의 방대성 및 내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시에 충족되기 어려우므로 가장 수요가 큰 혹은 便益/費用이 큰 施設, 對象者, 地域부터 段階別로 擴大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구성했다.
- 3) 단계별로는 가장 긴요도가 큰 대상 및 시설을 먼저 集中 支援할 필요가 있어서, 公共施設 이외에 住居 및 近隣施設, 事業場施設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에서 보다 比重을 많이 두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3. 調査票의 概要(附錄 參照)

장애인가구의 一般事項으로는 장애유형, 가구유형(가구원규모, 생활보호가구여부, 등록여부 등), 성별, 연령, 학력, 결혼, 거주형태, 직업 및 종사상의 위치, 소득 및 재산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利用實態 및 欲求調査를 위해서 편의증진의 緊要度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가정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각 대상시설별로 편의시설 이용실태 설치여부, 필요의 정도,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였다. 각 대상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된 편의시설의 종류는 ‘障礙人便宜施設 및 設備의 設置基準에 관한規則’(1995.1.1)을 참고하였다. 對象施設은 크게 公共施設, 近隣施設,

事業場施設로 나누었다. 公共施設에는 交通施設로 지하철 및 철도, 철도역사 및 버스터미널을 포함하였고, 도로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같은 공공업무시설,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도서관 등을 포함한 近隣公共施設 등에 대해서도 각각 편의시설 관련조사를 하였다. 近隣生活施設로 주거시설, 슈퍼마켓, 은행, 약국, 시장, 이·미용실, 공중목욕탕, 식당/커피숍 등이 별도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宗教施設, 社會福祉施設, 醫療施設, 觀覽集會 및 展示施設, 公園 및 遊園地, 販賣施設 및 宿泊施設, 運動施設, 學校 및 學院, 그리고 工場 및 産業施設 등에 대해 각각 설치정도, 개선의 필요정도, 설치필요성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였다.

각 대상시설에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施行令에 勸奨設備로 제시된 것 이외에도 대상시설별 특성에 맞추어 추가되었다. 法的 勸奨設備로 肢體障碍人의 편의시설인 주출입구 진입로, 주출입구 단차제거, 출입구, 복도 및 계단의 유효폭과 손잡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전화기, 장애인용 화장실, 욕실/샤워실, 승강기/리프트, 비상등 및 경보기, 자동판매기 높이, 의자/작업대 높이와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인 점자블럭, 점자표지판,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기숙사/사업장내 상황인식 램프, 청각장애인용 증폭전화기 및 Fax 등이 각 대상시설 특성별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편의시설의 조사는 가능한 出發地에서 到着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도착시설내에서의 활동편의가 이루어지도록 活動線上의 연속상에서 편의시설 수요를 발견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公共施設 및 近隣地域까지의 접근방법과 사업장까지 접근하기 위한 편의증진방법의 優先順位 등이 조사되었다. 또한 편의증진 방안이 다수 존재할 때 장애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안의 優先順位를 조사하였다.

第2節 調査對象 障碍人の 社會經濟的 背景

조사된 登録障碍人は 전체 등록장애인과 같은 특성을 보이며 障碍類型을 보면 본 조사에서는 精神遲滯人이 조사되어 있지 않아,⁶⁾ 肢體障碍人の 비율이 약 79.7%에서 전체 등록장애인에서 정신지체를 제외한 지체장애인의 비율은 77.7%이다. 視覺 및 聽覺・言語障碍者の 비율은 구성비율에 차이가 있어, 편의시설 需要分析에 영향을 줄 것이나 장애인의 대부분인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거의 일치하여 전체 장애인의 편의시설 需要比較나 각 유형의 需要分析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表 4-2〉 調査對象 障碍人の 障碍類型別 分布

(단위: 명, %)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100.0(595)	79.7	9.7	9.9	0.7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욕구조사, 1997.

본 조사의 障碍級數의 分布는 전체 등록장애인에 비해 다소 조사 편의가 유리한 장애급수 장애인의 分布 比率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편의시설의 利用側面에서 이와 관련된 장애인이 주요 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경미한 장애인의 경우 편의시설 욕구가 政策決定에 다소 약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제한된 자원에 맞춘 優先順位의 정책결정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表 4-3 참조).

6) 정신지체와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와 같이 조사표에 응답이 어려운 경우는 배제하였음.

〈表 4-3〉 調査對象 障碍人の 障碍等級 分布

(단위: 명, %)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00.0(594)	16.8	28.6	25.4	20.0	7.0	2.0

註: 조사된 등록장애인은 중증이나 경증으로 인해 편의시설 이용 불가 혹은 불편이 없는 사람은 배제된 장애인임.

조사된 장애인의 年齡 分布도 전체 登録障碍人の 연령분포와 큰 차이가 없다. 예컨대 본 조사에서의 등록장애인의 年齡分布比率은 30~5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 登録肢體障碍人の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각 연령대의 分布比率도 거의 같다(表 4-4 참조).

〈表 4-4〉 調査對象 障碍人の 年齡別 分布

(단위: 명, %)

계	7~18세	19~25세	26~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0세이상
100.0(592)	3.5	6.3	6.8	22.8	22.9	22.0	15.7

調査對象者の 學歷分布도 전체 장애인의 분포(表 4-5 참조)와 거의 같다. 조사대상자의 무학비율이 작고 고졸의 비율이 큰 것을 제외하면 분포비율 자체도 거의 유사하므로 본 조사가 便宜施設 欲求의 추정에 편기를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表 4-5〉 調査對象 障碍人の 學歷別 分布

(단위: 명, %)

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특수학교	대학이상
100.0(581)	16.0	29.4	16.2	25.5	1.4	5.9	5.6

初等學校 卒業의 학력이 가장 많고, 29%대의 비율도 거의 일치한다. 다만 본 조사의 대상자 통계는 응답이 가능한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登錄障礙人의 분포는 연령과 관계없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분포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연령과 관련된 分布比率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차이점이다.

조사대상 장애인의 家口規模는 3인 및 4인가구에서 最頻値를 보이고 있어 일반가구와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26.1%가 한 가구에 두명 이상의 장애인이 살고 있어 家口員의 特性은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結婚狀態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배우인 경우가 가장 많고(65.0%), 미혼(21.6%), 사별 등의 순이었다(表 4-6 및 表 4-7 참조).

〈表 4-6〉 調査對象 障礙人의 家口規模別 分布

(단위: 명, %)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100.0(592)	5.4	20.3	26.2	28.7	13.7	4.2	1.5

〈表 4-7〉 調査對象 障礙人의 結婚狀態別 分布

(단위: 명, %)

계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별거
100.0(592)	21.6	65.0	3.4	9.1	0.8

調査對象者의 경제적 상태를 보면, 調査家口의 대부분인 76.9%가 99만원 이하의 低所得層으로서, 소득있는 직업을 가진 장애인의 비율도 31.1%에 불과하다. 重症障礙人은 물론 경증의 장애인들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어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원하는 장애인의 약 69.0%가 장애로 인해 就業을 못하고 고용주의 장애인 기피 이유도 7.4%에 이르므로 장애라는 이유로 어떠한 저소득 직종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약 76.4%에 이른다. 이러한 經濟的 脆弱性은 장애인의 편의시

설 수요를 제한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장차 장애인의 자가 혹은 이 전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편의시설에 대한 需要를 增大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表 4-8〉 調査對象 障 碍 人 의 家 口 所 得 水 準 別 分 布

(단위: 명, %)

계	50만원 미만	50~ 99만원	100~ 149만원	150~ 199만원	200만원 이상
100.0(572)	46.7	30.2	16.1	4.9	2.1

〈表 4-9〉 調査對象 障 碍 人 의 無 職 理 由

(단위: 명, %)

계	편의시설 부족	기술기능 부족	정보 부족	장애로 인해	장애인 고용기피	기타
100.0(378)	0.8	7.1	2.9	69.0	7.4	12.7

장애인의 편의시설 欲求에 영향을 줄 장애유형 및 등급, 연령, 학력 등 개인의 사회적 배경, 가족특성, 그리고 경제적 상태외에 현재의 주거유형 및 외출형태도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조사에서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포함시킨 것은 1989년 이후 건설된 영구 임대아파트에 장애인들의 入住가 크게 증가하였고, 도시 주거에서 아파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便宜施設 狀態는 일반 주택지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근거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61%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이 중 약 2/3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건설이 一般人을 대상으로 설계되었고, 영구임대아파트도 障 碍 人 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건설됨으로써 便宜施設의 不足狀態는 적지 않다. 다만 單獨住宅과는 아파트의 構造的 特性으로 생활의 불편은 아파트에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아

직도 장애인의 2/5, 農村을 포함하면 더 많은 비율의 장애인·노인이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주택 등의 共同住宅에 살고 있어 주택내 및 근린시설에서의 生活便益施設의 不足問題는 매우 클 것이다.

〈表 4-10〉 調査對象 障碍人の 住居形態

(단위: 명, %)

계	아파트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다가구	상가 주택	기숙사	공동 숙소	장애인 전용	기타
100.0(595)	61.0	28.4	3.9	5.5	0.7	0.0	0.0	0.2	0.3

〈表 4-11〉 調査對象 障碍人の 住宅保有 形態

(단위: 명, %)

계	자가	전세	월세	영구 임대	보증부 월세	무료 임대	기타
100.0(584)	34.5	17.4	4.5	41.5	1.0	0.5	0.3

第 3 節 障碍人の 對象施設에 대한 欲求現況 分析

지금까지 障碍人の 便宜施設에 대한 需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障碍類型 및 等級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개인의 경제사회적 및 가족의 배경을 보았고, 편의시설 욕구의 代表性을 보기 위하여 전체 登錄障碍人の 특성과 비교하였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욕구에 영향을 줄 間接的 要因의 效果를 종합적으로 보면, 저소득, 저학력, 높은 무직율 및 높은 아파트 거주비율 등은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고연령, 2명이상의 장애인가구 비율 등은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便宜施設 欲求에 대한 직접적인 影響要素로는 장애정도, 장애유형 그리고 장애부위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필요한 편의시설은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나, 어떠한 유형에도 共通으로 이용되는 편의시설이 있다. 예컨대, 경사로, 도로 및 문의 턱, 에스컬레이터 등은 肢體나 視覺障礙者의 시설접근에 모두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할 편의시설이다. 그러나 휠체어는 시각장애인에게 불필요하고 점자블럭은 지체장애인에게 불필요한 것과 같이 必要 便宜施設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장애인 전체의 便宜施設 欲求와 동시에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편의시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便宜施設의 필요정도도 커짐은 물론, 장애부위에 따라 필요정도에 차이가 나타난다. 예컨대 肢體障礙는 하체와 관련된 장애일수록 접근도가 취약하고 편의시설 증진 필요성도 커진다. 그런데 登錄障礙人의 대부분은 下肢障礙人이 가장 많아 본 조사에서 전체 장애인의 7.1%인 척추장애를 포함하면 84.7%가 하지와 관련된 장애이므로 肢體障礙人의 대부분은 편의시설 수요가 클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1995년 전체 登錄肢體障礙人 167,356명 중 응답자의 55.6%가 하지장애, 6.1%가 몸통장애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도 장애인의 대부분이 便宜施設增進 欲求가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表 4-12〉 調査對象 障礙人의 障礙部位 分布

(단위: 명, %)

계	팔	다리	팔 및 다리 ¹⁾	척추	변형 ²⁾	기타
100.0(464)	10.6	53.2	24.4	7.1	2.8	1.9

註: 1) 변형은 왜소증 및 척추후만증을 의미함.

2) 위의 부위가 둘 이상인 장애인은 19명임.

장애인의 편의시설 개선욕구는 그들의 家內活動 뿐 아니라 對外活動을 위한 外出에 의해서도 발생되는데, 직장이나 학교를 가는 것의

에 이들의 주요 外出目的은 일상생활의 필요성에서 나오므로, 이들의 주요 일상생활 공간 및 시설이 편의시설 증진대상이 될 것이다. 日常活動 다음으로는 宗教活動이 주요 외출목적이고 직업 및 교육과 관련되어서도 비슷한 정도의 외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表 4-13〉 調査對象 障礙人の 學校 및 職場 以外の 外出 目的
(단위: 명, %)

계	비해당	사고/단체활동	문화/여가/체육	봉사활동	일상활동	직업/교육	의료/보건	종교활동	기타
100.0(577)	0.2	4.4	5.9	0.8	65.4	9.3	3.2	10.5	0.2

便宜施設을 주택내 및 주택밖의 공간,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나눌 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하는 외출의 주요 목적이 일상생활이므로, 外出의 頻度에서도 단연 일상생활관련 시설에의 외출이 자주 나타난다. 학교 및 직장을 제외함으로써 매일 외출하는 대상시설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슈퍼마켓이 일주일에 2~3회 혹은 매일 가는 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크게 나왔고, 종교시설에서는 일주일에 1회 방문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크게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2~3회 혹은 일주일에 1회 방문하는 障礙人の比率이 40~50%대에 이르는 對象施設은 슈퍼마켓, 종교시설이다. 한달에 1~2회 방문하는 대상시설도 대부분이 일상생활 활동대상이다. 은행, 약국, 이·미용실이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전혀 안간다는 응답자를 제외하면 시장, 사회복지시설, 운동시설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 비율은 10% 정도이거나 그 이하이다. 따라서 한달에 한두번 방문하는 비율이 40% 이상인 은행 및 이·미용실, 35%대의 방문비율을 나타내는 약국은 外出頻度가 매우 높은 대상시설로 볼 수 있다.

〈表 4-14〉 調査對象 障碍人の 外出頻度(學校 및 職場 除外)

(단위: %)

	거의 매일	일주 2~3회	일주 1회	한달 1~2회	1년 2~3회	전혀 안감
슈퍼마켓	7.8	33.2	23.4	17.7	3.5	14.3
은행	1.2	2.4	7.4	46.7	13.7	28.7
약국	0.8	3.9	10.3	35.6	27.5	21.9
시장	1.2	4.0	8.1	13.3	8.0	65.4
이미용실	0.0	0.3	0.7	42.8	40.7	15.5
공중목욕탕	0.2	0.3	7.7	12.3	9.0	70.5
식당/커피숍	2.4	4.9	5.5	11.2	17.0	58.9
종교시설	1.0	3.9	35.5	4.7	6.2	48.7
사회복지시설	1.0	0.8	1.5	9.6	6.2	80.8
병·의원	0.3	2.2	5.2	26.2	40.9	25.2
시·군·구청	0.7	0.0	0.3	3.5	22.9	72.5
동사무소	0.8	1.0	1.2	24.1	37.6	35.2
공원·유원지	4.7	6.7	7.1	11.3	22.4	47.7
호텔·콘도·여관	0.0	0.2	0.0	0.8	4.4	94.6
백화점	0.0	0.3	0.3	3.9	12.8	82.6
운동시설	0.5	0.7	0.3	2.2	1.7	94.6
박물관·미술관	0.0	0.0	0.2	1.2	3.0	95.6
극장	0.3	0.2	0.3	2.0	5.6	91.6

이외에 가장 높은 訪問比率은 아니지만 25% 정도의 방문비율을 보이고 있는 병원 및 동사무소도 장애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대상시설로 볼 수 있다. 1년에 2~3회 가는 빈도에 가장 큰 응답비율을 보인 대상시설은 병원, 동사무소, 백화점, 극장 등이다. 그러나 병원 및 동사무소는 한달에 1~2회 방문한다는 응답에서도 24~26%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시설의 訪問頻度는 대체로 한달에 1~2회 혹은 일년에 2~3회 정도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의 방문을 안하거나 방문이 적은 대상시설은 박물관 및 미술관, 호텔·콘도·여관, 운동시설, 극장 등이고, 80% 정도의 장애인이 전혀 방문 안하는 대상시설은 백화점, 사회복지시설이다. 50% 이상의 장애인이 방문 안하는 비율을 보인 대상시설도 시·군·구청, 공중목욕탕, 시장, 식당/커피숍 등이다.

30~50%대의 장애인이 전혀 방문하지 않는 대상시설은 종교시설 및 동사무소 등이 있다.

이상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訪問하는 對象施設의 순위를 보면 대체로 슈퍼마켓, 종교시설, 은행, 이·미용실, 약국, 병원, 동사무소로 볼 수 있으며, 많은 장애인이 방문하지만 자주 방문하지 않는 대상시설은 공원, 유원지, 식당·커피숍, 시장 등으로 볼 수 있고, 일부의 사람이 방문하나 자주하지 않는 대상시설은 백화점 및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대상시설은 박물관·미술관, 호텔·콘도·여관, 운동시설, 극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이용자 수 및 이용빈도의 측면에서 본 便宜施設 增進欲求의 順位로 볼 수 있다.

公衆利用施設의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욕구는 대상시설의 이용빈도 뿐 아니라 현재의 편의시설 供給狀態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편의시설 설치가 잘 안되어 便宜增進 欲求가 큰 대상시설을 보면, 학생 및 직장인은 물론 관련된 사람의 이용이 잦은 학교 및 사업장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한 많은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일상생활 장소인 슈퍼마켓, 이·미용실, 약국 등은 편의시설이 가장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장애인에 의해 간혹 이용되는 시장, 공중목욕탕, 식당 및 커피숍 등에도 便宜施設 增進이 가장 잘 안된 對象施設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비해 많은 장애인에 의해 비교적 자주 이용되는 병원, 동사무소, 은행, 종교시설은 상대적으로 便宜增進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이용되지 않지만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응답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사회복지시설 및 백화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자주 이용되지 않는 운동시설, 박물관·미술관, 극장, 호텔·콘도 등에도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表 4-15〉 便宜施設이 가장 잘된 對象施設

(단위: %)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슈퍼마켓	0.9	1.7	1.9
은행	10.1	11.7	8.8
약국	0.9	2.8	6.2
시장	0.4	0.6	0.8
이미용실	0.2	0.4	0.4
공중 목욕탕	0.0	1.1	0.4
식당	0.7	0.6	1.2
종교시설	8.6	6.5	8.8
사회복지시설	11.0	9.7	9.6
병원	26.2	16.2	15.4
시군구청	8.2	11.7	8.1
동사무소	19.0	23.1	22.7
공원·유원지	2.7	4.3	5.4
호텔·콘도·여관	0.5	0.6	1.9
백화점	8.6	5.6	5.4
운동시설	0.0	0.2	0.0
박물관·미술관	0.0	0.6	0.8
극장	0.2	0.2	0.4
학교	0.9	0.4	0.0
사업장	0.4	1.3	0.8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이용자 수, 이용빈도, 편의시설 설치정도로 볼 때, 便宜施設 增進欲求가 가장 큰 대상시설도 추론할 수 있다. 이용자 수도 많고, 이용빈도도 크며, 편의시설설치 상태도 劣等한 施設은 학교, 사업장 이외에 슈퍼마켓, 이·미용실, 약국 등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은행, 병원, 동사무소, 종교시설 등은 이용자수도 많고 이용빈도는 다소 떨어지며 조사대상자들의 10~20%가 편의시설 설치정도는 잘되어 있다고 평가한 대상시설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편의시설 설치가 不足한 狀態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편의증진

욕구가 큰 對象으로 볼 수 있다. 일부의 장애인이 한달 혹은 일년에 1~3회 가는 공중목욕탕, 식당/커피숍, 공원/유원지 등은 편의시설설치가 매우 부족하다. 시·군·구청, 사회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나 満足度에서 볼 때 어느 정도 増進이 필요할 것인가 보아야 한다.

〈表 4-16〉 便宜施設이 가장 必要한 對象施設

(단위: %)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슈퍼마켓	14.5	11.0	11.4
은행	4.2	4.9	6.2
약국	2.5	4.4	7.5
시장	4.7	4.4	5.7
이미용실	4.0	4.0	2.8
공중 목욕탕	3.9	4.8	4.7
식당	2.6	3.6	3.9
종교시설	8.4	7.8	6.5
사회복지시설	8.2	10.6	7.8
병원	24.0	15.6	12.1
시군구청	1.4	1.3	1.3
동사무소	2.3	10.5	9.3
공원·유원지	6.7	8.6	11.6
호텔·콘도·여관	0.4	0.4	0.3
백화점	0.2	1.0	1.3
운동시설	1.2	2.3	1.3
박물관·미술관	0.5	0.2	0.3
극장	0.5	1.0	0.8
학교	2.3	1.0	0.8
사업장	7.2	2.5	3.9

조사대상자들에게 편의시설이 가장 필요한 對象施設을 질문한 결과 제1순위로 병원, 슈퍼마켓,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원·유원지, 시장 등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고, 제2순위로 병원, 슈퍼마켓, 사회복지시설, 동사무소, 공원·유원지, 종교시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利用者數나 利用頻度가 크고 편의시설설치 不足狀態도 큰 약국,

이·미용실 편의시설 필요에 대한 反應度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우선순위의 推定과 실제 欲求 사이에 乖離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장 높은 필요 優先順位를 보이는 병의원도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한 장애인의 비율이 26.2%이나 필요도 조사에서도 24.0%라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推定順位와 調査順位에 乖離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편에는 현재 잘 되어 있으나 편의시설설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應答比率이 높은 측면과, 현재 설치가 잘 되었다고는 생각하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改善欲求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수, 이용빈도 및 설치상태를 근거로 한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 우선순위와 장애인이 직접 응답한 편의시설설치 필요 대상시설의 순위를 종합하여 볼 때, 대체로 병원 및 슈퍼마켓, 종교시설, 사업장, 사회복지시설, 공원 및 유원지, 은행, 약국, 동사무소, 이·미용실, 시장, 공중목욕탕, 학교, 식당 및 커피숍, 시·군·구청 등의 순위로 便宜增進 優先順位가 設定될 수 있다.

第 4 節 對象施設別 利用實態 및 欲求

1. 交通施設

가. 便宜施設 設置程度

交通施設은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이 포함되나 본 조사에서는 버스, 지하철, 철도역사와 交通手段인 지하철·전철, 철도와 버스·택시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96년의 전국적인 設置現況 調査에서는 交通施設 중 공항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75.0%로 가장 높았고, 항만여객시설(59.6%), 도시철도역사(49.7%), 버스터미널(36.5%), 철도역사(32.2%)의 순으로 設置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調査對象 장애인 가운데 地下鐵·鐵道驛舍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24%)를 제외하고 지하철·철도역사의 便宜施設 設置必要程度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表 4-17>과 같은데, 障礙類型에 구분없이 전체의 69.1%가 계단의 改善必要性を 지적하여 가장 불편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승강기·리프트의 설치에 대한 必要性도 절반정도가 지적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용 화장실(44.1%)의 개선 필요성도 높았다.

<表 4-17> 交通施設の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단위: %, 명)

구 분		필 요	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31.5	68.5	550
	장애인용 주차구역	26.7	73.3	550
	주출입구 단차제거	49.3	50.7	550
	출입구(문)	35.6	64.4	550
	복도	40.4	59.6	550
	계단	69.1	30.9	551
	장애인용 화장실	44.1	55.9	551
	매표소/판매기 높이	25.0	75.0	551
	승강기/리프트	51.0	49.0	551
	개찰구 높이/폭	25.7	74.3	549
	편의증진요원	59.5	40.5	550
	기타	20.8	79.2	548
시각	점자표지판	58.2	41.8	55
	점자블럭	51.9	48.1	54
청각	비상등	61.4	38.6	57
	화장실 식별램프	56.9	43.1	58
	자막안내방송	89.7	10.3	58
	청각장애용 공중전화	62.1	37.9	58

視覺障碍人의 경우에는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점자표지판에 대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점자블럭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⁷⁾ 한편 聽覺·言語障碍의 경우에는 자막안내방송에 대한 요구가 89.7%로 매우 높았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청각장애인용 공중전화(중폭전화기)와 비상등,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등에 대한 改善을 要求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障碍類型에 관계없이 도우미 등 便宜増進要員의 배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59.5%의 장애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交通施設 중 鐵道나 地下鐵驛舍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가운데 障碍人들이 지적한 優先順位別로 알아보면, 아래의 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순위로 지적한 시설중에는 계단에 대한 不便이 반영되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승강기, 편의증진요원에 대한 요구가 높는데, 승강기는 必要度에서 편의증진요원보다 순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지하철 등에 편의증진요원의 배치가 승강기의 설치보다 더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2순위와 3순위에서는 단차제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설치 우선순위는 계단, 승강기, 편의증진요원, 단차제거 등의 순이라 할 수 있다.

障碍類型別로 設置 優先順位를 구분해 보면, 肢體障碍의 경우에는 역시 계단이 가장 많았고(34.1%), 다음으로는 승강기/리프트(22.4%), 편의증진요원(10.7%)의 순이었으며, 視覺障碍人의 경우에도 계단에 대한 불편이 가장 큰 것(30.0%)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편의증진요원

7) 참고로 점자(유도)블럭의 설치율은 버스터미널 8.1%, 철도역사 19.0%, 도시철도역사 66.2%임.

(20.0%), 점자표지판(15.0%)의 순이었다. 聽覺·言語障礙人 경우에는 자막안내방송(51.1%), 비상등(21.3%), 증폭전화기(17.0%) 등의 순으로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附表 4-1 참조).

〈表 4-18〉 地下鐵·鐵道 驛舍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명)

구 분	1	2	3	4	5
1순위	계단 (29.9)	승강기 (17.8)	편의증진요원 (10.6)	자막안내방송 (6.4)	화장실 (4.5)
2순위	계단 (18.3)	승강기 (15.5)	편의증진요원 (12.3)	단차제거 (11.9)	복도 (10.5)
3순위	편의증진요원 (24.3)	단차제거 (14.6)	계단 (13.3)	승강기 (9.7)	화장실 (7.5)

交通施設 중 버스터미널의 경우에는 地下鐵이나 鐵道驛舍와 달리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사항으로서 便宜增進要員의 配置를 들고 있다. 이는 지하철과는 달리 버스터미널에는 편의증진요원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아 物理的인 施設보다도 안내인과 같이 人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버스터미널에서 계단 및 승강기의 改善必要度가 상대적으로 적어 設置 優先順位는 편의증진요원, 계단, 단차제거, 승강기 등의 순으로 앞서의 鐵道驛舍와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응답빈도가 높지는 않다. 障礙類型別 설치 우선순위는 肢體障礙의 경우 계단과 편의증진요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視覺障礙는 편의증진요원과 점자블럭, 聽覺·言語障礙는 자막안내방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많았으며, 증폭전화기에 대한 要求度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附表 4-2 참조).

〈表 4-19〉 버스터미널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편의증진요원 (19.7)	계단 (17.9)	단차제거 (11.8)	승강기 (9.6)	자막안내방송 (9.2)
2순위	편의증진요원 (20.6)	계단 (17.2)	단차제거 (12.8)	승강기 (10.6)	화장실 (7.8)
3순위	편의증진요원 (17.6)	단차제거 (16.7)	화장실 (12.0)	계단 (10.2)	승강기 (7.4)

2. 交通手段

가. 便宜施設 設置程度

障 碍 人 의 移 動 과 关 련 있 는 交 通 手 段 의 편 의 시 설 설 치 현 황 에 关 한 資 料 은 거 의 전 무 한 실 정 이 다. 電 鐵 이 나 鐵 道 의 경 우 장 애 인 을 위 한 시 설 로 는 障 碍 人 指 定 席 이 있 으 며, 버 스 의 경 우 에 는 음 성 안 내 방 송 이 있 으 나 장 애 인 들 의 이 용 빈 도 에 비 해 전 반 적 으 로 便 宜 施 設 의 설 치 가 부 진 한 형 편 이 다. 선 진 국 의 경 우 에 는 장 애 인 을 위 한 저 상 버 스 를 일 정 배 치 하 여 운 행 하 고 있 고, 주 요 鐵 道 의 경 우 에 도 자 막 안 내 를 통 해 편 의 를 도 모 하 고 있 으 며, 택 시 에 도 자 동 문 을 설 치 하 여 일 반 인 도 쉽 게 이 용 할 수 있 도 록 하 고 있 다. 우 리 의 경 우 시 설 설 치 보 다 는 장 애 인 의 이 동 을 돕 기 위 한 自 願 奉 仕 중 심 의 차 량 봉 사 대 등 을 운 영 하 여 障 碍 人 의 外 出 을 돕 고 있 다.

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障 碍 人 들 이 이 용 하 는 交 通 手 段 을 철 도 (전 철) 와 버 스 (택 시) 로 區 分 하 여 便 宜 施 設 에 关 한 사 항 을 아 라 본 결 과 는 전 철 이 나 철 도 의 경 우 障

碍人 指定席에 대한 개선 필요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의 73.9%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현재 전철의 경우 老弱者 指定席이 마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 지정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鐵道에 있어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移動, 搭乘과 連繫不足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과반수 이상의 장애인들이 乘下車 補助에 대한 必要性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하철이 아니라 철도의 경우에는 더욱 필요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승강대의 높이도 장애인들이 승하차시 지나치게 높아서 不便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表 4-20〉 地下鐵·鐵道·電鐵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단위: %, 명)

구 분		필 요	불필요	계(N)
공통	승강대 높이	48.4	51.6	539
	장애인 지정석	73.9	26.1	540
	자동문	26.9	73.1	540
	보장구 보관공간	23.3	76.7	540
	승하차 보조	55.4	44.6	540
	휠체어 리프트	28.4	71.6	539
	기타	21.8	78.2	536
시각	음성안내방송	75.0	25.0	52
청각	자막안내방송	93.0	7.0	57

視覺障碍의 경우에는 下車나 換乘을 위해서는 音聲案内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음성안내방송의 필요성이 75.0%로 높게 지적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 음성방송을 하고 있으나 소리가 작거나 명료하지 않

아서 判別이 쉽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반면 聽覺·言語障 碍의 경우에는 字幕案内의 필요성이 93.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外國에서는 주요 열차에서 다음 정차역이나 환승방법 등을 알려주는 차내 字幕案内가 보편화되어 있어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便 宜 施 設 設 置 優 先 順 位

전철이나 철도내 便 宜 施 設과 관련하여 障 碍人이 응답한 설치 優 先 順 位는 1순위에서는 장애인 지정석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승하차보조, 승강대 높이, 자막안내방송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必要度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電鐵이나 鐵道에서는 역시 障 碍人 指定席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表 4-21〉 電鐵·鐵道의 便 宜 施 設 設 置 優 先 順 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장애인지정석 (52.0)	승하차보조 (15.4)	승강대높이 (9.1)	자막안내방송 (7.8)	리프트 (5.7)
2순위	승하차보조 (33.9)	장애인지정석 (29.9)	리프트 (10.2)	승강대높이 (9.6)	자동문 (7.9)
3순위	승하차보조 (28.1)	장애인지정석 (20.3)	리프트 (17.2)	승강대높이 (10.9)	보장구 (9.4)

障 碍類型別로 優 先 順 位를 알아보면, 肢體障 碍의 경우에는 역시 장애인 지정석(58.3%), 승하차보조(17.5%), 승강대높이(11.0%)의 순이었으며, 視覺障 碍는 장애인지정석, 음성안내방송, 승하차보조의 순이었다. 반면 聽覺障 碍의 경우에는 자막안내방송(86.5%)에 대한 요구가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附表 4-3 참조).

한편 障碍人들의 주요 移動手段인 버스나 택시의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를 보면, 승강대 높이가 가장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장애인 지정석, 승하차보조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便宜를 위해 저상버스⁸⁾ 등을 運行할 必要性이 높다고 하겠다.

〈表 4-22〉 버스·택시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승강대높이 (27.7)	장애인지정석 (27.1)	승하차보조 (21.5)	자막안내방송 (12.5)	음성안내 (5.9)
2순위	승하차보조 (34.2)	장애인지정석 (31.2)	승강대높이 (20.1)	보장구 (5.0)	자동문 (3.5)
3순위	승하차보조 (31.5)	장애인지정석 (24.7)	승강대높이 (15.1)	자동문 (13.7)	리프트 (6.8)

障碍類型別로 구분하면 肢體障碍의 경우에는 승강대높이, 장애인지정석, 승하차보조의 순인 반면, 視覺障碍의 경우에는 음성안내방송, 승하차보조 등의 요구가 높았다. 聽覺障碍의 경우에는 자막안내방송에 대한 요구가 88.1%로 매우 높은 반면, 버스나 택시의 경우 다른 시설의 요구는 微微한 수준이었다(附表 4-4 참조).

3. 道路

가. 便宜施設 設置程度

道路의 경우 障碍人들이 利用하기에 신호길이, 노면상태, 육교나 지하도 등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다. 현재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道路

8) 서울시에서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 低床버스를 도입하여 1998년부터 공영버스 노선에 2대를 시범 운영한 뒤, 2000년부터 민간버스에도 확대할 계획임.

(지하도, 횡단보도)의 便宜施設 設置現況을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시설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특히 신호길이, 육교/지하도 계단, 음향신호, 점자블럭 등의 設置率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表 4-23〉 주로 利用하는 道路의 便宜施設 設置度

(단위: %, 명)

구 분	대체로 설치	부분적으로 설치	설치안됨	계(N)
턱낮추기	12.3	16.2	71.5	561
도로의 노면상태	11.4	18.9	69.8	562
경사도(기울기)	8.9	18.9	72.2	561
보도의 유효폭	17.0	12.9	70.2	560
점자블럭	6.5	16.1	77.4	62
음향신호기	11.5	9.8	78.7	61
신호길이	3.6	10.7	85.7	560
육교/지하도 계단	5.7	5.4	88.9	558
기 타	0.4	3.0	96.6	559

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道路의 便宜施設 設置 必要程度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신호길이의 改善必要性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5.2%로 가장 많아 그동안 持續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신호길이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과반수 정도의 장애인이 도로의 기울기, 노면상태, 턱낮추기 등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한편 視覺障碍人의 경우에는 도로에서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럭의 개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9) '96년의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전국 횡단보도의 턱낮추기는 75.6%, 점자(유도)블럭은 38.7%, 음향신호기는 12.5%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도나 육교의 경우 점자블럭은 20.3% 설치되어 있음.

〈表 4-24〉 주로 이용하는 道路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단위: %, 명)

구 분		필 요	불필요	계(N)
공통	턱낮추기	51.3	48.7	589
	도로의 노면상태	52.4	47.6	590
	경사도(기울기)	53.4	46.6	590
	보도의 유효폭	16.0	84.0	587
	신호길이	75.2	24.8	585
	육교/지하도 계단	38.4	61.6	588
	기타	7.3	92.7	587
시각	점자블럭	43.6	56.4	55
	음향신호기	47.3	52.7	55

다.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도로에서 便宜施設의 설치시 優先順位는 신호길이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턱낮추기, 노면상태 등의 순이었다. 한편 2순위로는 노면상태와 관련있는 傾斜度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신호길이, 경사도, 노면상태, 턱낮추기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改善必要도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表 4-25〉 주로 이용하는 道路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신호길이 (33.7)	턱낮추기 (18.9)	노면상태 (15.8)	경사도 (14.6)	육교/지하도 (10.3)
2순위	경사도 (21.8)	신호길이 (21.1)	노면상태 (20.8)	턱낮추기 (13.9)	육교/지하도 (12.4)
3순위	신호길이 (25.4)	경사도 (20.3)	턱낮추기 (15.8)	노면상태 (15.8)	육교/지하도 (14.4)

한편 障礙類型別로는 肢體障礙의 경우 신호길이에 대한 요구가 높

았으며, 턱낮추기, 노면상태의 순이었고, 視覺障礙人은 점자블럭, 신호 길이, 그리고 聽覺·言語障礙人은 신호길이에 대한 개선필요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附表 4-5 참조).

4. 公共業務施設

가. 便宜施設 設置程度

公共業務施設은 편의상 中央이나 地方自治團體(시·군·구)의 廳舍 등이 해당되는데, 便宜施設이 비교적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96년 조사에서 3,093개소의 公共業務施設에 설치되어 있는 각 편의시설 設置現況을 보면, 公共業務施設의 경우 전체적으로 43.7%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가운데서는 경사로와 출입구를 설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유도블럭, 승강기 등의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障礙人들의 경우 公共業務施設을 자주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에서 外出頻度上으로 市郡區廳을 전혀 가지 않는 경우는 73%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 1년에 2~3회 정도 이용하고 있었다.

〈表 4-26〉 公共業務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現況

(단위: 개소, %)

구 분	설치시설수	설치율	구 분	설치시설수	설치율
턱낮추기	12,023	43.7	화장실	923	31.7
유도블럭	283	27.8	주차장	1,219	51.6
경사로	1,359	68.9	전화기	479	44.6
출입구	1,364	67.8	판매기	307	37.2
복도	1,380	49.0	음료대	369	42.2
계단	544	33.7	안내표시	1,429	36.8
승강기	235	24.3	계	10,745	42.5

資料: 보건복지부, 공공시설 및 장애인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1997.

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公共業務施設の 便宜施設 設置必要程度를 알아보면, 전체적으로 계단의 불편함과 개선필요성이 57.1%로 가장 많고, 도우미 등 편의증진요원(55.4%), 전용창구(50.3%)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그밖으로는 승강기(41.1%), 화장실(36.7%) 등에 응답이 높았다. 이는 官公署의 경우 계단의 이용도에 비해 설치수준이 아직 미흡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창구를 옮겨 다니면서 절차를 밟기 어려워 階段과 専用窓口, 보조요원의 必要性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表 4-27〉 公共業務施設(市·郡·區廳)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단위: %, 명)

구 분		필 요	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13.5	86.5	171
	장애인용 주차구역	26.8	73.2	168
	주출입구 단차제거	23.2	76.8	168
	출입구(문)	28.0	72.0	168
	복도(유효폭, 손잡이)	22.6	77.4	168
	계단(유효폭, 손잡이)	57.1	42.9	168
	경사로	28.0	72.0	168
	장애인용 승강기/리프트	41.1	58.9	168
	장애인용 화장실	36.7	63.3	166
	접수대 높이	18.6	81.4	167
	장애인용 공중전화	22.8	77.2	167
	전용창구	50.3	49.7	167
	편의증진요원	55.4	44.6	166
	기타	7.2	92.8	167
시각	점자표지판	71.4	28.6	14
	점자블럭	50.0	50.0	14
청각	비상등(경보등)	84.6	15.4	13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46.2	53.8	13
	공중FAX/증폭전화기	84.6	15.4	13
	자막안내방송	84.6	15.4	13

한편 視覺障碍人の 경우에는 점자표지판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많았으며, 聽覺·言語障碍의 경우에는 증폭전화기, 비상등, 자막안내방송 등에 대한 응답이 고르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公共業務施設의 경우 특히 民願業務를 담당하는 官公署 등에서는 專用窓口나 專擔職員의 배치가 필요하며, 성격상 聽覺이나 視覺障碍人을 위한 안내시설 등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公共業務施設에 설치하여야 할 便宜施設의 優先順位에 있어서는 제 1순위에서는 계단, 편의증진요원, 전용창구 등의 순이었으나 2, 3순위에서는 전용창구와 편의증진요원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계단, 편의증진요원, 전용창구, 승강기, 화장실의 순으로 요구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선 필요도에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였다.

設置 優先順位를 障碍類型別로 구분해 보면, 肢體障碍의 경우 신체적 특성상 계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용창구와 편의증진요원의 순으로 욕구가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視覺障碍의 경우에는 점자표지판, 편의증진요원, 계단의 순이었으며, 聽覺·言語障碍의 경우에는 자막안내방송, 편의증진요원, 증폭전화기 등의 순이었다(附表 4-6 참조).

〈表 4-28〉 公共業務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순위	계 단 (23.0)	편의증진요원 (17.1)	전용창구 (14.5)	주차구역 (10.5)	화장실 (5.9)
2순위	전용창구 (16.1)	편의증진요원·승강기 (15.4)		계 단 (12.6)	화장실 (6.3)
3순위	전용창구 (19.5)	편의증진요원 (16.9)	화장실 (12.7)	계 단 (11.9)	승강기 (11.0)

5. 近隣公共施設

가. 便宜施設 設置程度

近隣公共施設은 주로 동사무소, 우체국, 전화국, 경찰서 등을 의미하는데, 이들 시설은 이용빈도가 公共業務施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洞事務所의 경우 이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시설에 속하는데, 본 조사에서도 약 65% 정도의 장애인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1달에 1~2회 이용하는 경우도 2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近隣公共施設은 公共業務施設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便宜施設의 설치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1996년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 11,072개소의 근린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38.2%였다.

〈表 4-29〉 近隣公共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現況

(단위: 개소, %)

구 분	설치시설수	설치율	구 분	설치시설수	설치율
유도블럭	625	8.3	열람석	385	20.8
경사로	4,641	51.6	주차장	2,881	36.5
출입구	5,700	60.6	전화기	1,440	34.9
복도	3,914	43.3	판매기	8	100.0
계단	1,914	26.0	음료대	4,609	35.4
화장실	14	100.0	계	29,294	38.2

資料: 보건복지부, 『공공시설 및 장애인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1997.

세부적인 시설항목별 설치현황을 알아보면, 출입구, 경사로 등의 설치율이 비교적 높으며, 계단, 유도블럭, 공중전화 등의 설치율이 낮은 편이다. 한편 100%의 설치율을 보이는 화장실, 판매기는 규정상 일정 기준이상¹⁰⁾ 되는 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0) ‘장애인 便宜施設 및 設備의 設置基準에 관한 規則’(보건복지부, 1995)에 따르면 장애인용 화장실은 대변기가 5개 이상 시설에 설치되어야 함.

나. 便 宜 施 設 改 善 必 要 程 度

近隣公共施設을 이용하는 障 碍 人 가운데 절반 이상의 장애인 이 편의증진요원의 배치(63.3%)와 전용창구의 설치(55.0%)를 희망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39.3%), 계단(38.3%)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公共業務施設의 결과와 유사한 논리에서, 대체로 公共施設의 경우에는 이러한 便宜施設 또는 도우미나 전용창구 등 관련 서비스가 최소한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視 覺 障 碍 人 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점자블럭이나 안내판에 대한 요구가 높고, 聽 覺 障 碍 人 은 자막안내나 증폭전화기의 설치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 便 宜 施 設 設 置 優 先 順 位

近隣公共施設의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는 설치실태에 비해 개선필요성이 높게 조사된 전용창구와 편의증진요원, 화장실, 계단, 주차구역 등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전용창구와 편의증진요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表 4-30 참조). 障 碍 類 型 別 로 는 肢 體 障 碍 의 경우 전용창구 설치, 편의증진요원 배치, 계단의 순이었고, 視 覺 障 碍 人 은 편의증진요원, 점자안내판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聽 覺 · 言 語 障 碍 人 은 자막안내방송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附表 4-7 참조).

이상의 조사결과를 볼 때, 公共業務施設과 洞事務所와 같은 近隣公共施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편의시설의 설치도 필수적이지만 가능하면, 障 碍 人 專 用 窓 口 나 장애인이 방문시 안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전용창구 개설과 같은 서비스는 예산이나 인력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효과를 기할 수 있는 現 實 的 인 方 案 이 라 할 수 있다.

〈表 4-30〉 近隣公共施設の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단위: %, 명)

구 분		필 요	불필요	계(N)
지체	주출입구 접근로	15.1	84.9	392
	장애인용 주차구역	19.9	80.1	392
	주출입구 단차제거	28.3	71.7	392
	출입구(문)	26.0	74.0	392
	복도(유효폭, 손잡이)	19.1	80.9	392
	계단(유효폭, 손잡이)	38.3	61.7	392
	경사로	28.8	71.2	392
	장애인용 승강기/리프트	26.3	73.7	392
	장애인용 화장실	39.3	60.7	392
	접수대 높이	17.4	82.6	391
	장애인용 공중전화	12.5	87.5	336
	전용창구	55.0	45.0	338
	편의증진요원	63.3	36.7	387
	기타	6.1	93.9	391
시각	점자안내판	51.4	48.6	35
	점자블럭	52.8	47.2	36
청각	비상등(경보등)	67.7	32.4	31
	자막안내방송	90.3	9.7	31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53.1	46.9	32
	공중FAX/증폭전화기	84.4	15.6	32

〈表 4-31〉 近隣公共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전용창구 (23.4)	편의증진요원 (20.3)	계단 (9.7)	주차구역 (8.3)	승강기 (7.7)
2순위	전용창구 (19.5)	편의증진요원 (17.0)	화장실 (12.2)	계 단 (12.2)	단차제거 (6.1)
3순위	편의증진요원 (26.7)	전용창구 (12.6)	화장실 (10.9)	계 단 (7.7)	경사로 (7.3)

6. 住居施設

장애인의 가장 주된 活動空間이라 할 수 있는 住居施設의 便宜施設은 一般人에 비해 이동이나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주요 外部活動 對象施設 즉, 장애인 전용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도가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公共施設에 대해서는 경사로, 장애인 전용화장실, 유도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편의시설 설치를 기존시설까지 義務化(보건복지부, 1995)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住居施設에 대해서는 新築住宅에 대해서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현재의 주거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公共施設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연구나 실태조사 등은 保健福祉部 등에 의해서 매년 이루어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나, 주거시설 관련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장애인들의 주거시설에 한정시켜 주거시설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정도와 개선필요 정도,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등을 장애유형별로 파악하여, 住居施設의 便宜增進方案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住居施設의 便宜施設 設置程度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住居形態를 보면, 아파트와 일반 주거지가 각각 반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본 조사의 결과들을 장애인들의 주거시설 전체로 一般化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거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유무에 대한 調查結果를 장애유형별로 알아보면, 장애인 전체적으로 주출입구 접근로가 36.6%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

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출입구(문)이 34.9%, 주출입구 단차제거가 33%의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욕실과 계단, 그리고 복도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視覺障礙人의 경우 유도벨이 7.9%, 점자블럭은 2.0%만이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정도는 평균 5%의 수준이 되고 있다. 聽覺障礙人의 경우는 착신램프(초인종)와 문자/증폭전화기만이 각각 17.9%와 16.1%로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視覺障礙人보다는 약간 높은 10%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스경보/비상등의 경우 응답자의 98%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視覺障礙人用 便宜施設인 점자블럭과 함께 주거시설의 편의시설들 중 가장 낮은 설치정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肢體障礙人의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공통의 편의시설 설치정도가 視覺이나 聽覺障礙人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정도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住居施設 내부의 편의시설 설치정도보다는 주거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건물 내부의 편의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주출입구 단차제거, 승강기/리프트 등의 설치정도가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忠淸南道의 調查結果(충청남도, 1996: 81)에서 가옥구조상 가장 불편한 점이, 화장실, 부엌, 집안에서의 이동의 순이라고 응답한 것과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住居形態 중 아파트지역에서의 設置率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아파트 건설시 경사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설치를 주택건설법 및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설치義務事項으로 規定하고 있기 때문으로, 법적인 규정의 확대가 편의시설 설치 擴大方案에 寄與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表 4-32〉 住居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程度

(단위: %, 명)

구 분		대체로 설치	부분적으로 설치	설치 안됨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24.0	12.6	63.4	538
	장애인용 주차구역	14.1	9.8	76.1	539
	주출입구 단차제거	18.7	14.3	67.0	539
	출 입 구(문)	20.4	14.5	65.1	539
	복도	12.8	6.9	80.3	538
	계단	11.0	7.8	81.2	538
	경사로	16.0	10.9	73.1	539
	승강기/리프트	25.8	4.1	70.1	538
	욕실	11.5	6.3	82.2	539
	화장실	17.6	8.2	74.2	539
	부엌 설비	13.4	10.3	76.3	536
	기타	0.2	1.9	97.9	533
시각	유도벨	5.9	2.0	92.2	51
	점자블럭	2.0	-	98.0	50
청각	착신램프(초인종등)	14.3	3.6	82.1	56
	가스경보 비상등	1.8	-	98.2	56
	증폭전화기	14.3	1.8	83.9	56

나. 住居施設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 程度

주거시설의 편의시설 改善 必要程度를 障礙類型別로 알아보면, 전체적으로 〈表 4-33〉에서 볼 수 있듯이, 설치정도가 낮았던 계단(41.3%), 화장실(41.1%), 욕실(39.9%)의 순으로 시설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설치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던 장애인용 주차구역, 승강기/리프트, 그리고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해서는 10%의 수준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改善必要度를 보였다. 視覺障礙人의 경우 점자블럭과 유도벨에 대해 50% 수준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聽覺障礙人의 경우 설치정도가 가

장 낮았던 가스경보/비상등에 대해 72.7%의 응답자가 가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증폭전화기(67.1%), 착신램프(64.7%)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表 4-33〉 住居施設の 便宜施設 改善 必要 程度

(단위: %, 명)

구 분		필요	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19.5	80.5	589
	장애인용 주차구역	16.3	83.7	589
	주출입구 단차제거	28.5	71.5	589
	출입구(문)	25.1	74.9	589
	복도	32.4	67.6	589
	계단	41.3	58.7	589
	경사로	37.0	63.0	589
	승강기/리프트	17.9	82.1	588
	욕실	39.9	60.1	589
	화장실	41.1	58.9	589
	부엌 설비	28.9	71.1	588
	기타	10.1	89.9	585
시각	유도벨	52.1	47.9	71
	점자블럭	52.9	47.1	68
청각	착신램프(초인종등)	64.7	35.3	68
	가스경보 비상등	72.1	27.9	68
	문자/증폭전화기	67.1	32.9	70

다. 住居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조사대상 장애인들에게 住居施設の 편의시설 설치시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다음의 〈表 4-34〉와 같이, 1순위로는 계단, 욕실, 화장실의 순으로, 2순위로는 화장실, 욕실, 계단의 순으로, 그리고 3순위로는 경사로, 화장실·부엌설비의 순으로 설치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表 4-34〉 住居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계단 (17.4)	욕실 (14.0)	화장실 (10.4)	경사로 (8.7)	복도 (8.1)
2순위	화장실 (17.6)	욕실 (12.9)	계단 (11.0)	단차제거 (9.8)	경사로 (9.5)
3순위	경사로 (13.8)	화장실·부엌설비 (11.9)		계단 (10.7)	단차제거 (8.7)

장애유형별로는 肢體障碍人의 경우 1순위로 개선필요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시설인 계단을, 그리고 욕실, 화장실의 순으로 설치의 우선순위를 지적하였다. 視覺障碍人의 경우에는 1순위로 유도벨과 점자블럭을 각각 22.4%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共通의 편의시설인 계단(18.4%)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聽覺·言語障碍人의 경우는 1순위로 착신램프, 2순위로는 개선 필요 정도가 가장 높았던 가스경보 비상등을, 그리고 3순위로는 증폭전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住居施設에 있어서 편의시설 설치의 優先順位는, 설치정도가 낮아 시설개선 필요 정도가 높았던, 즉 需要에 비해 供給不足이 컸던, 시설들이 비교적 높은 설치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설치정도가 비교적 높았던 장애인 共通의 편의시설들 보다는 설치정도가 매우 낮았던 視覺, 聽覺·言語障碍人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욕구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附表 4-8 참조).

라. 住居施設의 便宜增進 方案

장애인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住宅과 관련하여 便宜增進方案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질문한 결과 다음의 〈表 4-35〉와 같다. 장애인 전체

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 내부의 편의시설 改良支援을 30.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障礙人用으로 공급(30.0%), 주택건설시 장애인 편의시설 소요자금에 대한 政府의 金融稅制 支援(19.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알아보면, 肢體障礙人의 경우 아파트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용으로 공급해 주는 것(31.8%)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視覺과 聽覺·言語障礙人의 경우는 현재 살고 있는 집 내부의 편의시설 改良支援해 줄 것(각 30.7%)을 가장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表 4-35〉 住居施設の 便宜増進 方案

(단위: %, 명)

주거시설의 편의증진 방안	지체	시각	청각언어	계(N)
현재 살고 있는 집내부의 편의시설 개량지원	29.6	30.7	30.7	30.9(176)
주택건설시 장애인 편의시설 소요자금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	18.8	19.7	19.7	19.8(113)
장애인전용 소규모 다가구주택의 건설·개량지원	19.6	18.8	18.8	18.9(108)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용으로 공급	31.8	29.8	29.8	30.0(171)
기타	0.2	0.3	0.3	0.4(2)

7. 近隣生活施設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近隣生活施設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정도와 개선필요 정도, 그리고 설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조사대상이 된 近隣生活施設들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로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슈퍼마켓, 식당/커피숍 등을 비롯하여, 약국, 이·미용실, 은행, 시장, 공원/유원지, 공중

목욕탕 등을 말한다. 近隣生活施設들에 대한 조사결과들을 본 조사 및 서울시의 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52)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나타난 슈퍼마켓의 경우부터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슈퍼마켓, 藥局, 理·美容室

1) 便宜施設 設置程度

장애인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近隣生活施設로 나타난 슈퍼마켓을 비롯한 약국, 이·미용실에 있어서 편의시설 설치 정도는, 전반적으로 장애인 共通의 시설만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6.7%의 수준까지 설치되어 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편의시설 설치의 義務事項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출입구 접근로와 출입구(문)가 2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진열대/계산대 높이가 19.7%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승강기/리프트,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주차구역 등은 90%가 넘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슈퍼마켓, 藥局, 理·美容室 등이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에는 규모가 적은 즉, 큰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視覺障 碍 人 을 위한 편의시설로는 대표적으로 점자블럭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聽覺障 碍 人 을 위한 편의시설인 비상등만이 7.4%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슈퍼마켓, 약국, 이·미용실은 肢體障 碍 人 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공통의 편의시설만이 20%의 수준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 오는데 필요한 편의시설인 출입구와 주출입구 접근로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36〉 슈퍼마켓·藥局·理·美容室의 便宜施設 設置 程度
(단위: %, 명)

구 분		대체로 설치	부분적으로 설치	설치 안됨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14.6	11.2	74.3	536
	장애인용 주차구역	6.0	1.5	92.6	537
	주출입구 단차제거	6.1	10.8	83.1	537
	출입구(문)	13.3	9.9	76.8	535
	계단	6.7	6.0	87.3	535
	경사로	3.5	8.2	88.3	538
	승강기/리프트	1.3	0.6	98.1	538
	화장실	0.6	4.1	95.3	536
	통로폭	7.4	8.7	83.8	538
	진열대/계산대 높이	11.1	8.5	80.3	539
	자동판매기 높이	9.1	8.2	82.7	539
	기타	0.2	0.9	98.9	539
시각	점자블럭	-	-	100.0	50
청각	비상등(경보등)	5.6	1.9	92.6	54

2) 便宜施設 改善 必要 程度

슈퍼마켓·약국·이·미용실의 편의시설 개선필요 정도는, 장애인 共通의 시설의 경우 건물내부로의 進入을 위한 편의시설에 해당되는, 그리고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義務事項으로 규정되고 있는 계단(56.1%), 주출입구 단차제거(46.3%), 경사로(46.0%)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자동판매기 높이(12.3%), 장애인용 주차구역(17.2%), 진열대/계산대 높이(21.0%)의 순으로 낮은 설치 改善必要度を 보였다. 즉, 改善必要도가 높은 편의시설은 설치수준이 낮거나, 설치되었더라도 이용빈도가 다소 커 設置必要性이 큰 시설에 대해서 높은 비율의 必要性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안되어 있는 視覺障碍人和 聽覺障碍人の 경우, 특히 聽覺障碍人の 경우는 편의시설 개선 필요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表 4-37〉 슈퍼마켓·藥局·理·美容室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 程度
(단위: %, 명)

구 분		필요	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22.3	77.7	575
	장애인용 주차구역	17.2	82.8	575
	주출입구 단차제거	46.3	53.7	575
	출입구(문)	39.7	60.3	574
	계단	56.1	43.9	574
	경사로	46.0	54.0	576
	승강기/리프트	25.7	74.3	576
	화장실	33.3	66.7	574
	통로폭	33.7	66.3	575
	진열대/계산대 높이	21.0	79.0	576
	자동판매기 높이	12.3	87.7	576
	기타	11.9	88.1	573
시각	점자블럭	54.3	45.7	70
청각	비상등(경보등)	70.8	29.2	72

3)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슈퍼마켓, 약국, 이·미용실의 편의시설 설치 優先順位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상시설별로 나누어 알아보면 다음의 〈表 4-38〉, 〈表 4-39〉, 〈表 4-40〉과 같다.

가) 슈퍼마켓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먼저 障 碍 人 들 이 가 장 많 이 이 용 하 고 있 는 슈 퍼 마 켓 의 경 우, 응 답 자 전 체 적 으 로 1 순 위 에 는 계 단, 주 출 입 구 단 차 제 거, 통 로 폭 의 순 으 로, 2 순 위 에 서 는 경 사 로, 주 출 입 구 단 차 제 거, 통 로 폭, 그 리 고 3 순 위 에 서 는 주 출 입 구 단 차 제 거, 경 사 로, 장 애 인 용 화 장 실 의 순 으 로 설 치 가 필 요 하 다 고 지 적 하 여 슈 퍼 마 켓 으 로 의 接 近 을 위 한 시 설 설 치 가 우 선 적 으 로 必 要 함 을 알 수 있 다.

이상의 결과들을 綜合적으로 보면, 슈퍼마켓의 편의시설 설치 優先順位는 계단, 주출입구 단차제거, 경사로, 통로폭, 화장실의 순이 되는데, 이는 앞의 表에서 볼 수 있던 설치수준에 비해 需要가 그리고 改善必要度가 큰 시설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 시설설치 優先順位를 보면, 肢體障礙人들은 1순위로 계단(20.0%), 2순위로는 주출입구 단차제거, 3순위는 경사로의 순으로 설치해 줄 것을 원했는데, 이는 개선 필요정도가 매우 높았던 시설들을 알 수 있다. 視覺障礙人의 경우 장애인 공통의 편의시설인 계단(21.1%)과 주출입구 단차제거(18.4%)를 가장 많이 원했고, 다음으로 점자블럭(15.8%)의 설치를 원하였다. 聽覺·言語障礙人의 경우 개선필요 정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비상등의 설치를 73.3%로 가장 많이 원하였고, 다음으로 승강기/리프트, 주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용 주차구역의 순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附表 4-9 참조).

〈表 4-38〉 슈퍼마켓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분	1	2	3	4	5
1순위	계단 (18.2)	단차제거 (13.9)	통로폭 (12.9)	경사로 (12.4)	출입구 (8.2)
2순위	경사로 (17.2)	단차제거 (16.5)	통로폭 (13.1)	계단 (11.8)	승강기/리프트 (9.4)
3순위	단차제거 (15.3)	경사로 (14.7)	장애인용화장실 (14.1)	출입구·계단 (10.4)	

나) 藥局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조사대상자들의 藥局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意見은, 1순위에 주출입구 단차제거, 출입구, 경사로의 순으로, 2순위에는 주출입구 단차제거, 경사로, 출입구의 순으로, 3순위에서는 장애인용 화장실, 경

사로, 출입구의 순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設置 優先順位를 전체적으로 보면, 주출입구 단차제거를 가장 많이 원하였고, 다음으로 경사로, 출입구, 계단의 순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약국 역시 내부로의 진입을 위한 출입 관련 便宜施設 設置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의 優先順位에 대해서는, 肢體障礙人의 경우 출입구(문), 주출입구 단차제거, 경사로 순으로 응답하여, 건물 내부로의 진입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欲求度가 높음을 알 수 있다. 視覺障礙人의 경우는 슈퍼마켓에서의 설치 우선순위와는 반대로 점자블럭에 대한 설치 우선순위가 共通의 편의시설인 주출입구 단차제거와 경사로의 설치보다 높았다. 聽覺·言語障礙人의 경우는 비상등, 승강기/리프트 등의 순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附表 4-10 참조).

〈表 4-39〉 藥局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단차제거 (17.2)	출입구(문) (15.9)	경사로 (14.2)	계단 (11.0)	진열대/계산대높이 (9.7)
2순위	단차제거 (24.6)	경사로 (20.0)	출입구 (15.4)	계단 (11.4)	승강기/리프트 (6.9)
3순위	장애인용화장실 (20.0)	경사로 (18.3)	출입구 (15.0)	단차제거·승강기/리프트 (10.0)	

다) 理·美容室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장애인들의 이·미용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優先順位를 보면, 1순위에는 계단, 주출입구 단차제거, 출입구의 순으로, 2순위에는 주출입구 단차제거, 계단, 경사로의 순으로, 3순위에는 장애인용 화장실, 출

입구, 경사로의 순으로 設置해 줄 것을 원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理·美容室에 대해서는 계단, 주출입구 단차제거, 출입구, 경사로의 순으로 設置해 줄 것을 원하고 있어, 앞의 슈퍼마켓, 약국과 동일하게 건물 내부로의 進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다.

이·미용실의 편의시설 설치 優先順位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肢體障礙人의 경우 계단, 주출입구 단차제거, 출입구의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視覺障礙人의 경우 계단, 주출입구 단차제거, 점자블럭의 순으로 설치를 원하였고, 聽覺·言語障礙人의 경우는 비상등, 승강기/리프트의 순으로 설치해 주기를 원하였다(附表 4-11 참조).

〈表 4-40〉 理·美容室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계단 (33.5)	단차제거 (13.8)	출입구(문) (11.3)	경사로 (6.9)	비상등 (6.6)
2순위	단차제거·계단 (17.4)		경사로 (15.0)	출입구 (11.7)	승강기/리프트 (11.3)
3순위	장애인용 화장실 (23.6)	출입구 (19.1)	경사로 (11.2)	계단 (10.1)	승강기/리프트 (8.9)

이상의 슈퍼마켓, 약국, 이·미용실에서의 편의시설 設置 優先順位の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肢體障礙人의 경우는 주출입구 단차제거, 출입구,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등 대상시설의 외부에서 시설 내부로의 接近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聽覺·言語障礙人의 경우는 시각장애인과 달리 비상등에 대한 설치욕구가 매우 컸다.

나. 銀行

1) 便宜施設 設置程度

銀行의 편의시설 設置程度는 장애인 共通의 편의시설인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가 42.0%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출입구(36.2%), 주출입구 단차제거(33.7%)의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승강기/리프트와 편의증진요원의 배치, 그리고 주거지 근처에의 현금입출금기의 설치에 대해서는 90% 내지 그 이상의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表 4-41〉 銀行의 便宜施設 設置 程度

(단위: %, 명)

구 분		대체로 설치	부분적으로 설치	설치 안됨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25.1	16.9	58.0	395
	장애인용 주차구역	4.3	11.4	84.3	395
	주출입구 단차제거	13.4	20.3	66.3	395
	출입구(문)	21.3	14.9	63.8	395
	계단	10.9	7.1	82.0	395
	경사로	11.4	15.2	73.4	395
	승강기/리프트	1.3	0.5	98.2	395
	화장실	1.8	13.7	84.5	394
	접수대 높이	19.3	12.2	68.5	394
	장애인용 공중전화	7.1	4.1	88.8	394
	현금입출금기 설치	2.8	7.4	89.8	394
	편의증진요원 배치	0.8	3.6	95.7	392
	기타	0.3	0.5	99.2	394
시각	점자블럭	-	9.4	90.6	32
	점자안내판	-	3.1	96.9	32
청각	비상등(경보등)	-	4.9	95.1	41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	-	100.0	42
	자막안내방송	2.4	2.4	95.2	42

視覺障礙人의 편의시설인 점자블럭과 점자안내판은 10% 이내의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을 뿐, 90% 이상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聽覺障礙人의 경우도 자막안내방송과 비상등만이 5% 이내의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사용식별램프는 100%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銀行에서의 편의시설은 장애인 공통의 편의시설 중 은행 내부로의 接近을 위한 출입구 관련 편의시설 설치가 가장 잘되어 있었고, 다음으로 은행 업무의 特殊性을 감안한 접수대의 높이가 잘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외의 편의시설들은 설치정도가 20% 이하였다. 또한 시각과 聽覺障礙人을 위한 편의시설도 90% 이상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便宜施設 改善必要 程度

은행의 편의시설 改善 必要程度는 앞의 〈表 4-41〉의 설치정도에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던 편의시설들이 높은 개선 필요도를 보였다. 즉, 장애인 공통의 편의시설의 경우 편의증진요원의 배치(56.7%) 및 현금입출금기의 설치(51.4%)를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계단의 개선(40.6%)을 요구하였다.

視覺障礙人의 경우 점자블럭과 점자안내판에 대해 약 50% 정도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聽覺障礙人의 경우는 자막안내방송(82.5%), 비상등(54.7%), 화장실사용 식별램프(49.1%)의 순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사용 식별램프에 대한 개선필요 정도가 다른 편의시설보다 낮게 나타난 점이 특이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전반적으로 편의시설 設置程度가 낮았던 視覺과 聽覺障礙人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가 장애인 공통의 편의시설 설치 개선필요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聽覺障碍人의 자막안내방송에 대한 개선필요 정도는 은행의 편의시설들 중 改善必要度가 82.5%로 제일 높았다.

〈表 4-42〉 銀行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 程度

(단위: %, 명)

구 분		매우 필요	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14.5	85.5	420
	장애인용 주차구역	21.2	78.8	420
	주출입구 단차제거	24.8	75.2	420
	출입구(문)	23.6	76.4	419
	계단	40.6	59.4	419
	경사로	27.1	72.9	420
	승강기/리프트	23.8	76.2	420
	화장실	29.0	71.0	420
	접수대 높이	19.2	80.8	421
	장애인용 공중전화	16.9	83.1	419
	현금입출금기 설치	51.4	48.6	420
	편의증진요원 배치	56.7	43.3	420
	기타	10.0	90.0	420
시각	점자블럭	47.8	52.2	46
	점자안내판	56.2	43.5	46
청각	비상등(경보등)	54.7	45.3	53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49.1	50.9	53
	자막안내방송	82.5	17.5	57

3)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은행의 편의시설 설치 優先順位는, 1순위에 편의증진요원 배치, 계단, 장애인용 주차구역의 순으로, 2순위에는 편의증진요원의 배치, 현금입출금기의 설치, 계단의 순으로, 그리고 3순위에는 현금입출금기의 설치, 편의증진요원의 배치, 주출입구 단차제거의 순으로 설치해 줄 것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綜合해 볼 때, 設置水準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필요도가 매우 높은 편의시설의 우선순위가 높았다. 은행에 있어서의

편의시설은 편의증진요원의 배치, 현금입출금기의 설치, 계단, 장애인용 주차구역의 순으로 選好됨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 은행의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를 보면, 肢體障礙人의 경우 계단(22.0%), 현금입출금기의 설치(17.1%), 편의증진요원의 배치(1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視覺障礙人의 경우는 편의증진요원의 배치가 4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점자블럭, 점자안내판(11.8%)의 순으로 설치를 원하였다. 聽覺·言語障礙人의 경우는 자막안내방송(53.5%), 편의증진요원의 배치(16.3%), 현금입출금기 설치(11.6%)의 순으로 설치되기를 원하였다(附表 4-12 참조).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은 은행의 편의시설 설치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便宜增進要員의 배치를 들었는데, 이는 은행의 경우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銀行業務를 용이하게 보기 위해 전체적으로 편의증진요원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43〉 銀行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편의증진요원 (18.1)	계단 (17.9)	주차구역 (7.4)	자막안내방송 (6.6)	장애인용 화장실(5.2)
2순위	편의증진요원 (21.3)	현금입출금기 (14.0)	계단 (10.9)	경사로 (8.2)	승강기/리프트 (7.9)
3순위	현금입출금기 (19.1)	편의증진요원 (18.7)	단차제거 (8.1)	계단·장애인용 화장실 (6.8)	

그리고 은행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까운 近隣生活 지역내에 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하는 것 등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대상시설들과 달리 은행이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은행까지 직접 가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은행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는 便宜増進方案이라고 여겨진다.

다. 市場

1) 便宜施設 設置 程度

시장의 편의시설 設置程度는 장애인 共通의 便宜施設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33.1%), 자동판매기의 높이(24.9%), 유효폭(18.3%)의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편의증진요원의 배치, 장애인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공중전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表 4-44〉 市場의 便宜施設 設置 程度

(단위: %, 명)

구 분		대체로 설치	부분적으로 설치	설치 안됨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10.9	22.3	66.9	175
	장애인용 주차구역	2.9	3.4	93.7	175
	장애인용 화장실	1.1	7.4	91.4	175
	경사로	5.1	6.9	88.0	175
	유효폭	5.1	13.1	81.7	175
	자동판매기 높이	7.9	16.9	75.1	177
	장애인용 공중전화	2.8	5.1	92.1	177
	편의증진요원 배치	1.7	0.6	97.7	177
	기타	-	1.7	98.3	177
시각	점자블럭	-	-	100.0	22
	점자안내판	-	-	100.0	22
청각	비상등(경보등)	4.0	-	96.0	25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	-	100.0	25
	청각FAX/증폭전화	-	-	100.0	25

視覺障碍人을 위한 편의시설인 점자블럭과 점자안내판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聽覺障碍人을 위한 편의시설인 화장

실사용 식별램프와 청각 FAX/증폭전화기도 역시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4%의 응답자만이 비상등/경보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視覺과 聽覺障礙人을 위한 편의시설이 시장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便宜施設 改善必要 程度

시장에 대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改善 必要度는, 장애인 공통적으로 편의증진요원의 배치가 55.2%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유효폭(47.6%), 경사로(43.5%)의 순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자동판매기의 높이(87.4%)와 <表 4-44>에서 設置程度가 낮았던 장애인용 주차구역(15.2%), 장애인용 공중전화(16.8%), 주출입구 접근로(17.3%)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필요정도가 낮았다.

<表 4-45> 市場의 便宜施設 改善必要 程度

(단위: %)

구 분		필요	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17.3	82.7	191
	장애인용 주차구역	15.2	84.8	191
	장애인용 화장실	27.7	72.3	191
	경사로	43.5	56.5	191
	유효폭	47.6	52.4	191
	자동판매기 높이	12.6	87.4	191
	장애인용 공중전화	16.8	82.8	192
	편의증진요원 배치	55.2	44.8	192
	기타	14.3	85.7	168
시각	점자블럭	64.3	35.7	28
	점자안내판	58.6	41.4	29
청각	비상등(경보등)	74.2	25.8	31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54.8	45.2	31
	청각FAX/증폭전화	77.4	22.6	31

視覺障碍人の 경우 점자블럭과 점자안내판의 설치에 대해 50~60%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聽覺障碍人の 경우는 청각FAX/증폭 전화기와 비상등에 대해 70% 이상이, 화장실사용 식별램프에 대해서는 54.8%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視覺·聽覺障碍人들의 개선 필요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3)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市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優先順位는 1순위로 편의증진요원의 배치, 경사로, 유효폭을, 2순위로는 편의증진요원의 배치, 유효폭, 경사로의 순으로, 그리고 3순위로는 편의증진요원, 유효폭의 설치 순으로 지적하여, 전체적으로 設置水準에 비해 改善必要度가 큰 편의증진요원과 유효폭, 경사로에 대한 優先順位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들로 볼 때, 시장에서는 은행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便宜増進要員의 배치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유효폭, 경사로의 순으로 설치를 원하고 있었다.

〈表 4-46〉 市場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편의증진요원 (23.2)	경사로 (22.6)	유효폭 (17.9)	FAX/증폭전화기 (17.9)	장애인용화장실 (5.4)
2순위	편의증진요원·유효폭 (19.9)		경사로 (15.4)	장애인용화장실 (10.3)	주출입구 접근로 (5.1)
3순위	편의증진요원 (26.8)	유효폭 (15.5)	장애인용화장실·공중전화·경사로 (11.3)		

障碍類型別 優先順位를 보면, 肢體障碍人の 경우 경사로(32.4%), 유효폭, 편의증진요원의 배치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視覺障碍人の 경

우는 1순위로 공통 편의시설인 편의증진요원의 배치를 41.7%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점자안내판과 점자블럭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聽覺·言語障礙人의 경우는 공중FAX/증폭전화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42.3%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비상등(경보등), 화장실사용 식별램프·편의증진요원의 배치 순으로 응답하였다(附表 4-13 참조).

라. 公衆沐浴湯

1) 便宜施設 設置程度

장애인들에게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日常生活 活動 중의 하나는 바로 公衆沐浴湯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身體的 自我概念이 부정적이거나 신체에 대한 自信感의 缺如로 인하여 공중목욕탕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본 조사결과에서 가장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시설로 公衆沐浴湯을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社會福祉機關에서 그 지역 사회의 장애인을 위해 移動沐浴湯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도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먼저, 공중목욕탕 관련 편의시설의 設置程度부터 알아보면, 장애인 共通의 시설들 중 주출입구 접근로(29.9%), 출입구, 샤워기/수도꼭지의 높이가 20%의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미끄럼 방지, 샤워기 보조손잡이 등은 95% 이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것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공중목욕탕을 이용하지 못하는 중요한 障礙要素임을 알 수 있다.

視覺障礙人과 聽覺障礙人을 위한 편의시설들도 모두 90% 이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공중목욕탕내 편의시설 설

치정도의 결과를 볼 때, 공중목욕탕으로의 接近을 위한 출입구와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시설만이 20%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 그 이외의 내부 편의시설들과 視覺·聽覺障 碍人들의 편의시설은 거의 90% 이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表 4-47〉 公衆沐浴湯의 便宜施設 設置程度

(단위: %, 명)

구 분		대체로 설치	부분적으로 설치	설치 안됨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16.2	13.6	70.1	154
	주출입구 단차제거	4.5	14.8	80.6	155
	출입구(문)	19.5	9.7	70.8	154
	계단	10.4	3.2	86.4	133
	복도	11.8	3.9	84.3	153
	장애인용 화장실	1.3	1.3	97.4	152
	샤워기/수도꼭지 높이	11.2	13.2	75.7	152
	매표소/판매기 높이	15.6	7.1	77.3	154
	바닥미끄럼 방지	1.3	2.6	96.1	153
	샤워기 보조손잡이	1.3	2.6	96.1	153
	기타	0.6	3.2	96.1	154
시각	점자 표지판	-	7.7	92.3	13
청각	비상등(경보등)	-	3.3	96.7	30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	-	100.0	30

2) 便宜施設 改善必要 程度

장애인들에게 있어 公衆沐浴湯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편의시설은 設置程度가 가장 낮았던 시설인 바닥미끄럼 방지(75.3%), 샤워보조기 손잡이(57.1%), 계단(42.9%)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주출입구 접근로, 매표소/판매기 높이, 복도 등 비교적 설치정도가 높았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응답자가 改善의 必要性을 못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視覺障礙人의 경우는 점자표지판의 설치정도가 7.7%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46.7%의 응답자만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설치정도가 낮으면 편의시설 개선필요 정도가 높았던 다른 시설들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聽覺障礙人의 경우는 비상등(경보등),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설치의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비상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2%가 개선필요도를 원하고 있어, 가장 높은 改善 必要程度를 보였다.

〈表 4-48〉 公衆沐浴湯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 程度

(단위: %, 명)

구 분		필요	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12.4	87.6	169
	주출입구 단차제거	24.9	75.1	169
	출입구(문)	22.0	78.0	168
	계단	42.9	57.1	168
	복도	15.0	85.0	167
	장애인용 화장실	22.2	77.8	167
	샤워기/수도꼭지 높이	24.0	76.0	167
	매표소/판매기 높이	14.2	85.8	169
	바닥미끄럼 방지	75.3	24.7	166
	샤워기 보조손잡이	57.1	42.9	168
	기타	4.6	95.4	151
시각	점자표지판	47.6	52.4	21
청각	비상등(경보등)	87.2	12.8	39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73.2	26.8	41

3)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공중목욕탕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優先順位는 1순위로 바닥미끄럼 방지, 계단, 비상등을, 2순위로는 바닥미끄럼 방지, 샤워기 보조손잡이, 화장실사용 식별램프를, 그리고 3순위에는 샤워기 보조손잡이, 바닥미끄럼 방지 등의 순으로 지적하여 전체

적으로 바닥미끄럼 방지, 샤워기 보조손잡이, 계단, 비상등의 순으로 優先順位가 높음을 알 수 있다.

〈表 4-49〉 公衆沐浴湯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바닥미끄럼 방지 (30.5)	계단 (22.0)	비상등 (14.2)	샤워기 보조손잡이 (12.1)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4.3)
2순위	바닥미끄럼 방지 (31.6)	샤워기 보조손잡이 (22.6)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9.8)	단차제거 (9.0)	계단 (6.8)
3순위	샤워기 보조손잡이 (27.1)	바닥미끄럼 방지 (25.9)	계단·장애인용 화장실 (8.2)	출입구·샤워기/ 수도꼭지 높이 (5.9)	

障 碍 類 型 別로 편의시설 設置의 優先順位를 보면, 肢體障 碍 人 의 경우 바닥미끄럼 방지(31.6%), 계단, 샤워기 보조손잡이의 순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視 覺 障 碍 人 의 경우는 바닥미끄럼 방지(36.4%), 계단, 주출입구 단차제거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공통의 편의 시설 설치를 더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聽 覺 障 碍 人 의 경우는 비상등(69.0%), 화장실 사용식별램프, 계단 등의 순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시각장애인과 달리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더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었다(附表 4-14 참조).

마. 食堂/커피숍

1) 便宜施設 設置程度

본 조사결과 장애인들의 外出頻度 중 거의 매일 이용하는 頻度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난 食堂과 커피숍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정도는

다음의 <表 4-50>과 같다. 식당과 커피숍에 있어서의 편의시설 설치 정도는 障礙人 共通施設의 경우 출입구(31.5%), 주출입구 접근로(29.3%), 주출입구 단차제거(17.7%)의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용 지정좌석과 장애인용 공중전화, 주차장 등은 90% 이상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表 4-50> 食堂·커피숍의 便宜施設 設置程度

(단위: %, 명)

구 분		대체로 설치	부분적으로 설치	설치 안됨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17.4	11.0	71.7	219
	주출입구 단차제거	6.8	10.9	82.3	220
	출입구(문)	17.3	13.2	69.5	220
	장애인용 화장실	2.3	13.7	84.0	219
	장애인용 주차장	1.4	4.6	94.1	219
	장애인용 공중전화	4.6	0.5	95.0	208
	장애인 지정좌석	0.9	0.5	98.6	219
	기타	0.5	0.9	98.6	219
시각	점자메뉴판	-	-	100.0	18
청각	비상등(경보등)	-	-	100.0	26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	-	100.0	26
	공중FAX/증폭전화기	-	-	100.0	26

障礙類型別로 편의시설 設置의 優先順位를 보면, 肢體障礙人의 경우 바닥미끄럼 방지(31.6%), 계단, 샤워기 보조손잡이의 순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視覺障礙人의 경우는 바닥미끄럼 방지(36.4%), 계단, 주출입구 단차제거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공통의 편의시설 설치를 더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聽覺障礙人의 경우는 비상등(69.0%), 화장실 사용식별램프, 계단 등의 순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시각장애인과 달리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더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었다(附表 4-14 참조).

2) 便宜施設 改善必要 程度

食堂과 커피숍에 대한 편의시설 改善 必要程度는, 장애인 共通施設의 경우, 주출입구 단차제거(55.7%), 장애인용 화장실(47.7%), 장애인용 주차장(41.5%)의 순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편의시설은 施設設置 程度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던 장애인 지정좌석과 장애인용 공중전화에 대해서는 20% 이내의 수준으로 개선필요를 보여, 시설 설치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필요 정도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일반적으로 設置率이 낮으면 개선필요 정도가 높은 경우들과 달리 設置程度와 改善必要 程度 모두가 낮게 나타난 점이 특이한데, 이는 이들 시설의 이용빈도가 낮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視覺障碍人의 경우는 71%의 응답자가, 聽覺障碍人의 경우는 59%의 응답자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表 4-51〉 食堂·커피숍의 便宜施設 改善必要 程度

(단위: %, 명)

구 분		필요	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30.0	70.0	237
	주출입구 단차제거	55.7	44.3	237
	출입구(문)	37.1	62.9	237
	장애인용 화장실	47.7	52.3	235
	장애인용 주차장	41.5	58.5	236
	장애인용 공중전화	18.9	81.1	238
	장애인 지정좌석	17.3	82.7	237
	기타	10.5	89.5	237
시각	점자메뉴판	71.0	29.0	31
청각	비상등(경보등)	59.4	40.6	32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59.4	40.6	32
	공중FAX/증폭전화기	58.8	41.2	34

3)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食堂/커피숍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 優先順位는 1순위로 장애인용 화장실, 주출입구 단차제거, 장애인용 주차구역의 순으로, 2순위로는 주출입구 단차제거, 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의 순으로, 3순위로는 장애인용 화장실, 주출입구 단차제거, 장애인용 주차구역의 순으로 설치해 줄 것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綜合해 보면, 식당과 커피숍에서는 장애인용 화장실 혹은 주출입구 단차제거, 장애인용 주차구역, 출입구의 순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식당과 커피숍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優先順位를 보면, 肢體障礙人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26.5%), 주출입구 단차제거(22.3%), 장애인용 주차구역(20.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視覺障礙人의 경우는 점자메뉴판(14.4%), 주출입구 단차제거, 출입구의 순으로, 聽覺·言語障礙人의 경우는 비상등(33.3%),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공중 FAX/증폭전화기의 순으로 설치를 원하였는데, 이들은 공통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욕구보다 더 높은 比率로 설치를 원하고 있었다(附表 4-15 참조).

〈表 4-52〉 食堂·커피숍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장애인용 화장실 (22.7)	단차제거 (22.3)	주차구역 (20.4)	접근로 (8.1)	출입구(문) (7.1)
2순위	단차제거 (26.3)	출입구(문) (16.3)	화장실 (15.6)	주차구역 (8.8)	접근로 (7.5)
3순위	장애인용 화장실 (18.9)	단차제거 (16.7)	주차구역 (13.3)	접근로·장애인용 공중전화 (12.2)	

食堂과 커피숍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대상시설들에서 가장 높은 優先順位를 보였던 聽覺障礙人의 비상등 설치(33.3%)에 대한 욕구보다도, 視覺障礙人의 점자메뉴판에 대한 설치(44.4%)의 욕구가 더 높게 나온 점이 다른 대상시설들과 다르다. 이러한 결과는 視覺障礙人들의 식당/커피숍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식당과 커피숍을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바. 主要 交通手段

장애인들이 近隣生活施設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동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交通手段을 알아 보면 전체적으로 障礙類型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交通手段은 걸어서 가는 경우로 평균 70.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視覺障礙人은 83.9%가 걸어서 다닌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肢體障礙人(72.2%), 聽覺障礙人(67.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¹¹⁾.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交通手段은 비록 7.4%의 수준이지만 일반 버스와 승용차로, 일반버스는 청각장애인이 그리고 승용차는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택시(4.2%), 마을버스(3.9%) 등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그 이외의 교통수단은 1% 이내의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걸어서 다니는 것 다음으로, 肢體障礙人의 경우 승용차와 일반버스를, 視覺障礙人의 경우에는 택시와 승용차를, 聽覺障礙人의 경우는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11)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조사의 결과에서는 버스, 승용차, 오토바이의 순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함(충청남도,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연구』, 1997. p.71 참조).

〈表 4-53〉 主要 交通手段

(단위: %, 명)

구 분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전체(N)
걸어서	72.2	83.9	67.2	70.1(400)
마을버스	4.2	1.8	4.9	3.9(22)
일반버스	6.9	3.6	16.4	7.4(42)
택시	4.4	5.4	3.3	4.2(24)
승용차	8.6	5.4	3.3	7.4(42)
오토바이	1.6	-	1.6	1.4(8)
전철	0.5	-	1.6	0.5(3)
자전거	1.4	-	-	1.1(6)
기타	0.2	-	1.6	0.4(2)

반면, 장애인들의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交通施設로는 오토바이, 전철, 자전거 등이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특성상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장애인이 共通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은 걸어서 다니는 것이므로, 道路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도로 이용시 不便事項이 무엇인가를 밝혀서 이를 토대로 적절한 政策的措置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8. 事業場 施設

가. 障碍人の 經濟活動 實態

많은 障碍人들은 장애 및 편견, 사업장관련 편의시설부족 등 때문에 經濟活動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就業活動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30.7%로 구체적인 취업직종부터 살펴보면, 〈表 4-54〉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單純勞務職이 전

체 취업장애인의 29.4%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종사자가 많은 업종은 販賣業으로서, 전체 취업장애인의 19.8%이며, 그 다음으로는 단순생산직, 일반사무직의 순으로 각각 13.0%, 10.7%이다. 그 밖의 직종들에도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있으나 少數이다.

취업한 장애인들의 就業 類型을 自營業 與否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表 4-55 참조), 自營業이 전체응답자(172명)의 14.0% 수준(24명)이고, 非自營業이 86% 수준(148명)으로 자영업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은 이동상의 취약성 때문에 自營業이 적합한 경우가 많으나, 자영업 운영에 대한 지원시책의 부족으로 매우 적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表 4-54〉 就業障 碍 人 의 就業職 種

(단위: 명, %)

직 종	응답자수	비 율
컴퓨터	1	0.6
일반사무직	19	10.7
전자·전기	1	0.6
공예	5	2.8
봉제·의상	6	3.4
지압·안마	9	5.1
교사	2	1.1
침술	1	0.6
시계수리·도장	1	0.6
농어업	1	0.6
판매업	35	19.8
단순노무직	52	29.4
단순생산직	23	13.0
성직자	2	1.1
기 타	19	10.7
계	177	100.0

註: 총 595명의 조사대상자 중 미취업자, 해당편의시설과 관련없는 직장종사자 및 무응답자를 제외한 수치임(이하 동일함).

〈表 4-55〉 就業障碍人の 就業類型(自營業 與否)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수	비율
자영업	24	14.0
비자영업	148	86.0
계	172	100.0

註: 미취업자, 무응답자 제외

취업직장의 규모를 人員規模로 살펴보면(表 4-56 참조), 자영업을 포함한 4인이하가 42.8%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49인 및 5~9인으로서 각각 25.4% 및 1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취업장애인들이 小規模 職場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업원 50~299인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각각 8.7%, 4.0%에 불과하다. 특히 이것은 義務雇傭 事業場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극히 일부의 장애인만 고용되어 있다.

〈表 4-56〉 就業職場의 規模

(단위: 명, %)

구 모	응답자 수	비율
4인 이하	74	42.8
5~ 9인	33	19.1
10~ 49인	44	25.4
50~299인	15	8.7
300인 이상	7	4.0
계	173	100.0

註: 미취업자, 무응답자 제외

就業障碍人들의 출퇴근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出退勤 方法을 알아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버스나 지하철/전철 등의 大衆交通으로, 각각 27.0%, 12.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소득수준의 열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중 自家用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26.4%에 이르

고 있는 바, 이 중에는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이 많을 것이다(表 4-57 참조).

〈表 4-57〉 就業障碍人の 主要 出退勤 手段

(단위: 명, %)

주요 출퇴근 수단	응답자 수	비율
자택에서 자영업	13	7.5
혼자 걸어서	27	15.5
타인의 도움으로 걸어서	1	0.6
버 스	47	27.0
지하철·전철	21	12.1
택 시	7	4.0
자가용	46	26.4
오토바이	6	3.4
전동휠체어	-	-
기 타	6	3.4
계	174	100.0

註: 미취업자, 무응답자 제외

나. 事業場 關聯 便宜施設 設置 및 欲求

많은 장애인들은 그 장애로 인하여 經濟活動의 制約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로 인한 제약이외에도 사회적인 편견, 편의시설의 부족 등이 경제활동 제약의 중요한 原因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장애인들에게 事業場으로의 出退勤과 관련한 편의시설 설치수준에 대한 응답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表 4-58 참조).

먼저, 障碍類型과 상관없이 共通的으로 사용하는 사업장내의 편의 시설 設置水準부터 살펴보면, 사업장의 주출입구 접근로의 설치수준은 ‘대체로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이며,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8.9%에 불과하다. 나머지 85.4%는 ‘설치 안됨’으로 응답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많은 비율의 장애인들

이 편의시설설치의 부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장애인용 주차구역은 ‘대체로 설치’가 10.2%, ‘부분적으로 설치’가 13.4%, ‘설치 안됨’이 76.4%이다. 주출입구 단차제거 및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낮은 높이의 공중전화의 설치는 ‘대체로 설치’가 각각 12.1%, 12.5%, ‘부분적으로 설치’가 각각 13.4%, 12.5%, ‘설치 안됨’이 각각 74.5%, 75.0%로서, 앞의 주출입구 접근로보다는 설치수준이 다소 양호하나, 이것들도 모두 크게 不足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事業場에 있어서,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출입구(문)의 設置水準은 ‘대체로 설치’가 8.3%, ‘부분적으로 설치’가 7.6%, ‘설치 안됨’이 84.1%이다. 장애인용 복도의 설치 및 계단(유효폭, 손잡이)의 설치수준도 ‘대체로 설치’가 각각 7.0%, 7.6%, ‘부분적으로 설치’가 각각 6.4%, 8.9% 밖에 안되며, ‘설치 안됨’이 각각 86.4%, 83.4%로, 이들의 設置水準도 주출입구 접근로 수준 정도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용 경사로, 화장실, 승강기/리프트, 욕실/샤워실의 설치 및 편의증진 요원(도우미)의 배치수준은 극히 낮아 ‘대체로 설치(또는 배치)’가 0.6% 내지 3.8% 수준이며, ‘부분적으로 설치’도 3.8% 내지 8.3%에 불과하다. 장애인용 비상등(경보등), 낮은 자동판매기 및 의자/작업대의 설치수준도 ‘대체로 설치’가 4.5% 내지 5.7%이며, ‘부분적으로 설치’도 2.6% 내지 10.2%에 불과하다.

다음, 視覺障礙人들에게만 해당되는 편의시설의 設置水準에 대하여 해당장애인들이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자. 점자블럭은 ‘대체로 설치’로 응답한 비율이 18.8%, ‘부분적으로 설치’로 응답한 비율이 6.3%이며, 나머지 75.0%는 ‘설치안됨’으로 응답하여 이의 설치도 크게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자표지판 및 화장실사용 식별램프는 ‘대체로 설치’ 및 ‘부분적으로 설치’가 각각 4.5%, 72.7%로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不足한 狀態에 있다고 하겠다.

〈表 4-58〉 事業場內의 便宜施設 設置 有無

(단위: %, 명)

구 분		대체로 설치	부분적으로 설치	설치 안됨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5.7	8.9	85.4	157
	장애인용 주차구역	10.2	13.4	76.4	157
	주출입구 단차제거	12.1	13.4	74.5	157
	출입구(문)	8.3	7.6	84.1	157
	복도(유효폭, 손잡이)	7.0	6.4	86.6	157
	계단(유효폭, 손잡이)	7.6	8.9	83.4	157
	경사로	0.6	8.3	91.0	156
	장애인용 화장실	3.8	7.1	89.1	156
	승강기/리프트	1.9	3.8	94.2	156
	욕실/샤워실	1.9	6.4	91.7	156
	비상등/경보등	5.1	7.7	87.2	156
	자동판매기 높이	5.7	10.2	84.1	157
	의자/작업대 높이	4.5	2.6	92.9	154
	장애인용 공중전화	12.5	12.5	75.0	16
	편의증진요원	0.6	3.8	95.5	157
시각	점자블럭	18.8	6.3	75.0	16
	점자표지판	4.5	72.7	22.7	22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4.5	72.7	22.7	22
청각	상황인식램프	7.1	64.3	28.6	28
	공중FAX/증폭전화기	0.6	3.8	95.5	156

註: 미취업자, 무응답자 제외

마지막으로 聽覺·言語障礙人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상황인식램프도 ‘대체로 설치’가 7.1%, ‘부분적으로 설치’가 64.3%로서 상당수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겠으며 증폭전화기는 ‘대체로 설치’가 0.6%, ‘부분적으로 설치’가 3.8%에 불과하여 매우 부족한 狀態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조사대상자들에게 便宜施設 種類別로 必要程度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表 4-59>와 같다.

<表 4-59> 事業場内の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단위: %, 명)

구 분		필 요	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22.7	77.3	181
	장애인용 주차구역	37.0	63.0	181
	주출입구 단차제거	30.4	69.6	181
	출입구(문)	29.3	70.7	181
	복도(유효폭, 손잡이)	23.2	76.8	181
	계단(유효폭, 손잡이)	47.5	52.5	181
	경사로	35.4	64.6	181
	장애인용 화장실	40.9	59.1	181
	승강기/리프트	28.2	71.8	181
	욕실/샤워실	29.3	70.7	181
	비상등/경보등	16.6	83.4	181
	자동판매기 높이	16.4	83.4	181
	의자/작업대 높이	27.1	72.9	181
	장애인용 공중전화	20.8	79.2	178
	편의증진요원(도우미)	27.2	72.8	180
시각	점자블럭	52.2	47.8	23
	점자표지판	54.5	45.5	22
청각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47.8	52.2	23
	상황인식램프(초인종등)	41.7	58.3	24
	공중FAX/증폭전화기	60.0	40.0	25

註: 미취업자, 무응답자 제외

전체장애인이 공통적으로 ‘매우 필요’ 또는 ‘필요’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의시설은 이용빈도에 비해 설치수준이 매우 적거나 설치수준이 절대적으로 不足한 편의시설인 계단(47.5%), 화장실(40.9%), 주차구역(37.0%), 경사로(35.4%), 주출입구 단차제거(30.4%), 출입구 및 욕실/샤

위실(29.3%) 등에서 필요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의 편의시설도 16.4% 내지 28.2%의 수준에서 ‘매우 필요’ 또는 ‘필요’로 응답하였다.

視覺障礙人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 ‘매우 필요’ 또는 ‘필요’의 응답은 점자표지판(54.5%), 점자블럭(52.2%)의 순이었으며, 모두 높은 비율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聽覺·言語障礙人은 FAX/증폭전화기(60.0%), 화장실사용 식별램프(47.8%), 상황인식램프(41.7%)의 순이었으며, 이것들도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본 조사에서는 障礙類型別로 장애인들 스스로가 희망하는 편의시설설치의 優先順位에 대하여도 질문하였다. 전체 및 지체장애인들이 1순위로 희망하는 것은 供給不足이 크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계단의 설치이다. 그들이 지적한 2순위는 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화장실이다. 그 다음 순위는 의자/작업대 높이 및 주출입구의 단차제거였다.

視覺障礙人의 경우는 점자블럭, 편의증진요원, 점자표지판,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승강기/리프트의 순으로 優先順位를 부여하였다. 聽覺·言語障礙人은 문자전화기 및 증폭전화기를 1순위로, 다음이 욕실/샤워실, 낮은 의자/작업대, 비상등/경보등, 화장실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附表 4-16 참조).

장애인들의 出退勤 便宜施設의 設置와 관련하여, 出退勤의 不便與否를 알아본 결과 37.4%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바, 이것은 현재 취업해 있는 장애인들만의 응답임을 감안할 때, 출퇴근의 어려움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많은 장애인들이 出退勤上의 不便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表 4-60〉 就業障碍人の 出退勤 不便與否

(단위: 명, %)

불편 여부	응답자 수	비율
불편함이 있다	65	37.4
불편함이 없다	109	62.6
계	174	100.0

註: 미취업자, 무응답자 제외

通勤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不便改善 方案은 무엇인지 묻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表 4-61 참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직장근처로 이사를 위한 지원’으로서 19.2%이다. 다음이 ‘장애인 승차가능버스의 운용’이며 17.8%이다. 세번째가 ‘보행상의 불편(노면, 신호길이 등)해소’이며 16.4%이다. 그 다음이 ‘전용통근버스의 운용’, ‘택시이용 지원’의 순이며, 각각 12.3%, 11.0%를 차지하고 있다. ‘승용차 구입지원’, ‘보조요원(도우미)의 지원’, ‘지하철 승강기/에스컬레이터의 설치’ 등도 8.2%, 5.5%, 4.1% 등으로 希望하고 있다.

〈表 4-61〉 就業障碍人が 希望하는 不便改善 方案

(단위: 명, %)

불편개선 방안	응답자 수	비율
보행상의 불편(노면, 신호길이 등)해소	12	16.4
직장근처로 이사를 위한 지원	14	19.2
승용차 구입지원	6	8.2
택시이용 지원	8	11.0
지하철 전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 설치	3	4.1
장애인 승차가능버스의 운용	13	17.8
전용통근버스 운용	9	12.3
보조요원(도우미)의 지원	4	5.5
기타	4	5.5
계	73	100.0

註: 미취업자, 무응답자 제외

9. 醫療施設

가. 便宜施設 設置程度

醫療施設은 障碍의 치료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機關으로서 장애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다. 실제로 다수의 장애인들이 종합병원이나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다. 醫療施設 가운데서도 종합병원은 규모로 인해 다른 시설에 비해 비교적 便宜施設이나 設備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1996년도의 집계에 의하면 총 2,251개 醫療施設에 대한 便宜施設 設置率은 56.0%로 공항(75.0%)에서와 같이 대상시설에서 설치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시설항목별로 구체적인 설치율을 다음의 <表 4-62>에서 보면, 病院의 특성상 화장실, 복도, 경사로 등의 설치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유도블럭이나 안내표시 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表 4-62> 醫療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現況

(단위: 개소, %)

구 분	설치시설수	설치율	구 분	설치시설수	설치율
턱낮추기	716	47.7	화장실	3,420	71.0
유도블럭	188	12.6	주차장	817	41.9
경사로	954	55.3	전화기	668	52.7
출입구	1,199	57.6	판매기	444	46.0
복도	1,862	62.1	음료대	447	47.5
계단	670	43.3	안내표시	1,504	37.2
승강기	685	50.6	계	13,574	45.1

資料: 보건복지부, 『공공시설 및 장애인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1997.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外出頻度를 바탕으로 醫療施設 利用現況을 보면, 전체적으로 75% 정도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病·醫院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病院施設 이용은 1년에 2~3회가 가장

많아서 40.9%를 보이고 있고, 1달에 1~2회는 26.2%, 일주일에 1회도 5.2%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시설에 비해 利用頻度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障 碍 人 들 이 주 로 이 용 하 는 病 · 醫 院 (중 합 병 원 포 함) 의 便 宜 施 設 설 치 현황을 <表 4-63>에서 보면, 대체로 便宜施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表 4-63> 醫療施設의 便宜施設 設置有無

(단위: %, 명)

구 분		대체로 설치	부분적으로 설치	설치 안됨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15.3	13.1	71.7	413
	장애인용 주차구역	3.1	10.2	86.7	413
	주출입구 단차제거	12.8	18.4	68.8	413
	출입구(문)	16.0	13.8	70.2	413
	복도(유효폭, 손잡이)	10.9	10.7	78.5	413
	계단(유효폭, 손잡이)	9.0	12.1	78.9	413
	경사로	10.4	12.6	76.9	412
	장애인용 승강기/리프트	6.8	3.9	89.3	412
	장애인용 화장실	8.0	11.7	80.3	412
	욕실	1.9	4.4	93.7	412
	샤워실/탈의실	1.2	6.5	92.3	414
	접수대/안내대	9.7	11.4	79.0	414
	판매기/음료대	9.7	10.4	80.0	414
	장애인용 공중전화	4.4	7.3	88.4	413
시각	점자블럭	2.3	11.4	86.4	44
	점자안내판	-	2.3	97.7	44
	비상등(경보등)	2.1	8.5	89.4	47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	2.1	97.9	47
	공중FAX/증폭전화기	-	2.1	97.9	47
청각	자막안내방송	-	2.0	98.0	49
	편의증진요원	1.2	3.4	95.4	414
	기타	0.2	1.0	98.8	414

전체적으로 보면, 출입구 단차제거, 접근로, 출입문, 복도, 계단 등이 비교적 많고, 그밖의 시설들은 크게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視 覺 이나 聽 覺 障 碍 人 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편의시설 設置 率 에 있어 앞서의 전국 조사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保 健 福 祉 部 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시설의 설치율을 조사하였고, 본 조사에서는 일정 규모가 아니라도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에 대해 장애인들이 응답한 시설의 설치유무 결과이기 때문이다.

나. 便 宜 施 設 改 善 必 要 程 度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障 碍 人 들 이 주로 이용하는 病 · 醫 院 의 便 宜 施 設 設置 必 要 程 度 는, 주로 병원내 자원봉사자 등 편의증진요원(67.0%)을 제외하고 시설면에서는 계단과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의 개선과 설치 필요성을 비교적 많이 지적하고 있다. 다른 公 共 施 設 들 과 마찬가지로 障 碍 人 의 利 用 頻 度 가 높은 病 院 의 특성상 이러한 시설들이 補 完 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 便 宜 施 設 設置 優 先 順 位

醫 療 施 設 을 크게 綜 合 病 院 과 個 人 病 醫 院 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할 便 宜 施 設 의 우선순위를 알아보면, 먼저 綜 合 病 院 의 경우 편의증진요원과 계단, 화장실 등이 주로 지적되어 설치부족상태와 개선필요정도를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障 碍 類 型 別 로는 공통적으로 편의증진요원의 배치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아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자원봉사자를 통한 장애인안내 등을 보다 活 性 化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肢 體 障 碍 의 경우에는 계단, 視 覺 障 碍 의 경우에는 점자

안내관, 聽覺障礙人의 경우에는 자막안내방송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 障礙特性에 따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附表 4-17 참조).

〈表 4-64〉 綜合病院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편의증진요원 (29.1)	계단 (12.8)	승강기 (12.3)	주차구역 (8.4)	화장실 (6.4)
2순위	화장실 (11.7)	편의증진요원 (11.1)	계단 (10.5)	승강기 (9.3)	경사로 (7.4)
3순위	편의증진요원 (31.8)	화장실 (11.4)	계단 (8.3)	자막안내 (7.6)	경사로 (6.1)

障礙人이 주로 이용하는 病·醫院의 경우 綜合病院과 달리 편의시설 설치부족상태와 이들에 대한 개선 필요도, 즉 공급부족상태를 반영하여 便宜施設의 설치 優先順位는 편의증진요원보다는 계단, 승강기 등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表 4-65〉 病·醫院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계단 (24.6)	승강기 (17.1)	편의증진요원 (16.8)	접수대 (6.5)	출입구 (3.4)
2순위	계단 (15.7)	승강기 (14.1)	편의증진요원 (12.1)	화장실 (7.5)	경사로 (7.5)
3순위	편의증진요원 (25.8)	화장실 (12.5)	계단 (9.3)	경사로 (7.3)	단차제거 (5.6)

마찬가지로 障礙類型別로는 肢體障礙의 경우에는 계단과 승강기를 지적한 경우가 많았고, 視覺障礙의 경우에는 인적인 서비스와 계단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며, 聽覺障礙는 자막안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附表 4-18 참조).

10. 宗教施設

가. 便宜施設 設置程度

宗教가 있는 장애인은 조사대상의 47.9%¹²⁾인 285명으로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宗教施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教會가 가장 많아서 68.1%였고, 다음으로는 성당(15.8%), 사찰(15.4%)의 순이었다. 障 碍 人 들의 종교는 障 碍 類 型 別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障 碍 人 의 경우 1주일에 한 번 이용하는 경우가 69.2%로 가장 많았다.

〈表 4-66〉 주로 利用하는 宗教施設

(단위: 명, %)

구 분	전 체	지 체	시 각	청각·언어
교 회	68.1	68.8	65.5	65.7
성 당	15.8	15.4	24.1	11.4
사 찰	15.4	15.4	10.3	20.0
기 타	0.7	0.5	-	2.9
계	100.0 (285)	100.0 (221)	100.0 (29)	100.0 (35)

宗教施設들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障 碍 人 등을 위한 便宜施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1996년도 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 全 國 4,581개소의 宗教施設의 기준시설인 경사로, 출입구, 주차장, 안내표시 등 4개 시설의 設置現況에서 평균적으로 33.1%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사항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設置率

12) 1995년도의 障 碍 人 實 態 調 査에서 宗教가 있는 경우는 59.4%이며, 우리나라 전체 宗教人口 비율은 1994년 49.9%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

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종교시설의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宗教施設의 경우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편의시설의 종류가 적고, 그나마 설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 할 수 있다. 宗教施設의 便宜施設 중에서는 출입구, 경사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수준이다.

본 조사에서는 障礙人이 현재 주로 다니는 宗教施設의 便宜施設 설치유무를 알아보았는데, 대체로 출입구와 접근로, 단차제거, 경사로, 공중전화 등이 일부 설치되어 있을 뿐 전체적으로 公共施設이나 展示施設 등 다른 시설에 비해 便宜施設이 크게 부족하다. 특히 視覺이나 聽覺障礙人을 위한 시설이나 설비가 특히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宗教生活을 하는 障礙人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表 4-67 참조).

〈表 4-67〉 宗教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現況

(단위: 개소, %)

구 분	경사로	출입구	안내표시	계
대상시설수	4,062	3,929	3,056	11,048
설치시설수	1,334	1,859	460	3,564
설 치 율	32.8	47.3	15.1	33.1

資料: 보건복지부, 『공공시설 및 장애인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1997.

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障礙人이 현재 다니는 宗教施設의 便宜施設에서의 필요정도를 알아보면, 계단에 대한 불편이 가장 많이 지적(51.8%)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화장실(40.0%), 경사로(37.9%), 단차제거(32.6%) 등의 순이었다. 한편 안내인과 같은 편의증진요원의 必要性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表 4-68 참조). 障礙類型別로 視覺障礙人의 경우에는 점자블럭과 점자표지

판의 필요성을 절반 이상이 응답하였으며, 聽覺·言語障 碍는 자막안내, 음성증폭전화기, 비상등에 대한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表 4-68〉 宗 敎 施 設 의 便 宜 施 設 設 置 有 無

(단위: %, 명)

구 분	대체로 설치	부분적으로 설치	설치 안됨	계(N)
주출입구 접근로	17.8	8.9	73.3	281
장애인용 주차구역	4.6	8.9	86.5	281
주출입구 단차제거	10.3	17.8	71.9	281
출입구(문)	18.5	11.0	70.5	281
복도	15.4	4.6	80.0	280
계단	9.6	9.6	80.8	281
경사로	11.0	12.1	76.9	281
공중전화	16.0	2.1	81.9	281
지정좌석	2.8	0.7	96.4	281
화장실	5.7	6.4	87.9	282
점자블럭	-	6.1	93.9	33
점자표지판	-	3.3	96.7	30
비상등(경보등)	-	2.8	97.2	36
화장실 사용식별램프	2.9	2.9	94.3	35
공중FAX/증폭전화기	-	2.9	97.1	35
자막안내방송	2.8	2.8	94.4	36
편의증진요원	9.3	3.2	87.5	279
기타	0.4	1.4	98.2	281

다. 便 宜 施 設 設 置 優 先 順 位

이와 같이 設置가 필요한 施設들 가운데 어떤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본 결과, 설치율이 낮고 이용빈도가 크며 개선 필요도가 가장 컸던 계단에 대한 요구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실, 편의증진요원, 경사로에 대한 필요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4-69 참조). 障 碍 類 型 別 설치 우선순위를 보면 肢 體 障 碍의 경우에는 계단, 경사로, 화장실의 순으로 높았고, 視 覺 障 碍는 점자블럭,

계단, 편의증진요원의 순이며, 聽覺·言語障礙는 자막안내, 비상등, 증폭전화기 등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附表 4-19 참조).

〈表 4-69〉 宗教施設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단위: %, 명)

구 분		필 요	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19.2	80.8	282
	장애인용 주차구역	16.0	84.0	283
	주출입구 단차제거	32.6	67.4	283
	출입구(문)	24.8	75.2	283
	복도	24.1	75.9	283
	계단	51.8	48.2	283
	경사로	37.9	62.1	282
	공중전화	12.7	87.3	282
	지정좌석	19.0	81.0	282
	화장실	40.0	60.0	281
	편의증진요원	44.6	55.4	283
	기타	10.8	89.2	280
시각	점자블럭	62.1	37.9	27
	점자표지판	57.1	42.9	26
청각	비상등(경보등)	58.3	41.7	35
	화장실 사용식별램프	50.0	50.0	35
	공중FAX/증폭전화기	69.4	30.6	35
	자막안내방송	83.3	16.7	35

〈表 4-70〉 宗教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계단 (29.7)	경사로 (12.2)	화장실 (11.0)	편의증진요원 (10.6)	자막안내 (3.4)
2순위	계단 (15.6)	화장실 (15.2)	편의증진요원 (10.1)	경사로 (8.5)	복도 (7.6)
3순위	편의증진요원 (25.8)	화장실 (13.8)	경사로 (13.1)	계단 (8.3)	단차제거 (8.3)

11. 社會福祉施設

가. 便宜施設 設置程度

社會福祉施設은 障礙人, 老人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便宜施設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1996년도의 設置現況에 따르면 老人·障礙人福祉施設의 便宜施設 설치율은 평균 49.1%¹³⁾로 나타나고 있어 施設規模에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障礙人이나 老人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기대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便宜增進 保障法에는 노유자시설로서 障礙人施設, 老人施設, 兒童施設 및 기타 社會福祉施設로 구분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障礙人들이 주로 이용하는 社會福祉施設을 대상으로 시설관련 사항을 파악하였다.

〈表 4-71〉 老人·障礙人福祉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現況

(단위: 개소, %)

구 분	설치시설수	설치율	구 분	설치시설수	설치율
유도블럭	137	16.2	화장실	837	49.9
경사로	542	49.0	주차장	298	39.9
출입구	822	66.9	판매기	278	57.0
복도	599	64.1	음료대	100	33.0
계단	402	51.3	안내표시	461	49.1
승강기	97	22.3			
화장실	837	49.9	계	4,776	44.0

資料: 보건복지부, 공공시설 및 장애인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1997.

장애인의 社會福祉施設 利用頻度を 보면, 대개의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난 1년간 전혀 이용하

13) 노인·장애인시설을 제외한 아동 및 기타 社會福祉施設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29.1%로 더욱 낮음.

지 않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80.8%이며, 1달에 1~2회가 9.6%, 1년에 2~3회가 6.2%로 이용빈도가 낮은 시설에 속하고 있다. 다만 視覺이나 聽覺障礙人의 경우에는 肢體障礙에 비해 이용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社會福祉施設의 便宜施設 설치현황을 구체적으로 <表 4-71>에서 살펴보면,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는 출입구, 복도 등이며, 유도블럭이나 주차장, 승강기, 음료대, 안내표시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障礙人들이 주로 이용하는 社會福祉施設에서 改善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면, 도움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편의증진요원의 배치를 지적한 경우가 59.1%로 절반 이상이었고, 다음으로는 계단(48.2%), 경사로(35.5%), 화장실(34.5%) 등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社會福祉施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對人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고, 施設側面에서는 계단이나 경사로 화장실의 불편사항이 많다는 점을 볼 수 있다. 視覺障礙人의 경우에는 점자안내판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聽覺障礙는 자막안내나 증폭전화기 설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社會福祉施設의 便宜施設 설치 우선순위는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의 需給實態를 잘 반영하여 편의증진요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계단, 경사로, 화장실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시설의 특성상, 단차제거, 공중전화, 식수대 높이 등 비교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障礙類型別로 肢體障礙와 視覺障礙人의 경우에는 편의증진요원의

배치를 1순위로 지적하고 있고, 과반수 정도의 聽覺障 碍 人 은 자막안
내에 대한 필요성을 1순위로 응답하였다(附表 4-20 참조).

〈表 4-72〉 社 會 福 祉 施 設 의 便 宜 施 設 改 善 必 要 程 度

(단위: %, 명)

구 분		필 요	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21.8	78.2	110
	장애인용 주차구역	23.6	76.4	110
	주출입구 단차제거	29.1	70.9	110
	복도	28.2	71.8	110
	계단	48.2	51.8	110
	경사로	35.5	64.5	110
	화장실	34.5	65.5	110
	침실/객실	20.9	79.1	110
	세면대·식수대 높이	25.5	74.5	110
	공중전화	29.1	70.9	110
	편의증진요원	59.1	40.9	110
	기타	20.0	80.0	110
시각	점자블럭	80.0	20.0	15
	점자안내판	86.7	13.3	15
청각	비상등(경보등)	57.1	42.9	7
	화장실 사용식별램프	57.1	42.9	7
	공중FAX/증폭전화기	85.7	14.3	7
	자막안내방송	85.7	14.3	7

〈表 4-73〉 社 會 福 祉 施 設 의 便 宜 施 設 設 置 優 先 順 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편의증진요원 (28.2)	계단 (16.5)	경사로 (7.1)	접근로 (7.1)	침실/객실 (5.9)
2순위	7계단 (18.6)	경사로 (12.9)	편의증진요원 (11.1)	단차제거 (10.0)	식수대높이 (7.1)
3순위	편의증진요원 (19.6)	화장실 (17.6)	경사로 (11.8)	공중전화 (11.8)	계단 (9.8)

12.. 觀覽集會·展示施設

가. 便宜施設 設置程度

觀覽集會施設은 공연장, 극장, 집회장 등이며, 展示施設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기념관 등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도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便宜施設이 설치되어 있다. 1996년의 집계에 의하면 觀覽集會施設 총 552개소의 便宜施設 설치율은 평균 42.7%였고, 73개소의 展示施設은 평균 54%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 알아보면, 觀覽集會施設의 경우 승강기, 관람석, 복도 등의 설치율이 낮으며, 특히 특성상 視覺障礙人을 위한 시설들이 대체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展示施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障礙人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觀覽施設이나 展示施設을 자주 이용하지는 않는다. 본 조사에서도 이들 시설에 대한 障礙人의 利用頻度を 알아본 결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지난 1년간 전혀 가지 않는 장애인은 95.6%이고, 극장의 경우에는 91.6%로 나타나 일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文化生活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主된 理由는 건강이나 생계 등 일차적인 문제로 인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障壁이 있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타고 극장에 입장하는 것은 우리 여건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視覺이나 聽覺障礙人이 행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점자안내판이나 수화통역사가 배치된 觀覽施設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障礙人들의 文化欲求도 높아지고 있고, 最近에는 각종 障礙人들을 위한 文化行事가 개최되고 있어 일반인과 함께 할 수 있는 空間의 配置가 필요한 실정이다.

〈表 4-74〉 觀覽集會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現況

(단위: 개소, %)

구 분	설치시설수	설치율	구 분	설치시설수	설치율
유도블럭	29	8.6	주차장	219	39.0
경사로	190	48.5	전화기	192	57.3
출입구	308	65.7	판매기	85	57.4
복도	213	34.7	매표소	92	54.4
계단	141	39.6	음료대	76	51.0
승강기	70	30.0	안내표시	340	36.5
화장실	321	42.0			
관람석/열람석	309	33.2	계	2,610	42.7

資料: 보건복지부, 『공공시설 및 장애인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1997.

〈表 4-75〉 展示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現況

(단위: 개소, %)

구 분	설치시설수	설치율	구 분	설치시설수	설치율
유도블럭	14	28.6	판매기	13	44.8
경사로	48	73.8	매표소	14	51.9
출입구	55	76.4	음료대	9	37.5
승강기	15	42.9	안내표시	70	57.9
주차장	50	52.1			
전화기	38	74.5	계	226	54.0

資料: 보건복지부, 『공공시설 및 장애인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1997.

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障 碍 人 이 응답한 개선필요성이 높은 시설을 알아보면 〈表 4-76〉에 나타난 바와 같다. 觀覽集會·展示施設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계단이 가장 많아서 73.9%의 장애인이 지적하였고, 그밖에는 특히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60.9%), 편의증진요원의 배치(56.5%), 승강기(54.3%) 등의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障 碍 人 指定觀覽席의 설치도 과반수 정도가 희망하고 있다.

〈表 4-76〉 觀覽集會 및 展示施設의 改善 必要程度

(단위: %, 명)

구 분		필 요	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39.1	60.9	46
	주출입구 주차구역	45.7	54.3	46
	주출입구 단차제거	43.5	56.5	46
	출입구	47.8	52.2	46
	복도	45.7	54.3	46
	계단	73.9	26.1	46
	경사로	50.0	50.0	46
	승강기/리프트	54.3	45.7	46
	공중전화	41.3	58.7	46
	매표소/판매기/음료대	34.8	65.2	46
	화장실	60.9	39.1	46
	지정관람석	50.0	50.0	44
	편의증진요원	56.5	43.5	46
	기타	28.3	71.7	46

註: 시각 및 청각장애 관련시설에 대한 응답자수가 시각 1명, 청각 4명으로 이들 시설은 제외하였음.

다.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觀覽集會과 展示施設의 便宜施設 설치 優先順位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觀覽集會施設에 있어서는 대체로 계단, 지정관람석, 주차구역, 경사로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나 다른 시설에 비해 應答頻도가 높지 않았다. 障礙類型別로는 肢體障礙의 경우 계단, 장애인용 주차구역, 지정관람석 등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聽覺障礙의 경우에는 응답자 4명중 3명이 자막안내방송을 지적하였다.

반면, 展示施設의 경우에는 觀覽集會施設과 달리 便宜增進要員에 대한 요구가 전체적으로 많았다. 이는 이들 시설의 특성상 주로 行事故內와 展示物의 내용을 알려주는 인력이나 설비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視覺障礙의 경우에는 점자안내판이 필요할 것이며, 聽覺·言語障礙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사의 배치 등이 요

구된다. 전체적으로 응답자가 많지 않아 장애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表 4-77〉 觀覽集會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계단 (20.0)	주차구역 (16.7)	지정관람석 (13.3)	출입구 (13.3)	경사로 (6.7)
2순위	계단 (28.6)	화장실 (21.4)	지정관람석 (7.1)	주차구역 (7.1)	승강기 (7.1)
3순위	경사로 (16.0)	편의증진요원 (12.0)	계단 (12.0)	화장실 (12.0)	지정관람석 (12.0)

〈表 4-78〉 展示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편의증진요원 (21.4)	승강기 (14.3)	주차구역·계단·경사로 (7.1)		
2순위	편의증진요원 (28.6)	화장실 (21.4)	계단·승강기 (14.3)		주차구역 (7.1)
3순위	계단 (27.3)	편의증진요원 (18.2)	화장실 (18.2)	지정관람석·공중전화 (9.1)	

13. 運動施設

장애인들의 運動施設에 대한 이용도는 다른 시설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運動施設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94.6%나 되고 있다.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肢體障 碍人은 주로 운동장, 스포츠센터 등 大衆施設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충청남도, 1996: 48)고 응답한 내용들을 볼 때, 이용실태 및 우선순위 파악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大衆施設의 이용은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가. 便宜施設 改善必要 程度

’95년도 市政開發研究院의 운동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評價程度에서 응답자의 20%가 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40%의 응답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供給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運動施設에 대한 편의시설 改善 必要程度를 본 조사에서 물어본 결과, 장애인 공통적으로 운동시설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57.6%), 계단(43.2%), 주출입구 주차구역(38.9%)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普遍的으로 모든 시설에서 높은 설치정도를 보였던 주출입구 단차제거,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등에 대해서는 設置程度가 높은 편이어서인지 20%의 수준으로 개선필요도를 나타내어 낮은 改善必要度를 보임을 알 수 있다.

〈表 4-79〉 運動施設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단위: %, 명)

구 분		필요	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25.0	75.0	36
	주출입구 주차구역	38.9	61.1	36
	주출입구 단차제거	24.3	75.7	37
	출입구	32.4	67.6	37
	계단	43.2	56.8	37
	경사로	29.7	70.3	37
	승강기/리프트	37.8	62.2	37
	공중전화	29.7	70.3	37
	매표소/판매기/음료대	35.1	64.9	37
	화장실	57.6	42.4	33
	기타	30.6	69.7	36
시각	점자표지판	66.7	33.3	3
	점자블럭	66.7	33.3	3
청각	비상등(경보등)	83.3	16.7	6
	화장실사용식별램프	66.7	33.3	6
	공중FAX/증폭전화기	83.3	16.7	6

視覺障礙人의 경우 66.7%의 응답자가 점자블럭과 점자표지판에 대해 개선 필요도를 보였고, 聽覺障礙人의 경우는 비상등과 증폭전화기에 대해 83.3%의 응답자가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대상시설들에서와 같이 가장 높은 개선 필요도를 보였다.

나. 便宜施設의 設置 優先順位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運動施設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 優先順位는 1순위로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주차구역, 계단·비상등의 순으로, 2순위로는 계단, 장애인용 화장실등의 순으로, 3순위로는 경사로·승강기/리프트, 매표소, 판매대, 음료대, 장애인용 화장실의 순으로 설치해 줄 것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運動施設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전체적으로 장애인용 화장실, 계단 혹은 주출입구 주차구역 등의 순으로 설치해 줄 것을 원하고 있어, 公共施設에서 필요시 되는 義務的인 便宜施設(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주차구역의 설치 등)이 운동시설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表 4-80〉 運動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장애인용 화장실 (28.1)	장애인용 주차구역 (21.9)	계단·비상 등 (9.4)	승강기/리프트 (6.3)	
2순위	계단 (20.8)	장애인용 화장실 (16.7)	장애인용 주차구역·경사로· 승강기/리프트(8.3)		
3순위	경사로·승강기/리프트·매표소/판매대/ 음료대·장애인용 화장실 (15.4)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계단·청각 FAX/증폭전화기 (7.7)

장애유형별 운동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 優先順位는 肢體障礙人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이 34.6%로 설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출입구 주차구역(19.2%), 계단(11.2%)의 순으로 설치 우선순위를 응답하였다. 視覺障礙人의 경우는 점자표지판(50.0%), 주출입구 주차구역의 순으로, 聽覺·言語障礙人의 경우는 비상등(75.0%), 주출입구 주차구역(25.0%)의 순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附表 4-21 참조).

다. 運動施設의 便宜施設 設置方案

장애인들의 運動施設에 대한 便宜施設 設置方案으로는, 전체적으로 일반인 운동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51.2%, 장애인 전용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48.8%가 응답하여, 이 두가지 設置方案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볼 때, 肢體와 聽覺障礙人의 경우는 일반인 운동시설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약간 더 많이 응답한 반면, 視覺障礙人의 경우는 응답자 전원이 장애인 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여 시각장애인들의 專用施設 설치욕구가 큼을 알 수 있다.

〈表 4-81〉 運動施設의 便宜施設 設置方案

(단위: %, 명)

설치방안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전체
일반인 운동시설에 설치	54.5	-	60.0	51.2(21)
장애인 전용시설을 별도로 설치	45.5	100.0	40.0	48.8(20)

14. 公園 및 遊園地

조사대상 장애인들이 거의 매일 利用한다는 편의시설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한 편의시설인 公園 및 遊園地에 있어서의

장애인들의 활동은 주로 산책이나 소풍, 약수터 이용, 그리고 장거리 여행이 속하게 된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47.6%의 응답자가 이러한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5년도 서울市政開發研究院의 調査에 의하면 餘暇施設에 속하는 놀이시설, 고궁, 온천, 유원지, 약수터, 놀이터 등의 편의시설 設置率이 0~2.2%의 수준으로 설치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56).

가. 便宜施設 改善必要 程度

공원 및 유원지에 있어 편의시설의 改善必要 程度를 알아보면, 장애인 공통 시설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에 52.5%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편의증진요원의 배치(47.5%), 계단(42.1%)의 순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복도,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에 대해서는 10%의 수준으로 改善必要度를 응답하여 낮은 개선필요도를 보였는데, 이는 공원 및 유원지의 경우 복도나 출입구와 같은 便宜施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출입구 접근로의 경우는 다른 대상시설들보다 비교적 보도의 상태와 연속선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接近路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視覺障礙人의 경우는 점자표지판과 점자블럭에 대해 60~70%의 수준으로, 聽覺障礙人의 경우는 적게는 60% 수준(화장실 사용식별램프, 비상등, 증폭전화기)에서 많게는 80%의 수준(자막안내방송)까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表 4-82〉 公園 및 遊園地의 便宜施設 設置 程度

(단위: %, 명)

구 분		필요	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16.6	83.4	302
	주출입구 주차구역	26.3	73.7	304
	주출입구 단차제거	39.8	60.2	304
	출입구	17.4	82.6	304
	복도	15.5	84.5	304
	계단	42.1	57.9	304
	경사로	38.2	61.8	304
	승강기/리프트	18.4	81.6	304
	공중전화	26.3	73.7	30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18.8	81.3	304
	화장실	52.5	47.5	304
	편의증진요원 배치	47.5	52.5	303
	기타	12.5	87.5	304
시각	점자표지판	65.5	34.5	29
	점자블럭	67.9	32.1	28
청각	비상등(경보등)	66.7	33.3	33
	화장실사용식별램프	60.6	39.4	33
	공중FAX/증폭전화기	69.7	30.3	33
	자막안내방송	80.6	19.4	36

나. 公園/遊園地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公園 및 遊園地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 優先順位는 1순위로 계단, 장애인용 화장실, 편의증진요원의 배치순으로, 2순위로는 장애인용 화장실, 주출입구 단차제거, 경사로의 순으로, 3순위로는 편의증진요원의 배치, 장애인용 화장실, 경사로의 순으로 설치해 줄 것을 지적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은 공원 및 유원지에 계단, 편의증진요원의 배치 순으로 원하고 있고, 餘暇施設에서도 편의증진요원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83〉 公園 및 遊園地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계단 (18.8)	화장실 (14.7)	편의증진요원 (13.5)	주차구역 (11.7)	단차제거 (8.6)
2순위	화장실 (18.7)	단차제거 (17.3)	경사로 (10.7)	계단 (9.8)	편의증진요원 (8.9)
3순위	편의증진요원 (20.9)	화장실 (16.4)	경사로 (14.1)	계단 (8.5)	단차제거 (7.9)

장애類型別 편의시설 설치의 優先順位는 유형별로 차이가 현저하여, 肢體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17.2%), 장애인용 주차구역(13.5%), 편의증진요원 배치(11.6%)의 순으로 요구하고 있어 공공시설에서 설치를 義務化하고 있는 시설들의 設置順位가 높음을 알 수 있다. 視覺장애인의 경우는 편의증진요원의 배치(31.5%), 점자표지판/점자블럭(13.2%)의 순으로, 聽覺·言語장애인의 경우는 자막안내방송(37.3%), 편의증진요원의 배치(13.8%) 등의 순으로 설치 우선순위를 응답하여, 聽覺장애인과 달리 視覺장애인들은 그들만의 편의시설 설치보다 편의증진요원의 도움을 받는 것을 2배 이상 더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附表 4-22 참조).

다. 動物園/植物園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動物園과 植物園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優先順位는 1순위로 장애인용 주차구역, 편의증진요원의 배치, 자막안내방송의 순으로, 2순위로는 장애인용 화장실, 편의증진요원의 배치, 계단의 설치 순으로, 3순위로는 편의증진요원의 배치, 주출입구 단차제거, 장애인용 화장실의 순으로 設置해 줄 것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全體的으로 장애인용 주차구역, 편의증진요원 배치, 장애

인용 화장실등의 순으로 설치를 원하고 있어, 動物園, 植物園과 같이 장애인들의 이동이 많은 시설들에서도 역시 便宜増進要員の 도움을 必要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動物園/植物園의 편의시설설치 優先順位를 보면, 肢體 障碍人の 경우 주출입구 단차제거(32.1%), 편의증진요원의 배치(25.0%) 등의 순으로 설치를 요구하였다.

視覺障碍人の 경우는 점자표지판에 대해 100%가 1순위로 지적하였고, 聽覺障碍人の 경우는 자막안내방송(66.7%), 공중FAX/증폭전화기· 장애인용 공중전화(16.7%)의 순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여, 다른 대상시설들에서와는 달리 동·식물원에서는 視覺·聽覺·言語障碍人들 자신들의 편의시설 설치에 優先順位를 두었다(附表 4-23 참조).

〈表 4-84〉 動物園/植物園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장애인용 주차구역 (25.7)	편의증진요원 (20.0)	자막안내방송 (11.4)	단차제거·매표소· 장애인용 화장실(5.7)	
2순위	장애인용 화장실 (24.2)	편의증진요원 (21.2)	계단 (12.1)	단차제거·승강기/ 리프트(9.1)	
3순위	편의증진요원 (21.7)	단차제거 (17.4)	장애인용 화장실 (13.0)	출입구(문)·장애인용 공중전화(8.7)	

14. 販賣施設 및 宿泊施設

가. 便宜施設 設置程度

販賣施設이나 宿泊施設은 障碍人들이 자주 이용하는 施設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障碍人들의 利用頻度를 본 조사 결과에서 보면, 백화점의 경우에는 82.6%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

고, 또한 호텔·콘도미니엄·여관 등도 94.6%의 障 碍 人 들 이 이 용 하 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餘 暇 生 活 과 文 化 的 欲 求 增 大 에 따 라 앞 으 로 는 宿 泊 施 設 등 에 있 어 서 기 본 적 인 便 宜 施 設 에 대 한 요 구 도 높 아 질 것 으 로 예 상 되 고 있 어 시 설 면 에 서 개 선 이 필 요 하 다 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백화점, 할인점과 같은 대형 販 賣 施 設 이 나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宿 泊 施 設 은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등은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000m² 이상 면적의 총 418개소의 대형 販 賣 施 設 에 대 한 설 치 현 황 에 의 하 면 전 체 평 균 52.5%의 便 宜 施 設 設 置 率 을 보 이 고 있 다. 販 賣 施 設 에 설 치 된 施 設 項 目 別 로 구 분 해 보 면 출 입 구, 승 강 기, 전 화 기, 주 차 장 등 의 설 치 율 이 다 른 시 설 보 다 높 은 반 면, 경 사 로, 유 도 블 러 크, 안 내 표 시 등 이 설 치 되 지 않 은 경 우 가 많 음 을 알 수 있 다.

〈表 4-85〉 販 賣 施 設 (3,000m² 以 上)의 便 宜 施 設 設 置 現 況
(단위: 개소, %)

구 분	설치시설수	설치율	구 분	설치시설수	설치율
유도블럭	44	16.2	전화기	113	61.7
경사로	136	5.0	판매기	83	51.6
출입구	234	80.4	음료대	71	44.1
승강기	164	72.6	안내표시	144	23.6
화장실	217	47.8			
주차장	379	53.4	계	2,181	45.6

資料: 보건복지부, 『공공시설 및 장애인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1997.

나. 便 宜 施 設 改 善 必 要 程 度

販 賣 및 宿 泊 施 設 의 시 설 개 선 필 요 여 부 를 보 면 전 체 적 으 로 便 宜 增 進 要 員 의 배 치 를 바 라 는 障 碍 人 이 전 체 의 6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화장실(55.9%), 계단(51.5%), 승강기(50.5%),

주차구역(49.0%) 등이 비교적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 지적되고 있으며, 출입구, 접근로, 공중전화 등은 必要性이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체로 施設設置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차장이 외딴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들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視覺障礙人의 경우에는 점자표지판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聽覺障礙의 경우는 자막안내, 증폭전화기, 비상등의 필요성을 높게 지적하고 있었다.

〈表 4-86〉 販賣 및 宿泊施設の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단위: %, 명)

구 분		필 요	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37.7	62.3	77
	주출입구 주차구역	49.0	51.0	79
	주출입구 단차제거	39.8	60.2	77
	출입구	38.8	61.2	77
	복도	44.7	55.3	76
	계단	51.5	48.5	77
	승강기/에스컬레이터	50.5	49.5	77
	화장실	55.9	44.1	76
	공중전화	42.2	57.8	75
	접수대/판매대	32.4	67.6	75
	객실/침실	30.4	69.6	75
	욕실	30.4	69.6	75
	편의증진요원 배치	63.1	36.9	75
	기타	28.2	71.8	75
시각	점자블럭	66.7	33.3	6
	점자표지판	100.0	-	6
청각	자막안내방송	83.3	16.7	10
	비상등(경보등)	77.8	22.2	10
	화장실사용식별램프	72.2	27.8	10
	공중FAX/증폭전화기	83.3	16.7	10

다. 便 宜 施 設 設 置 優 先 順 位

이들 시설의 便 宜 施 設 설치 優 先 順 位를 보면, 대체로 화장실과 편의증진요원, 그리고 주차구역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시설에 비해 전체적으로 應 答 頻 度가 높지는 않았다.

障 碍 類 型 別로는 肢 體 障 碍의 경우 주차장, 화장실이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였고, 視 覺 障 碍는 점자표지판, 聽 覺 · 言 語 障 碍人은 자막안내방송이 높게 나타났다. 宿 泊 施 設의 경우 설치 우선순위에서는 이용하는 障 碍 人이 많지 않아서 응답률이 낮았는데, 전체적으로 주차구역, 계단, 승강기, 화장실 등이 많이 지적되었다(附表 4-24 참조).

〈表 4-87〉 販 賣 施 設의 便 宜 施 設 設 置 優 先 順 位

(단위: %)

구 분	1	2	3	4	5
1순위	주차구역 (15.6)	화장실 (15.6)	편의증진요원 (14.1)	계단 (9.4)	승강기 (9.4)
2순위	화장실 (17.5)	편의증진요원 (12.3)	주차구역 (10.5)	공중전화 (10.5)	계단 (7.0)
3순위	편의증진요원 (34.6)	화장실 (15.4)	출입구 (7.7)	비상등 (7.7)	계단 (3.8)

15. 敎 育 研 究 施 設

가. 便 宜 施 設 設 置 程 度

敎 育 研 究 施 設에는 學 校 施 設과 學 院이 해당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大 學을 포함하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총 18명으로서 3.0%이고, 학원은 4명으로 0.7%에 불과하였다. 전국의 학교 11,310개소에 대한 便 宜 施 設 現 況 集 計에 의하면, 편의시설 設 置 率은 평균 32.4%로 조사대상 시설의 평균치(36.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실, 유도블

력, 주차장, 안내표시 등의 설치율이 낮았으며, 출입구나 승강기¹⁴⁾의 설치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學校施設들은 대부분 一般學生들을 위한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이며, 최근에는 特殊學校 대신 一般學校內 特殊學級¹⁵⁾이 늘어나면서 障礙學生을 위한 시설들이 부분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집계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未洽한 실정이다.

〈表 4-88〉 學校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現況

(단위: 개소, %)

구 분	설치시설수	설치율	구 분	설치시설수	설치율
턱낮추기	2,614	38.0	세면대	1,890	36.7
유도블럭	541	7.7	주차장	1,548	22.7
경사로	3,936	42.9	유도신호장치	581	20.9
출입구	6,158	62.1	전화기	949	27.5
복도	8,611	50.9	판매기	611	23.3
계단	2,701	29.5	음료대	1,174	33.9
승강기	215	46.5	안내표시	4,404	28.3
화장실	2,749	17.4	계	38,682	32.4

資料: 보건복지부, 『공공시설 및 장애인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1997.

한편 1992년부터 障礙學生의 高等教育 기회확대를 취지로 시작된 大學特例入學制度에 의해 장애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이들 大學校에서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教育部의 資料에 의하면 최근 전국의 189개 대학의 총 21,760개 대상시설 중 11,745개가 설치되어 평균 54%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特例入學 適用大學¹⁶⁾에서는 평균

14) 승강기는 현행 규정에 의해 5층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15) 1996년 현재 특수학교는 108개소이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3,838개소임.

16) 障礙人 特別銓衡을 실시하는 대학은 1997년에 28개 대학 238명이었으며, 1998학년도에는 38개대(전문대 6개)에서 총 1,643명을 모집할 예정임(교육부, 내부자료, 1997).

48.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便宜施設이 단 한군데도 없는 대학이 2개소, 평균 설치율이 10%를 밑도는 대학이 5개소인 반면, 설치율이 80%를 넘는 대학도 있어 학교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大學特例入學制度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敎育研究施設의 便宜施設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치율이 낮고 利用頻度가 높은 계단에 대한 불편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장애인용 화장실, 복도(바닥, 손잡이)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4-89〉 敎育研究施設의 便宜施設 改善 必要程度

(단위: %, 명)

구 분		필 요	불필요	계(N)
공통	주출입구 접근로	28.6	71.4	16
	장애인용 주차구역	23.8	76.2	16
	주출입구 단차제거	38.1	61.9	16
	출입구(문)	28.6	71.4	16
	복도	42.9	57.1	16
	계단	52.4	47.6	16
	경사로	30.0	70.0	16
	승강기/리프트	40.0	60.0	16
	장애인용 화장실	45.0	55.0	15
	장애인용 공중전화	30.0	70.0	16
	접수대/작업대	36.8	63.2	15
	편의증진요원	42.9	57.1	15
청각	비상등(경보등)	71.4	28.6	7
	자막안내방송	50.0	50.0	7
	화장실 사용식별램프	57.1	42.9	7
	공중FAX/증폭전화기	71.4	28.6	7

註: 시각장애는 응답자가 1명이므로 제외하였음.

한편 聽覺障礙學生의 경우에는 비상등과 증폭전화기의 설치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편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앞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肢體障礙의 경우에는 계단과 복도, 聽覺障礙의 경우에는 비상등과 증폭전화기의 순위가 높게 지적되었으나 응답사례수가 많지 않았다.

第 5 節 障礙人 便宜施設 需給實態 및 優先順位 分析

편의시설의 供給實態는 전국 및 시·도단위의 分布實態를 앞에서 보았으나, 실제 주민이 체험하는 공급정도 혹은 수요에 비한 공급정도에 대한 實態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제한된 지역이기는 하지만 본 조사에 의하면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不滿足은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적 편의시설이 잘 갖추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극소수이고 약 70% 이상의 조사대상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展示效果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포함하면 92.2%의 조사대상 장애인이 현재의 편의시설 設置實態에 不滿足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조사한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平均 充足率인 36.8%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정부의 조사 대상시설이 일정기준 이상의 공공건물 및 시설인데 비해, 본 조사는 정부기준 이하의 모든 建物 및 施設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近隣生活施設 등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 및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施設設置 充足率이 10% 이하로 적게 나타났다.

〈表 4-90〉 調査對象 障礙人의 便宜施設에 대한 滿足狀態

(단위: 명, %)

계	매우 불만족	전시효과뿐	일부시설 도움	비교적 잘됨	기타
100.0(589)	70.6	21.6	5.9	1.4	0.2

便宜施設의 수요에 비한 供給實態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본 조사연구는 편의시설이 매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설치정도가 부족한 정도를 파악하여 供給不足 程度 및 順位를 보고자 한다. 즉 조사에 이용된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는 욕구에 비해 “대체로 설치”된 정도를 비교하여 공급 부족정도를 가늠코자 한다. 이는 종합적 분석을 위해 조사에 이용된 “필요한” 정도의 욕구와 “부분적 설치”의 실태를 배제하였지만 우선 긴요한 便宜施設의 需給에 대한 實態 把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1. 住居地 및 近隣公衆利用施設의 便宜施設 供給不足 狀態

본 조사에서는 전국적 供給實態의 자료 입수가 어려운 對象施設에 대해서만 편의시설 設置實態를 調査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편의시설의 需給實態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도로, 공장, 주택, 그리고 슈퍼마켓, 약국, 은행, 시장, 공중목욕탕, 식당/커피숍 등을 포함하는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이다.

〈表 4-91〉은 조사된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의 設置實態 및 必要度에 대한 응답에서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와 대체로 설치가 되었다고 응답한 수의 차이를 供給不足의 정도로 보고 이의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상시설에서 공급부족 정도는 계단에서 가장 심하고, 다음으로는 화장실, 便宜增進要員(물론 施設은 아니지만)의 공급부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경사로, 단차제거, 승강기/리프트 등에서 비슷한 순위의 공급부족 정도를 보였다.

슈퍼마켓, 약국, 미용실, 은행, 시장, 공중목욕탕, 식당/커피숍 등 장애인의 訪問頻度가 큰 시설들을 포함하는 近隣生活施設에서의 편의시설 부족상태는 계단보다 화장실이 더욱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물의 계단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높아서 세번째로 심한 공급부족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편의시설은 아니지만 獨自的 活動制約이 큰 장애인이 많아 施設改善 이외에 便宜增進要員 필요성을 많이 지적하였다.

〈表 4-91〉 對象施設別 便宜施設の 供給實態 및 必要度の 比較
(단위: 명)

	사업장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학교		
	대체 로 설치	매우 필요	순 위	대체 로 설치	매우 필요	순 위	대체 로 설치	매우 필요	순 위	대체 로 설치	매우 필요	순 위	대체 로 설치	매우 필요	순 위	대체 로 설치	매우 필요	순 위
주출입구 접근로	19	15		129	64		259	200		50	34		63	53		5	1	2
주차구역	9	41	3	76	45		57	217	7	13	0		13	62	7	3	0	5
단차제거	16	28	8	101	117	6	108	445	3	29	76	5	53	99	8	5	3	
출입구(문)	19	26	11	110	97		223	353	8	52	52		66	101	9	6	1	1
복도	13	15	9	69	140	5	67	239	5	43	50		45	103	5	5	4	
계단	11	59	1	59	192	1	95	484	2	27	135	1	37	215	2	5	6	
경사로	12	37	4	86	166	4	73	158	9	31	82	4	63	116	6	5	1	2
화장실	1	48	2	95	191	3	19	404	1	16	98	3	33	154	4	4	4	
욕실·샤워실	3	26	5	62	184	2	-	-		-	-		-	-		-	-	
매표소/계산 대/진열대	-	-		-	-		160	143		-	-		40	78	10	3	3	
승강기/ 리프트	6	24	7	139	54		12	182	6	-	-		28	180	3	1	3	
공중전화	0	11	10	-	-		43	91	10	-	-		18	48	11	5	1	2
편의증진 요원	0	22	6	-	-		0	304	4	26	113	2	5	264	1	1	3	
점자표지판	0	7		-	-		0	53		-	-		0	20		-	-	
점자블럭	0	6		1	25		3	57		0	18		1	21		-	-	
비상·경보등	0	3		1	41		6	121		0	20		1	30		2	5	5
청각장애용 Fax·중폭 전화기	-	-		8	39		0	34		0	24		0	36		0	5	
총응답수	158			589			1,589			307			453			21		

註: 점자표지판, 점자블럭, 비상·경보등, 청각장애용 FAX 및 중폭전화기 등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므로 총 응답수는 表 내의 수와는 달리 각각 42~70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

綜合病院은 상대적으로 便宜施設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便宜增進要員에서만 필요도가 절대적으로 큰 것은 장애에다가 질병으로 인해 활동부자유도가 증대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단 및 승강기 이용에서 아직은 개선 필요도에 비해 현 설치상태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편의시설 설치의 事後管理·監督이 強化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주택은 장애인들의 活動이 일반인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편의시설 중 계단이 필요도에 비해 설치상태와 부적합도가 가장 크고 욕실, 샤워실 및 화장실의 적절한 공급부족이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利用頻度가 가장 큰 시설의 하나인 道路에서는 건널목의 신호길이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길의 경사도 및 노면상태와 턱낮추기에서도 개선 必要度에 비해 매우 부족한 供給實態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교시설에서도 계단과 便宜增進要員에 대한 필요도가 매우 크다.

〈表 4-92〉 道路의 便宜施設 設置狀態 및 改善 必要度

(단위: 명)

	대체로 설치	매우 필요	순위
노면상태	64	282	3
경사로	50	289	2
유효폭	95	70	7
점자블럭	4	25	4
턱낮추기	69	276	6
음향신호기	7	31	8
도로침매설	0	11	9
신호길이	20	414	1
육교/지하도	2	198	5

註: 기타 및 무응답 제외

지금까지 본 조사에 포함되어 있고 주로 大型의 公共施設을 제외한 近隣公共 및 生活施設에서의 편의시설의 供給不足 狀態는 대상시설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계단 등 어느 대상 시설에서나 접

하는 편의시설에서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편의시설의 改善에 의한 편의증진이 限界가 적지 않아 便宜増進要員의 직접적 도움을 크게 선호하는 장애인이 매우 많음을 볼 수 있었다.

2. 公共業務, 文化/餘暇 및 販賣施設의 便宜施設 供給不足 狀態

전국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여 供給實態가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업무 및 문화여가·판매시설의 供給不足狀態를 보면 제3장 1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형시설에는 편의시설이 50% 이상 설치되어 있으나 근린시설, 학교, 공원, 교통기관 터미널 등 장애인 利用度가 큰 대상시설에는 40% 이하의 設置比率이 많았다.

따라서 公共業務施設에서도 본 조사에서 必要性이 매우 큰 편의시설로 조사된 계단, 화장실, 승강기/리프트, 주차구역, 판매기 및 매표소 등의 편의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 설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視覺 및 聽覺障礙人을 위한 유도블럭, 안내표시판, 유도신호장치, 음향신호기 등은 전국적 설치비율이 낮아 본 조사에서 개선 필요성이 매우 크게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公共業務施設 및 社會福祉施設에서는 障礙人 活動의 便宜増進을 위해서 시설보다는 편의증진요원의 지원이 가장 크게 선호되고 있어, 편의증진을 위해 물적서비스 이외에 인적서비스가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近隣公衆利用施設에서와 같이 계단, 화장실에서 매우 높은 改善 欲求를 보이고 있다. 경사로, 단차제거, 승강기/리프트, 주차구역에 대해서도 높은 개선욕구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여가·판매시설에서는 제 1위로 필요성이 높은 편의시설은 화장실이지만 계단의 개선 및 편의증진요원의 필요성도 높은 順位로 나타났다.

따라서 近隣公衆利用施設 이외의 公共 및 文化餘暇·販賣施設에서도 계단, 편의증진요원, 화장실, 단차제거 등에서 供給不足을 크게 보이고 있어 조사된 근린공중이용시설에서 공급이 크게 부족한 편의시설의 유형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상시설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개선 필요성의 비율에서 파악된 供給不足 實態를 기초로 한 편의증진 우선순위의 결과와 調査對象者가 응답한 개선 우선순위를 비교할 때도 같은 重要度の 順位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4-93〉 公共 및 文化·餘暇·販賣施設の 便宜施設 改善必要 與否
(단위: 명)

구 분	공공업무· 근린공공시설	사회복지 시설	문화·여가· 판매시설	계	순위
주출입구 접근로	54	9	90	153	10
주차구역	97	12	102	214	7
단차제거	124	17	124	265	5
출입구(문)	123	0	60	183	8
복도	85	16	52	153	10
계단	220	38	166	424	2
경사로	134	24	109	267	4
화장실	192	23	197	412	3
매표소·계산대·진열대	73	-	51	124	11
승강기/리프트	147	-	80	227	6
전용창구	121	-	-	121	12
공중전화	58	17	85	160	9
편의증진요원	310	50	172	532	1
점자표지판	35	12	23	70	13
점자블럭	36	11	21	58	15
비상·경보 등	27	3	23	53	16
청각용FAX·증폭전화기	34	5	30	69	14
총응답수	575	110	491	1,176	

註: 점자표지판, 점자블럭, 비상·경보등, 청각장애용 FAX 및 증폭전화기 등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므로 응답수는 9~55명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 총응답수와 각 편의시설 응답수 합계의 차이는 기타에의 응답이거나 무응답임.

3. 便宜施設 改善 優先順位

公衆利用施設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총체적 欲求順位는 대상시설의 廣範圍로 인해 응답이 매우 부정확할 것으로 보여 직접 조사대상자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대상시설별로 조사한 편의시설 改善의 優先順位를 비교·집계하여 전체적인 편의시설 개선욕구 순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대상시설 유형별로 편의시설 개선 우선순위는 편의시설의 設置實態 및 必要度の 차이인 공급부족 정도와 궤를 같이 하여야 하고 조사결과에서도 대체로 그러한 結論을 유도할 수 있었다. 〈表 4-9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조사 대상시설에서 가장 공급이 부족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계단이고, 다음이 편의증진요원, 화장실, 단차제거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제1순위 및 2순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입구 혹은 문, 주차구역,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도 다른 시설에 비해 제 1순위로 현저한 개선욕구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사로는 제 2순위에서도 높은 改善順位를 보이고 있다.

對象施設 類型別로는 近隣生活施設, 宗教·福祉施設, 文化餘暇施設, 住宅 및 工場에서는 모두 계단이 1순위로 그리고 편의증진요원 혹은 주차구역 혹은 화장실 혹은 단차제거가 제 2순위로, 공공시설 및 병의원에서는 편의증진요원과 계단의 순위로, 교통에서는 장애인지정석, 계단, 출입구(문)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대상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장 선호되는 편의시설의 改善은 계단이며, 다음으로 인적 서비스지원인 편의증진요원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대상시설의 성격에 따라 화장실, 단차제거, 출입구(문), 주차구역 등이 選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4-94〉 障碍人 便宜施設의 對象施設別 優先順位 分布(第1順位)¹⁾
(단위: 명, 순위)

구 분	교통 ²⁾	사업장	주거시설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복지시설	병·의원	문화·여가시설	학교	계	순위
주출입구접근로	28	2	15	6	87	15	15	7	1	176	11
주차구역	23	18	20	45	122	13	23	68	0	332	6
단차제거	44	9	23	16	216	13	13	32	1	366	4
출입구, 문	116	7	20	11	161	4	15	12	0	346	5
복도	17	2	38	7	109	8	16	5	1	203	10
계단	117	24	82	69	325	87	95	70	2	871	1
화장실	29	17	49	31	127	31	23	63	0	370	3
판매, 접수대 등	- ³⁾	1	-	11	63	-	32	9	1	126	15
승강기·리프트	40	9	13	27	62	-	80	18	2	250	9
개찰구	2	-	-	-	9	-	-	-	-	11	22
경사로	-	5	41	14	172	36	11	28	0	307	7
편의증진요원	98	5	-	97	105	50	113	57	0	525	2
장애인지정석	237	-	-	-	7	10	-	-	-	254	8
보장구보관소	3	-	-	-	-	-	-	-	-	3	23
음성안내	26	-	-	-	-	-	-	-	-	26	21
전용창구	-	-	-	104	-	-	-	-	-	104	16
공중전화	-	0	-	1	9	3	12	16	-	41	19
점자표지판	89	2	-	11	24	4	6	8	0	144	14
점자블럭	4	4	12	3	31	10	5	6	1	76	17
비상경보	13	2	17	3	115	6	10	7	2	175	12
화장실식별램프	2	1	-	0	18	1	1	3	2	28	20
자막안내	35	-	-	20	24	21	26	23	1	150	13
청각장애용FAX	13	6	11	7	16	6	5	7	2	73	18
총응답수	606	182	591	560	2,416	413	805	780	21	6,374	

註: 1) 교통은 지하철/철도역사, 버스터미널, 지하철/전철, 버스/택시, 공공시설은 시·군·구청 및 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약국, 이·미용실, 은행, 시장, 공중목욕탕, 식당/커피숍을 각각 포함하며, 병·의원은 종합병원 및 일반 병의원, 문화·여가시설은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운동시설, 공원/유원지, 동물원/식물원,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포함함. 총응답수와 각 편의시설 응답수의 합계 차이는 기타에의 응답이거나 무응답임.

2) 교통에서 응답수는 지하철/철도역사와 버스터미널에 대한 응답수 606명임. 그러나 출입구, 승강기/리프트, 자막안내, 편의증진요원은 지하철 및 버스/택시에 대한 조사대상을 포함한 1,207명이었으나 비교를 위해 606명 수준으로 축소된 비율을 적용하여 응답수를 재조정하였음.

3) ‘-’은 각 대상시설의 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편의시설을 의미함.

〈表 4-95〉 障礙人 便宜施設의 對象施設別 優先順位 分布(第2順位)
(단위: 명, 순위)

구 분	교통 ¹⁾	사업 장	주거 시설	공공 시설	근린 생활 시설	종교· 복지 시설	병· 의원	문화 여가 시설	학교	계	순 위
주출입구 접근로	10	3	15	6	46	6	10	11	0	107	13
주차구역	23	9	8	12	46	8	21	22	0	149	9
단차제거	63	5	40	26	98	28	23	51	1	335	4
출입구(문)	98	7	15	15	71	13	22	10	0	195	8
복도	40	4	38	15	86	19	25	5	1	233	7
계단	64	16	45	58	137	46	65	44	2	475	1
화장실	38	12	72	49	102	35	42	66	0	416	3
판매·접수대 등	5	1	-	10	34	-	31	15	0	106	14
승강기·리프트	96	7	6	37	80	-	58	26	2	267	6
개찰구	4	-	-	-	-	-	-	-	-	4	23
경사로	-	7	39	19	166	27	35	29	-	322	5
편의증진요원	103	6	-	78	97	29	113	33	0	459	2
장애인지정석	115	-	-	-	10	11	-	-	-	136	10
보장구보관소	10	-	-	-	-	-	-	-	-	10	22
음성안내	14	-	-	-	-	-	-	-	-	14	21
전용창구	-	-	-	19	-	-	-	-	-	19	20
공중전화	-	5	-	4	24	6	7	12	-	58	18
점자표지판	16	4	-	4	24	11	6	-	0	65	16
점자블럭	8	0	5	8	26	8	5	0	1	61	17
비상경보	10	1	16	9	31	7	10	2	2	88	15
화장실식별램프	18	1	53	0	27	8	1	1	1	110	12
자막안내	13	-	-	9	10	5	26	0	0	57	19
청각장애인용FAX	14	1	16	12	5	6	5	3	1	130	11
총응답수	514	181	591	560	2,416	413	805	780	21	6,171	

註: 1) 교통에서 응답수는 지하철/철도역사와 버스터미널에 대한 제 2순위 응답수 514명임. 그러나 출입구, 승강기/리프트, 자막안내, 편의증진요원은 지하철 및 버스/택시에 대한 조사대상을 포함한 966명이었으나 비교를 위해 514명 수준으로 축소된 비율을 적용하여 응답수를 재조정하였음.

편의시설 유형의 특성상 對象施設 類型이 獨立的인 性格을 갖고 있는 도로의 편의시설 優先順位는 횡단보도의 신호길이, 턱낮추기, 노면 상태, 경사로, 보도유도폭 등에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2순위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신호길이, 턱낮추기, 노면상태 및 경사로의 개선욕구는 매우 크다. 視 覺 障 碍 人 의 도로 편의시설은 기초시설인 점자블럭 보다 음향신호기에서 더 큰 욕구를 보였다.

4. 便 宜 施 設 改 善 에 대 한 選 好 의 程 度 分 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단순한 순위는 위의 分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선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단순한 順位에 의해 알 수 없다. 따라서 편의시설간의 選 好 의 格 差 를 보기 위하여 각 대상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시설 改 善 欲 求 를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表 4-94>의 각 대상시설 유형별 응답수에 제 3절의 <表 4-16>의 편의시설이 가장 필요한 대상시설의 제1순위 비율을 곱하여 加重된 응답수를 구하여 보았다.

<表 4-96> 便 宜 施 設 이 가 장 必 要 한 對 象 施 設 의 程 度

(단위: %)

계	사업장	공공 시설	근린생활 시설	종교· 복지시설	병·의원	문화· 여가시설	학교
100.0	7.2	3.7	36.4	16.6	24.0	9.5	2.3

註: <表 4-16>의 재구성임.

가중된 選 好 程 度 와 順位는 대상시설 選 好 調 査 에 포함되지 않은 交通 및 住宅을 제외하였다. <表 4-97>에서와 같이 <表 4-94>에서 단순히 교통 및 주택을 제외하였을 때 優 先 順位는 계단과 편의증진요원의 순위는 변화가 없고, 4위의 단차제거가 3위로, 3위의 화장실이 4위로 내려갔으며, 주차구역, 출입구, 경사로 등에서 순위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上位의 選 好 集團에는 변화가 없을 뿐아니라, 下 位의 選 好 集團에서도 교통의 주요 선호 편의시설인 장애인지정석을 제외하면 순위의 방향에 큰 차이가 없다.

〈表 4-97〉 障礙人 便宜施設の 對象施設類型別 選好程度 및 順位
(단위: 명, 순위)

구 분	사업 장	공공 시설	근린 생활 시설	종교· 복지 시설	병· 의원	문화 여가 시설	학교	가중된계		원자료계		표의 순위 ¹⁾
								계	순위	계	순위	
주출입구접근로	0	0	32	2	4	1	0	39	11	133	11	11
주차구역	1	2	44	2	6	6	0	58	7	289	5	6
단차제거	0	1	79	2	3	3	0	88	2	299	3	4
출입구(문)	0	0	59	1	4	1	0	65	5	210	7	5
복도	0	0	40	1	4	0	0	45	9	148	9	11
계단	2	3	118	14	23	7	0	167	1	672	1	1
화장실	1	1	46	5	6	6	0	65	5	292	4	3
판매, 접수대 등	0	0	23	-	8	1	0	32	12	117	12	15
승강기/리프트	0	1	23	-	19	2	0	44	10	197	8	9
경사로	0	1	63	6	3	3	0	76	4	266	6	7
청각장애용FAX	0	0	6	1	1	1	0	9	17	49	17	18
편의증진요원	0	4	38	8	27	5	0	83	3	427	2	2
장애인지정석	-	-	3	2	-	-	-	5	19	17	20	8
전용창구	-	4	-	-	-	-	-	4	20	104	14	16
공중전화	0	0	3	0	3	2	-	11	16	41	18	19
점자표지판	0	0	9	1	1	1	0	12	15	55	16	14
점자블럭	0	0	11	2	1	1	0	15	14	60	15	17
비상경보	0	0	42	1	2	1	0	46	8	145	10	12
화장실식별램프	0	0	7	0	0	0	0	7	18	26	19	20
자막안내	-	1	9	3	6	2	0	21	13	115	13	13
총응답수	13	21	879	69	193	74	0	1,249		5,177		

註: 1) 위 순위는 교통·주택의 편의시설에 대한 선호수를 포함하였을 때의 순위임.

그러나 對象施設에 대한 欲求의 程度(加重值)를 반영한 순위에서는 계단의 제1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제2위는 편의증진에서 단차제거로 바뀌었고 편의증진요원이 제3위로 선호되었다. 4위는 6위이던 경사가 올라오고 5위는 화장실 및 출입구가 비슷한 순위로 남아있다. 선호의 정도에서는 계단의 개선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커서 2위 및 3위인 단차제거 및 편의증진요원의 지원 선호도의 두배에 이르며, 이하의 선호도는 큰 차이 없이 순위가 정해지고 있다. 選好의 程度는

각 편의시설 응답수의 합계에 각 시설의 수를 나누어 百分比로 환산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便宜施設 供給定策 強度 및 便宜施設 設置基金의 시설별 投資水準의 결정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便宜施設 擴充을 위한 支援方案

편의시설 설치실태, 욕구 및 우선순위에 대한 選好度を 바탕으로 便宜施設 擴充을 위한 方案에 대한 선호의 순위를 볼 수 있다. 아래 표에 의하면 제1순위로는 장애인 住宅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資金 融資 및 支援이 절대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제1순위의 2위는 전용시설제도 도입이나 제2순위의 응답에서는 便宜增進要員의 配置가 현저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제2위의 政策的 優先順位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제3위로도 역시 제3순위의 응답에서 절대적 선호를 보이고 있는 장애인 전용 혹은 지정시설(슈퍼마켓, 병의원, 약국 등)을 선택하여 政策的 順位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表 4-98〉 便宜施設擴充을 위한 支援方案의 選好度 比較
(단위: 명, %)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비해당	0.5	0.6	0.7
건물주 융자세제지원	17.8	13.6	9.8
주택개조자금 융자	40.5	27.8	11.2
편의증진요원	12.6	29.3	18.9
홍보 및 교육	6.7	0.2	0.2
전용시설(슈퍼·약국등)	21.9	10.2	27.1
기타	0.0	18.3	32.0
계	585	529	428

6. 障礙類型別 對象施設 및 便宜施設 利用實態 및 欲求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의 욕구에 대한 類型別 差異를 보기 위하여 障礙類型을 肢體障礙, 視覺障礙, 聽覺障礙, 言語障礙로 나누었다. 편의시설에 대한 需要는 이용하는 대상시설, 거주지역, 소득수준, 연령, 주거지 유형(아파트지역 등) 이외에도 障礙類型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들의 活動類型 및 對象施設을 보기 위하여 外出의 目的을 보면 모든 유형의 장애인은 주로 일상활동을 위해 외출하고 있다. 그러나 視覺障礙人은 문화여가활동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출을 하고 있고, 聽覺障礙人은 종교활동을 위해 외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4-99〉 障礙類型別 調査障礙人의 學校 및 職場 以外 外出目的
(단위: %)

구분	계	사교/ 단체활동	문화/ 여가/ 체육	봉사 활동	일상 활동	직업/ 교육	의료/ 보건	종교 활동	기타
지체장애	469	4.7	5.1	1.1	65.0	9.8	3.8	10.2	0.2
시각장애	58	3.4	12.1	0.0	67.2	5.2	1.7	8.6	0.0
청각장애	58	3.4	6.9	0.0	65.5	8.6	0.0	15.5	0.0
언어장애	4	0.0	0.0	0.0	75.0	25.0	0.0	0.0	0.0
전체	589	4.4	5.9	0.8	65.4	9.3	3.2	10.5	0.2

便宜施設에 대한 障礙類型別 評價를 보면 대체로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聽覺障礙人의 부족 응답비율도 74.9%이어서 가장 높은 불만도 비율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肢體障礙人의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도가 상대적으로 적다(表 4-100 참조).

〈表 4-100〉 障碍類型別 障碍人の 便宜施設에 대한 滿足狀態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전시 효과뿐	일부시설 도움	비교적 잘됨	기타
지체장애	70.1	21.6	6.2	1.7	0.0
시각장애	72.4	20.7	6.9	0.0	0.0
청각장애	74.6	20.3	3.4	0.0	1.7
언어장애	50.0	50.0	0.0	0.0	0.0
전 체	70.6	21.6	5.9	1.4	0.2

〈表 4-101〉 障碍類型別 便宜施設이 잘 設置된 對象施設의 選好度 比較

(단위: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전체
슈퍼마켓	0.9	0.0	2.0	0.0	0.9
은행	9.5	7.8	16.3	25.0	10.1
약국	0.7	2.0	2.0	0.0	0.9
시장	0.5	0.0	0.0	0.0	0.5
이미용실	0.2	0.0	0.0	0.0	0.2
공중목욕탕	0.0	0.0	0.0	0.0	0.0
식당·커피숍	0.7	2.0	0.0	0.0	0.7
종교시설	8.6	11.8	6.1	0.0	8.6
사회복지시설	11.1	9.8	12.2	0.0	11.0
병·의원	27.4	17.6	24.5	25.0	26.2
시군구청	8.1	11.8	6.1	0.0	8.2
동사무소	18.8	25.5	14.3	25.0	19.0
공원·유원지	3.4	0.0	0.0	0.0	2.7
호텔콘도여관	0.5	2.0	0.0	0.0	0.5
백화점	8.4	5.9	12.2	25.0	8.6
운동시설	0.0	0.0	0.0	0.0	0.0
박물관·미술관	0.0	0.0	0.0	0.0	0.0
극장	0.2	0.0	0.0	0.0	0.2
학교	0.5	2.0	4.1	0.0	0.9
사업장	0.2	2.0	0.0	0.0	0.4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장애유형별 평가는 전체적인 評價와 方向을 같이 하고 있어, 병의원, 동사무소 등 근린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은행 등의 순위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유형별로는 肢體障礙는 병의원, 동사무소, 시각장애인은 동사무소 및 종교시설, 聽覺障礙人은 병의원, 은행, 동사무소, 백화점, 그리고 학교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편의시설이 잘된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表 4-102〉 障礙類型別 便宜施設 設置가 必要한 對象施設의 選好度 比較

(단위: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전체
슈퍼마켓	14.7	14.0	14.5	0.0	14.5
은행	4.0	7.0	3.6	0.0	4.2
약국	2.0	5.3	1.8	25.0	2.5
시장	4.6	8.8	1.8	0.0	4.7
이미용실	4.4	5.3	0.0	0.0	4.0
공중목욕탕	3.3	5.3	7.3	0.0	3.9
식당·커피숍	3.1	1.8	0.0	0.0	2.6
종교시설	7.7	10.5	12.7	0.0	8.4
사회복지시설	7.9	10.5	9.1	0.0	8.2
병·의원	25.1	17.5	21.8	25.0	24.0
시군구청	1.5	1.8	0.0	0.0	2.3
동사무소	2.4	1.8	1.8	0.0	2.3
공원·유원지	6.2	3.5	14.5	0.0	6.7
호텔콘도여관	0.2	1.8	0.0	0.0	0.4
백화점	0.0	0.0	1.8	0.0	0.2
운동시설	1.1	3.5	0.0	0.0	1.2
박물관·미술관	0.4	0.0	0.0	25.0	0.5
극장	0.7	0.0	0.0	0.0	0.5
학교	2.2	0.0	5.5	0.0	2.3
사업장	8.1	1.8	3.6	25.0	7.2

便宜施設이 가장 필요한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病醫院을 필두로 슈퍼마켓, 종교 및 복지시설의 순위로 이어지는 것은 장애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肢體障礙人은 사업장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였고, 視覺障礙人은 병원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대신 은행 및 시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聽覺障礙人은 종교시설, 공원/유원지, 학교 등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肢體障礙人보다는 視覺 및 聽覺障礙人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편의증진이 필요한 대상시설에서 장애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便宜施設 擴充을 위한 支援 方案에 있어서는 장애인 거주주택의 편의시설설치 및 개조를 위한 자금융자 및 지원, 대상건물 및 시설주에 대한 융자 및 조세감면,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의 近隣施設에 대해서는 專用 혹은 指定施設制度의 導入 등의 순서로 선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애유형별로는 視覺障礙人은 자신의 주택개조자금 융자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聽覺障礙人은 이에 대한 선호도는 보다 작고 건물주 융자 및 편의증진요원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크다.

〈表 4-103〉 障礙類型別 便宜施設擴充 支援方案의 選好度 比較

(단위: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전체
건물주 자금융자·감세	17.1	15.8	26.8	0.0	17.8
장애인주택자금 융자·지원	41.2	43.9	30.4	50.0	40.5
편의증진요원배치	11.5	14.0	19.6	25.0	12.6
홍보·교육	0.0	0.0	0.0	0.0	0.0
장애인전용시설 도입	7.3	7.0	1.8	0.0	6.7
기타	22.2	19.3	21.4	25.0	21.9

7. 地域別 對象施設의 便宜施設 利用實態 및 欲求

가. 大都市, 中小都市 및 道地域

조사대상 지역인 大都市인 서울과 中小都市인 군산지역 사이에서는 장애인들의 外出形態나 頻度, 大衆交通 利用形態 및 支援方法 選好順位, 便宜施設設置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設置狀態 및 必要度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大衆交通과 對象施設의 편의시설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의 차이로 몇몇의 주요한 차이가 발견되나 기본적으로는 같은 방향의 選好度를 보였다.

〈表 4-104〉 地域間 便宜施設 設置 必要 對象施設의 比較

(단위: %)

	서울	군산	계
슈퍼마켓	16.2	11.2	14.5
은행	5.5	1.6	4.2
약국	2.9	1.6	2.5
시장	5.5	3.2	4.7
이미용실	3.4	5.3	4.0
공중목욕탕	3.7	4.3	3.9
식당·커피숍	2.1	3.7	2.6
종교시설	7.0	11.2	8.4
사회복지시설	7.6	9.6	8.2
병·의원	23.0	26.1	24.0
시군구청	1.6	1.1	1.4
동사무소	3.1	0.5	2.3
공원·유원지	6.5	6.9	6.7
호텔콘도여관	0.3	0.5	0.4
백화점	0.3	0.0	0.2
운동시설	1.0	1.6	1.2
박물관·미술관	0.8	0.0	0.5
극장	0.0	1.6	0.5
학교	2.9	1.1	2.3
사업장	6.3	9.0	7.2

對象施設의 이용빈도에 있어서는 보면 이·미용실을 제외하면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利用하는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이 잘 된 시설도 양 지역 모두 病院이고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장 필요한 대상도 병의원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는 동사무소, 백화점 혹은 복지시설, 은행 혹은 시·군·구청의 순위로 地域間의 差異가 없다.

便宜施設의 設置가 가장 필요한 대상시설에서도 地域에 관계없이 병의원, 슈퍼마켓,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공원/유원지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병의원에 대한 必要 程度는 어느 지역에서나 2위인 슈퍼마켓 비율의 2배에 가깝고, 슈퍼마켓은 그 이하의 대상시설에 대한 비율의 거의 2배에 가까운 필요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1순위에서 必要도가 6위 이하의 대상시설에서는 지역간에 차이가 있어 서울에서는 은행, 시장, 공중목욕탕, 군산에서는 이·미용실, 공중목욕탕, 식당/커피숍의 순위로 필요도가 높았다.

대상시설을 訪問 혹은 外出하는데 이용하는 主要 交通手段에서는 이용행태 및 선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 지역 모두 버스(서울 33.7% 군산 32.0%)가 주요 交通手段이나 다음 순위에서 서울은 지하철(21.8%) 군산은 승용차(23.5%)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제3위가 서울은 도보(14.7%)이나 군산은 택시(19.0%)인 것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군산 장애인의 택시 이용율은 서울(10.6%) 보다도 높다.

대중교통 便宜增進을 위한 方法에서도 지역간에 차이가 있다. 서울과 군산은 대중교통의 편의증진을 위해 버스 및 택시 교통비지원을 가장 선호하지만, 다음의 선호방법으로 서울은 지하철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전용버스의 운영을 선호하는데 비해, 군산에서는 전용버스에 이어 전용택시의 운영, 차량구입융자 확대를 보다 선호하고 있어 양 지역의 交通利用行態의 差異를 반영하고 있다.

〈表 4-105〉 地域別 大衆交通 便宜増進方案 選好度の 比較

(단위: %)

구 분	서울	군산	계
지하철승강기/에스컬레이터	23.7	3.5	16.9
전용버스운영	20.4	23.0	21.3
전용택시운영	8.4	15.5	10.8
교통비(버스, 택시)지원	25.0	27.5	25.8
차량구입융자확대	7.7	15.5	10.3
오토바이구입/이용지원	1.5	2.5	1.9
자막안내방송설치	4.8	4.5	4.7
정차호출램프설치	1.0	0.5	0.8
편의증진요원배치	6.4	6.5	6.4
기타	0.8	1.0	0.8

전체적으로 便宜施設 擴充을 위한 支援方案에 있어서는 장애인 거주주택의 편의시설설치 및 개조를 위한 資金融資 및 支援이 가장 크게 선호되고 있으나 다음이 편의시설설치 對象建物 및 施設主에 대한 融資 및 租稅減免이나 선호정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表 4-106〉 地域別 便宜施設擴充 支援方案의 選好度 比較

(단위: %)

구 분	서울	군산	계
건물주 자금·융자감세	15.9	21.6	17.8
주택자금융자·지원	41.4	38.7	40.5
편의증진요원배치	13.0	11.9	12.6
홍보·교육	0.0	0.0	0.0
장애인전용시설 도입	6.6	6.7	6.6
기타	22.3	21.1	21.9

즉, 서울에서 보다는 군산에서 건물주에 대한 자금융자 및 지원의 선호도가 크고 장애인주택 지원 및 편의증진요원의 배치는 서울에서 더 選好를 보이고 있다. 이는 월소득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비율이 군산(40.2%)보다 서울(49.9%)이 크고 住宅狀態도 더 양호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군산은 조사대상 대부분이 아파트지역에 거주하였고, 서울은 봉천동 및 신림동의 零細民密集地域을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便宜施設基金 利用方法에 있어서도 주택개조를 위한 용자를 선호하는 비율은 군산(42.0%)보다 서울(47.2%)이 크고, 반면 건물주에 대한 용자의 선호비율은 서울(1.3%)보다는 군산(12.4%)이 크게 나타났다.

나. 아파트地域과 非아파트地域의 比較

外出目的은 아파트지역이나 비아파트지역이나 거의 비슷하고, 外出의 頻度도 아파트지역의 장애인이 공중목욕탕을 덜 이용한다는 것 이외에는 대상시설별로 거의 같은 順位와 利用頻度を 보이고 있다. 그리고 便宜施設이 잘 된 대상시설에 대한 평가에서도 각 지역의 장애인들은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병의원, 동사무소, 복지시설 및 종교시설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便宜施設 設置가 가장 必要한 對象施設에서도 주거지역 유형에 관계없이 대체로 병·의원, 슈퍼마켓,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공원/유원지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便宜施設 擴充을 위한 支援方案에 있어서는 양 지역에서 장애인 거주주택의 편의시설 設置 및 改造를 위한 자금용자 및 지원이 가장 크게 선호되고 있으나 제2순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 보다는 군산에서 건물주에 대한 자금용자 및 지원의 선호도가 크고, 장애인주택 지원 및 편의증진요원의 배치는 서울에서 더 큰 選好를 보이고 있다.

8. 所得階層 및 年齡別 便宜施設 利用實態 및 欲求

가. 所得階層別 對象施設 및 便宜施設 欲求의 差異

소득계층별로 便宜施設 欲求의 差異는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이

용 대상시설이 달라짐으로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家口所得 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주요 外出目的은 일상생활의 영위에 있음은 다른 소득계층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계층에 비해 종교활동, 문화·여가활동(공원/유원지 방문), 의료·보건활동을 위한 외출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職業教育을 위한 外出活動은 현저히 낮다. 그러나 차상위 소득층인 가구소득 50~150만원 대의 장애인의 주요 외출목적의 하나는 職業/教育으로 조사되고 있다. 家口所得이 200만원 이상인 장애인들은 文化·餘暇活動을 위한 외출이 현저히 많으며 직업/교육을 위한 활동도 마찬가지로 높은 편이다.

〈表 4-107〉 所得階層別 調査障碍人の 學校 및 職場 以外の 外出目的
(단위: %)

	50만원 미만	50~ 99만원	100~ 149만원	150~ 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 체
사교단체활동	4.2	4.7	5.4	3.7	0.0	4.4
문화·여가·체육	6.4	4.7	6.5	3.7	8.3	5.8
봉사활동	0.8	1.2	1.1	0.0	0.0	0.9
일상활동	66.8	63.2	64.1	70.4	58.3	65.1
직업·교육활동	5.3	12.3	13.0	11.1	25.0	9.3
의료·보건활동	3.8	3.5	2.2	3.7	0.0	3.3
종교활동	12.5	10.5	7.6	7.4	8.3	10.7
기타	0.4	0.0	0.0	0.0	0.0	0.2

소득계층별로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設置狀態에 대한 評價도 병의원, 동사무소 등의 근린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은행 등의 순위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지만, 評價의 程度에는 차이가 있어 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병의원 및 사회복지시설이 잘 된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편의시설 개선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도 지적하였다. 低所得層이 개선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대상시설은 병·의원, 슈퍼마켓, 사회

복지시설, 은행, 종교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中上位 階層에서는 백화점과 같은 문화·여가·판매시설의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히 크며, 편의시설의 필요도에서도 사업장, 학교, 공원·유원지, 이·미용실, 식당 등에 대한 必要性을 선호하는 比率이 상대적으로 크다.

〈表 4-108〉 所得階層別 便宜施設 設置가 必要한 對象施設 比較
(단위: %)

	50만원 미만	50~ 99만원	100~ 149만원	150~ 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슈퍼마켓	18.0	10.7	11.4	22.2	0.0	14.5
은행	4.3	6.0	4.2	8.3	0.0	4.4
약국	1.6	2.4	5.7	3.7	0.0	2.5
시장	3.9	5.4	3.4	7.4	0.0	4.5
이미용실	3.5	3.6	6.8	3.7	8.3	4.2
공중목욕탕	2.4	4.8	3.3	7.4	16.7	3.6
식당·커피숍	1.2	3.6	4.5	0.0	8.3	2.5
종교시설	7.1	10.7	9.1	11.1	0.0	8.5
사회복지시설	10.2	7.1	5.7	0.0	0.0	7.8
병·의원	28.2	23.2	18.2	14.8	25.0	24.3
시군구청	0.8	1.2	4.5	0.0	0.0	1.5
동사무소	3.1	1.2	2.3	0.0	0.0	2.2
공원·유원지	5.9	6.5	8.0	7.4	8.3	6.5
호텔·콘도·여관	0.0	1.2	0.0	0.0	0.0	0.4
백화점	0.0	0.6	0.0	0.0	0.0	0.2
운동시설	0.4	2.4	2.3	0.0	0.0	1.3
박물관·미술관	0.8	0.0	0.0	3.7	0.0	0.5
극장	0.4	0.6	1.1	0.0	0.0	0.5
학교	2.0	2.4	1.1	3.7	8.3	2.2
사업장	5.5	6.5	12.5	7.4	25.0	7.4

따라서 便宜施設의 必要性이 큰 대상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므로, 所得階層別로 전체적인 대상시설 편의증진의 優先順位인 병의원, 슈퍼마켓, 종교·복지시설, 사업장, 공원/유원지, 시장, 은행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에 우선순위를 둘 뿐 아니라, 階層別 特性에 맞게 저소득층 및 이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병원, 슈퍼마켓, 사회복지시설, 은행, 종교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중상위 계층 및 이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는 사업장, 학교, 공원/유원지, 이·미용실, 식당 등을 편의시설 설치에 比重을 두는 政策이 요구된다.

전체적으로 便宜增進을 위한 方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장애인 거주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조를 위한 資金融資 및 支援이 가장 크게 선호되고 있고 다음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 및 시설주에 대한 融資 및 租稅減免이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所得階層別로는 큰 차이를 보여,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선택에서 150~199만원 대의 계층을 제외하면 低所得層은 편의증진요원 배치 그리고 홍보 및 교육을 더 선호하고 중상위소득층은 거주주택의 개조 지원 및 건물주에의 용자를 더 선호하는 대조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소득계층별 便宜增進政策에 차이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表 4-109〉 所得階層別 便宜施設擴充을 위한 支援方案의 選好度比較
(단위: %)

	50만원 미만	50~ 99만원	100~ 149만원	150~ 199만원	200만원 이상	전체
건물주 자금융자·감세	9.9	18.3	33.0	21.4	33.3	17.2
장애인 주택자금융자·지원	41.2	44.4	28.6	53.6	41.7	40.9
편의증진요원배치	16.8	10.7	11.0	3.6	0.0	13.0
홍보·교육	16.8	10.7	11.0	3.6	0.0	13.0
장애인 전용시설 도입	4.6	7.1	9.9	10.7	8.3	6.6
기타	26.7	19.5	16.5	10.7	16.7	21.8

나. 年齡階層別 對象 및 便宜施設 欲求의 差異

老人을 60세 이상으로 정의할 때, 노인들은 주로 日常生活 때문에 外出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餘暇를 위한 外出은 그 이하의 연령계층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직업·교육을 위한 외출은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満足度의 비교에서도 노인계층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비율이 더욱 커 장애인 중에서도 障碍老人을 위한 便宜施設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評價할 수 있다.

〈表 4-110〉 年 齡 別 障 碍 人 의 學 校 및 職 場 以 外 의 外 出 目 的
(단위: %)

	60세 미만	60세 이상	전 체
계	484	105	589
사교·단체활동	5.0	1.9	4.4
문화·여가·체육활동	5.2	9.5	5.9
봉사활동	0.8	1.0	0.8
일상활동	64.5	69.5	65.4
직업·교육활동	10.5	3.8	9.3
의료·보건활동	3.1	3.8	3.2
종교활동	10.5	10.5	10.5
기 타	0.2	0.0	0.2

〈表 4-111〉 年 齡 別 障 碍 人 의 便 宜 施 設 에 대 한 滿 足 狀 態
(단위: %)

	60세 미만	60세 이상	전 체
매우 부족	69.5	76.0	70.6
전시효과뿐	22.9	15.4	21.6
일부시설 도움	6.2	4.8	5.9
비교적 잘됨	0.8	3.8	1.4
기 타	0.6	0.0	0.5

便宜増進이 필요한 대상시설로는 老人階層은 병의원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제1순위로 必要度를 지적하고 있고, 특히 동사무소, 보건소 등 근린공공시설, 공중목욕탕, 슈퍼마켓, 시장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에 반해 60세 미만의 계층에서는 사업장, 은행, 식당, 복지시설, 학교의 편의시설 등에 대해 便宜増進 必要의 비율이

더 높았다.

〈表 4-112〉 年齡別 便宜施設 設置가 必要한 對象施設 評價 比較
(단위: %)

	60세 미만	60세 이상	전 체
슈퍼마켓	14.1	16.5	14.5
은행	4.4	3.1	4.2
약국	2.3	3.1	2.5
시장	4.2	7.2	4.7
이미용실	3.8	5.2	4.0
공중목욕탕	3.4	6.2	3.9
식당커피숍	3.0	1.0	2.6
종교시설	8.4	8.2	8.4
사회복지시설	8.6	6.2	8.2
병·의원	23.8	24.7	24.0
시군구청	1.5	1.0	1.4
동사무소	1.3	7.2	2.3
공원·유원지	6.5	7.2	6.7
호텔·콘도·여관	0.4	0.0	0.4
백화점	0.2	0.0	0.2
운동시설	1.5	0.0	1.2
박물관·미술관	0.6	0.0	0.5
극장	0.4	1.0	0.5
학교	2.7	0.0	2.3
사업장	8.2	2.1	7.2

편의증진을 위한 支援方案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장애인 거주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조를 위한 資金融資 및 支援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건물 및 시설주에 대한 融資 및 租稅減免의 순위이지만,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어 제2위의 選好方案은 노인계층의 경우 편의증진 요원 배치이고, 60세 미만에서는 건물주 용자로 조사되었다. 專用 혹은 指定施設制度의 導入에 있어서도 非老人階層의 선호도가 더 크다.

지금까지의 分析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의 優先順位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소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評價 및 選好度에 있어서

장애유형, 거주지역 및 주거유형, 연령,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음을 보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 및 계층별 대상시설의 차이는 편의시설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優先順位에 기초한 무차별적 공급보다는 特性 및 階層別 差異를 고려한 便宜增進 政策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적 요인이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의 選好度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하여는 計量的 分析이 요구될 것이다.¹⁷⁾

〈表 4-113〉 年齡別 便宜施設擴充을 위한 支援方案의 選好度 比較
(단위: %)

구 분	60세 미만	60세 이상	전 체
건물주 자금융자·감세	20.5	4.9	17.8
장애인주택자금융자·지원	39.3	46.1	40.5
편의증진요원배치	12.0	15.7	12.6
홍보·교육	0.0	0.0	0.0
장애인전용시설 도입	7.2	3.9	6.7
기타	20.3	29.4	21.9

17) 대상 및 편의시설 욕구의 결정 요인분석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대상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수요

대상시설 1순위 선택여부 $\text{probit} = F(\text{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연령계층, 거주지역(서울 및 군산, 아파트 및 일반지역, 이용빈도, 설치비용, 직업)})$

대상시설 2순위 선택여부 $\text{probit} = F(\text{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연령계층, 거주지역(서울 및 군산, 아파트 및 일반지역, 이용빈도, 설치비용)})$

②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

각 편의시설 1순위 선택회수 = $F(\text{장애유형, 장애정도, 대상시설의 유형(공공, 민간, 사업장, 시설규모(대, 중, 소)), 소득수준, 연령계층, 거주지역(서울 및 군산, 아파트 및 일반지역, 이용빈도, 설치비용)})$

각 편의시설 2순위 선택회수 = $F(\text{장애유형, 장애정도, 대상시설의 유형(공공, 민간, 사업장, 시설규모(대, 중, 소)), 소득수준, 연령계층, 거주지역(서울 및 군산, 아파트 및 일반지역, 이용빈도, 설치비용)})$

第 5 章 便宜施設 擴充 및 便宜增進 方案

第 1 節 便宜施設 政策決定의 基本原則

便宜施設の 관련법률이 1998년부터 시행되어 新築建物 및 施設에 편의시설의 설치 증대가 예상되고,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施設主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어 ‘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으로 적립되게 되었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매우 저조한데 비하여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편계층의 욕구증대는 매우 커서 便宜施設 供給政策의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便宜施設 設置政策의 優先順位를 결정할 수 있는 原則을 세워야 한다. 원칙설정에 考慮해야 할 현 여건은 첫째, 향후 政策이 적용되고 基金이 투자될 편의시설 이용대상자가 障礙人, 老人, 妊娠婦 등 매우 광범위하다. 둘째, 이들의 居住分布도 일정한 곳에 몰려 있기 보다는 일반인 가구에 혼재되어 있다. 셋째, 이들이 利用하는 對象施設은 일반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어서 양적으로 매우 많고 다양하며, 지역적으로도 분산되어 있어 便宜施設 需要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막대한 財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便益-費用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원리에 의하면 政策의 개발 및 基金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서는, 투자 혹은 政策의 限界純便益이 모든 투자 대상에서 일치하는 수준까지 각종 便宜施設 및 方法에 투자하는 것이 최적 방안이 될 것이다. 자원이 충분하면 限界純便益이 陽인 규모까지 투자할 수 있으므로 거의 제한 없이 필요한 모든 對象施設에 便宜施設을 設置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원의 제약으로 최적의 투자

는 많은 施設 및 대상에 대한 투자를 배제 할 수 있다. 아래의 예시는 A……G의 편의증진 혹은 施設設置事業에 대해 투자를 8단위 까지 증대시킬 때 限界純便益이 100에서 30까지 감소한다고 가정하면서 한계순편익의 分布를 표현한 것이다. 예컨대, A사업에의 첫단위의 투자는 100의 한계순편익을 마지막 8단위의 투자는 30의 한계순편익을 가져다 준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투자의 편익이 가장 적은 G 편의사업은 첫단위의 투자의 한계순편익은 40에 불과하다. 따라서 便宜増進을 위한 투자규모가 6단위를 넘어설 수 없으면 G사업은 투자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즉 投資基金이 충분할 때는 表에서와 같이 F 및 G까지의 투자가 가능하지만 자금이 부족할 때는 투자의 純便益이 큰 A, B, C 정도까지만 투자할 수도 있다.

〈表 5-1〉 事業別 投資便益

한계순편익	A	B	C	D	E	F	G
100	O	N	N	N	N	N	N
90	O	O	N	N	N	N	N
80	O	O	O	N	N	N	N
70	O	O	O	O	N	N	N
60	O	O	O	O	O	N	N
50	O	O	O	O	O	O	N
40	O	O	O	O	O	O	O
30	O	O	O	O	O	O	O

註: O는 왼쪽의 한계순편익이 발생함을, N은 발생하지 않음을 표시함.

便宜施設 관련 정책 및 기금의 효율성 평가에는 便宜増進이 가능한 많은 대상에게 다양한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原則과 적은 사람에게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福祉必要度が 큰 대상자, 지역, 시설에 투자를 해야하는 福祉性的의 原則, 즉 이용정도가 크고 현재 편의시설 설치정도가 부족한 시설에서 福祉必要性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原則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需要側面의 便宜增進政策 혹은 투자의 우선순위는 福祉需要(이용자수×이용정도×현재의 편의설비 부족정도)가 클수록 높을 것이다. 便益施設規模 한 단위당 福祉需要가 큰 사업은 대체로 투자단위당 限界純便益이 큰 사업일 것이다. 따라서 便宜施設 政策 및 投資는 단위당 복지수요가 가장 큰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에서부터 적용하여 단위당 수요가 낮은 시설 및 규모쪽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단위당 限界純便益 혹은 福祉需要가 큰 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政策便益 極大化의 方向

가. 便宜增進 需要가 큰 便宜施設의 選定

재원의 제약이 크므로 費用-便益의 極大化의 原則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이용자수 및 이용정도)가 많고 필요도(현재의 설치 부족상태)가 큰 편의시설은 단위당 限界純便益이 크고 상당규모의 投資水準까지 우선적인 支援對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앞의 表에서 A, B, C 등의 사업에 가까운 便宜施設 및 方法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저소득 및 중증장애 정도 등으로 施設 緊要도가 크고, 利用頻도가 크며, 또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대상시설 및 지역의 편의시설에 투자는 비용단위당 효과를 크게 할 것이므로 優先順位를 높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조사에서 높은 시설개선 욕구순위를 보이고 있는 계단, 단차제거, 화장실, 경사로 등은 이용자, 이용정도 및 現在의 設置水準에서 볼 때 政策 및 投資의 優先順位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나. 便宜施設改善 需要가 큰 障礙類型, 地域, 對象施設 및
階層의 選定

1) 障礙類型 및 程度에 따른 政策比重의 差等化

視覺 및 聽覺障礙人에 대한 편의시설의 공급은 肢體障礙人을 위한 시설보다 열악하여 이에 대한 投資의 限界效率性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용자 수가 障礙類型別로 큰 차이가 없는 便宜施設들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 선호의 편의시설에 정책의 優先順位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같은 논리로 장애정도(중증장애)에 따라 投資順位 決定이 되어야 投資의 便益을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중증지체장애, 전맹 등에 대해서는 보다 큰 政策的 比重이 주어져야 한다.

2) 便宜施設 需要가 큰 地域에 政策의 優先順位 賦與

우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 限界效率이 큰 저소득 장애인이 密集하여 사는 지역의 건물 및 시설에 政策의 比重이 주어져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1995년 조사)에 의하면 소득이 없는 障礙人家口가 50.0%이고 100만원 이하의 소득가구 42.2%이며, 본 조사에서도 가구소득 50만원이하 46.7% 100만원 이하 76.9%이어서 低所得層의 생활패턴에 적합한 대상시설의 便宜施設의 擴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는 시설 이용자의 수가 많은 障礙人 密集地域에 설치할 때 더 많은 利用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對象施設 政策順位の 決定

대상시설의 利用頻度와 이용의 緊要度 중에서는 利用緊要度の 順位를 우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대형할인점 및 동네 대형 슈퍼마켓,

약국 등에 비중을 두고, 이용빈도는 높으나 긴요도가 떨어지는 시설의 순위는 낮춘다. 약수터, 동네 놀이터 등이 이용빈도는 높을지 모르나 긴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施設費가 많이 드는 대상은 便益/費用이 적어 投資 優先順位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4) 對象은 적으나 必要도가 큰 便宜施設

市場 및 政府에 의해 공급되지 못하여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잠재적 수요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農漁村 등 障礙人 稀少地域의 경우 등에 대책이 필요하다. 農漁村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의 生活便宜 增進을 위한 시설 및 설비부족은 물론 광범위한 分布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外部效果가 큰 경우, 예컨대 소수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이라도 다른 사람의 복지를 크게 증진시키는 경우에는 政策의 順位를 올려야 한다.

2. 費用의 最小化에 의한 政策의 效率性 增進

정부의 편의시설 供給側面의 優先順位 決定에서 費用節約의 原則이 중요하다. 脆弱階層의 편의시설은 민간시장의 공급에 의존하는데 제약이 큰 시설 및 설비가 대부분인데, 이는 需要規模나 所得水準에서 볼 때 민간업자가 收益事業化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障礙人 便宜施設은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공급을 시장기능에 맡기기 어려우므로 정부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는 公益財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장소의 대부분을 차지할 소규모 시설 특히 소규모 민간시설은 재정의 부족으로 投資에 限界가 크다. 따라서 수익성이 적어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고 복지성이 큰 편의시설에 대해서 便宜施設 設置基金이 주로 投入될 對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민간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供給對策도 필요하다. 福祉性도 크고 收益性도 있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는 민간이 시장의 필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하여 장애인시설 및 설비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支援政策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법과 보조금 및 벌금(과세)을 통한 間接供給方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시설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정부의 直接供給, 민간의 공급 유도를 위한 罰金(課稅)과 補助金支援, 관민의 共同投資方法 등이 선택되어야 한다.

3. 政策의 效率性 增大方案

가. 便宜施設의 集中化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대상인 모든 建物 및 施設에 대해 무차별적 및 보편적 지원 보다는 장애인의 接近度 및 選好度가 높은 시설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단위비용당 效率性을 높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종 近隣施設에의 편의시설의 공급은 일정 범위의 지역안에 집중화될 필요가 있다. 近隣地域에 모두 공급할 수 없으므로 접근이 용이하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 동사무소, 학교, 병원 등의 隣接地域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집중하고, 接近度를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안내책자의 보급 및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政策 및 投資의 效率性을 증진시킬 수 있다. 본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필요하면 단위 시설별로 障礙人 便宜增進 對象施設을 지정하여 각종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障礙人 住宅 및 施設의 규모도 일정 단위 이상으로 集中化하여 규

모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個別住宅의 편의시설 욕구에 대응하면서도, 가구집중에 의해 시설의 活用度を 높일 수 있으므로 장애인 가구간의 相互補完性を 가질 수 있는 가구들이 공동 입주하기 위한 주택 및 편의시설 구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施設(약국, 슈퍼마켓, 병원 등)들은 규모를 확대하여 便宜増進度を 높이며, 민간시설을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각종 支援政策을 開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 便宜施設에의 接近度 提高

장애이용 道路나 交通手段의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콜택시제도 등을 도입, 지원하여 便宜施設의 利用度を 높여 政策의 效率性を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近隣地域에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서비스(예, 가정봉사원과견 등)제도의 실시로 便宜増進을 도모할 수 있다. 노면상태가 양호하고 비교적 근거리의 경우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 便宜施設의 連繫性 増進을 통한 政策效果性 増進

개별 편의시설의 需要把握 만으로는 시설설치 이후의 장애인의 편의증진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活動의 連繫性 確保에 의해 편의성 증진 및 투자효율성 제고를 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활동유형별 주요 시설 및 공간에 어떠한 편의시설이 공급되어야 하는 가를 찾아야 한다. 예컨대, 장애인 밀집지역 주민들의 近隣施設, 事業場, 公共施設 利用에 대한 欲求調査가 필요하다.

〈表 5-2〉 障礙人의 活動形態別 欲求類型 例示

활동형태	욕구유형 및 추정기준
집안활동	• 민간아파트 중 편의시설 부족 아파트 규모의 파악 • 각종편의시설의 이용도 및 부족도(부엌, 화장실, 목욕실 등 각종 생활시설의 부족정도와 소요경비)
근린활동	• 주거지에서 근린생활지까지의 이동수단(예: 지체장애인을 위해 전동휠체어, 스쿠터) • 시장, 슈퍼, 약국, 놀이터 등에서 필요한 편의시설, 이용도 및 부족도
사 업 장	• 장애인 고용비율이 큰 공장, 사업장, 자영업 등 • 사업장내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연계활용방안
교육활동	• 정규교육, 학원,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
의 료	• 대형병원의 부족한 편의시설의 파악: 특히 장애인 이용도가 큰 병원 • 개인 병원의 편의시설 실태 및 욕구순위
문화·체육·여가	• 장애인 전용시설이 아니면서 이용빈도가 큰 시설에 대한 욕구 조사
교 통	• 장애인 및 노인 전용 차량의 개발 및 콜택시화 필요성 파악 • 기존 차량 버스, 기차, 전철 등의 일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무의 표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통 신	• 시각장애인용 전화기, 도움 호출기의 공공시설 입구설치, 공중전화대의 높이,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 등
도 로	• 장애인 이용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편의시설 연계 및 설치 집중화 혹은 긴급서비스 시스템의 개발

특히 장애인의 社會生活 및 經濟活動이 住居地의 隣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근의 각종 시설에 대한 需要把握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활동이 빈번히 일어나는 公共施設 및 地域, 예컨대, 교회, 복지시설, 학교, 종합병원, 여가시설 등 장애인의 利用度가 높은 곳에는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障礙人 利用集積度와 便宜增進效果를 加重시킬 수 있다. 이러한 活動別 福祉欲求의 支援은 지원을 소비자에게 可視化하고 효과를 크게 할 것이다.

第2節 便宜施設 擴充 및 便宜增進方案

〈基本方向: 政策의 效率性 增進方案〉¹⁸⁾

- 對象施設에 대해서는 이용빈도, 설치상태 및 편의시설 욕구에 기초한 差等的 對象施設 便宜增進政策 摸索
- 장애유형별로 중점적인 對象施設 및 便宜施設을 選定하여 이를 공급하는 방안의 모색
- 장애인 밀집거주지역을 고려한 地域間 差別的 政策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의 모색
- 장애인의 주요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편의증진을 도모하여 政策의 效率性 增進(近隣生活施設 및 近隣公共施設 중심)
- 연령, 소득계층, 거주형태를 고려한 差別的 便宜增進政策의 開發

1. 便宜施設 改善에 대한 需要가 가장 큰 對象施設 및 便宜施設에 대해 政策을 強化

- 1) 對象施設의 選好度を 보기 위하여 즉 이용자수, 이용빈도 및 설치상태를 근거로 한 편의시설설치 對象施設 優先順位와 조사대상 장애인이 직접 응답한 편의시설설치 必要 對象施設의 順位를 綜合하여 볼 때, 편의시설 수요가 가장 큰 대상시설은 대체로 병의원, 슈퍼마켓, 종교시설, 사업장, 사회복지시설, 공원 및 유원지, 은행, 약

18) 便宜施設 설치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각적인 시설 및 설비의 費用 效果의(예: 지역, 계층 등의 집중화) 방안이 강구되고, 두번째로 필요한 편의시설 공급량 및 소요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공공, 근린, 사업장의 대상시설과 각 대상시설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세번째로 便益의 간접적 추정을 위해 시설 및 수단 내에서의 각종 편의설비의 공급 및 부족정도 순위와 선호순위를 기초로 각 대상시설 및 편의증진 방법에 대한 선호순위와 정도를 발견하여 투자순위와 수준을 결정한다.

국, 동사무소 등이므로 便宜增進政策 對象施設의 優先順位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保健福祉部의 편의시설 설치실태에서도 대상시설 중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가장 큰 300~1,000평 이하의 도소매점, 공공화장실, 훈련원·학원, 공장, 노유자시설(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제외), 지하도·육교에서 편의시설 설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2) 對象施設의 便宜施設 設置實態 및 必要度を 보면 대부분의 시설에서 供給不足 程度는 계단에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화장실, 편의증진요원의 공급부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경사로, 단차제거, 승강기/리프트 등에서 비슷한 순위의 공급부족 정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욕구를 기초로 한 便宜施設의 選好順位를 평가하면 첫째, 전 대상시설에서 便宜施設設置 政策의 優先順位는 계단, 단차제거, 편의증진요원, 경사로, 화장실, 출입구 등의 순서이다. 그리고 선호의 정도에서 볼 때 계단의 개선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고, 단차제거(턱낮추기) 및 출입구 등은 최근 급속히 설치가 증대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利用者의 優先順位 欲求가 크다. 둘째, 그동안의 便宜施設 供給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便宜施設 供給이 不足함으로 이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턱제거 및 경사로 등의 설치가 大型施設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민 이용도가 큰 近隣施設을 중심으로 供給支援政策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3) 對象類型別 便宜施設 政策의 優先順位를 보면 대상시설 유형별로는 근린생활시설, 종교·복지시설, 문화·여가시설, 주택 및 공장에서는 모두 階段의 개선필요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편의증진요원, 주차구역, 화장실 혹은 단차제거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등의 利用頻度가 큰 近隣生活施設인 슈퍼마켓, 약국, 이·미용실, 은

행 등에서의 편의시설 不足狀態는 계단보다 화장실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의시설은 아니지만 獨自的 活動制約이 큰 장애인의 경우 便宜增進要員의 필요성을 많이 선호하였다.

- 4) 그리고 道路의 便宜施設의 優先順位는 횡단보도의 신호길이, 턱낮추기, 노면상태, 경사로, 보도유도폭 등의 기본적 시설에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지정석, 출입구 등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교통시설과 더불어 이들 시설은 일반시설과는 다른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2. 便宜增進을 위한 人的 서비스의 增大

障閤人·老人 등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시설 등의 물적 서비스에 치중하여 생각되어 온 바가 크다. 그러나 본 調査研究에 의하면 ‘便宜增進要員’과 같은 人的 서비스가 가장 선호되는 편의 증진 수단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自願奉仕에 의한 서비스 공급은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바, 즉 便宜施設이라는 수익성이 없고 소비자에게 얻는 효용만큼 가격청구가 불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의 성격으로 인해 민간에서의 영리적 목적의 공급은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公益財 供給으로부터 얻는 滿足度 및 便益의 限界로 민간의 비영리적 서비스 공급도 마찬가지로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便宜增進要員과 같은 人的 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요원배치의 일환으로 현재 군복무 대신 일하는 공익요원의 활용이나 경범자들의 선도차원의 활용과 군입대예정자 중 중질환자나 장애인을 제외한 군복무 결격사유자들의 福祉要員對象者로 義務化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障礙類型, 地域, 所得階層, 年齡別 特性的 差異를 反映한 便宜增進政策의 方向

- 1) 장애유형별로 확충될 편의시설의 유형 및 현재 만족도에 차이가 나므로 障礙類型別 便宜施設 政策의 差別化가 필요하다. 예컨대, 모든 視覺障礙, 聽覺·言語障礙의 순으로 높은 不滿足度를 보이고 있으며, 聽覺障礙人은 직업/교육활동, 종교활동, 그리고 視覺障礙人은 문화·여가 활동 등과 관련된 대상시설에서 편의시설의 개선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障礙類型別로 차이가 있는 對象施設, 예컨대, 肢體障礙人을 위한 사업장의 편의시설, 視覺障礙人을 위한 은행 및 시장,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종교시설, 학교 등에 대해서는 障礙類型의 性格을 考慮한 편의시설의 공급이 더욱 集中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편의시설의 설치에 있어 障礙類型別로 選好度가 높은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障礙形態를 고려한 便宜施設 供給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視覺·聽覺障礙人에 대한 便宜施設의 供給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보다 저조하여 이에 대한 投資의 限界效率性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용자수가 장애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는 대상시설들에서는 視覺 및 聽覺障礙人이 선호하는 시설인 비상등 및 경보기 등, 자막안내, 점자표판, 점자블럭 등의 순위로 便宜施設設置 政策의 比重이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障礙程度에 따라 投資順位가 결정되어야 투자의 便益을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중증지체장애, 全盲 등에 대해서는 보다 큰 정책적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셋째, 障礙等級別 및 部位에 따라 필요 便宜增進方法이 달라야 한다. 특히 장애 1~3급의 肢體障礙人에서 편의시설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 장애인인 약 27.5~43.8%에 이르는 이들 障礙人의 活動便宜增進 對策이 집중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支援方案에 있어서도 장애인 거주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조를 위한 資金融資 및 支援, 대상건물 및 시설주에 대한 용자 및 租稅 減免,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의 近隣施設에 대한 專用 혹은 指定施設制度의 導入이 검토될 수 있다. 장애유형별 특징으로 나타난 視覺障礙人의 주택개조자금 용자 및 聽覺障礙人의 건물주 용자 및 편의증진요원에 대한 상대적으로 큰 선호도를 政策에 反映하여야 한다.

- 2) 편의시설 수요가 큰 地域에 政策의 優先順位가 주어져야 하는 바, 첫째, 편의시설 설치의 限界效率이 큰 저소득 장애인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건물 및 시설에 정책의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대부분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低所得層의 생활패턴에 적합한 對象施設의 便宜施設 擴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住居地域에 관계없이 병의원 및 슈퍼마켓이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장 필요한 對象施設이나, 住居地 類型別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 아파트지역은 종교시설, 공원/유원지, 단독주택은 공중목욕탕, 시장, 병의원, 사업장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지적하고 있어 이러한 점이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을 大都市인 서울과 中小都市인 군산으로 나누어 보면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장 필요한 대상시설에서도 지역에 관계없이 병의원, 슈퍼마켓,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공원/유원지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 중 病醫院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는 어느 지역에서나 2순위보다 2배 가까이 높고, 슈퍼마켓도 기타 對象施設에 비해 높은 필요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과 같은 大都市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은행, 시장 등의 시설의 필요도가 높은 반면, 군산에서는 이·미용실, 공중목욕탕 등의 必要度가 높았다. 넷째, 大衆交通 便宜增進을 위한 方案에서는 地域間 差異가 考慮되어야 한다. 예컨대, 서

울과 군산의 경우 대중교통의 편의증진을 위해 버스 및 택시 교통비 지원을 가장 선호하지만, 차상위 방안에 있어서는 서울은 지하철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전용버스의 운영을 크게 선호하는 데 비해, 군산에서는 전용버스에 이어 전용택시의 운영, 차량구입융자 확대를 보다 선호하고 있어, 양 지역의 교통이용 행태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地域別 障礙人 人口分布는 규모와 인구비율에서 차이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전국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障礙人 居住地域(예컨대 '95년 등록장애인이 3,000명 이상 거주하는 20개의 시·군·구와, 2,000명 이상~3,000명 이하 거주하는 62개 시·군·구 등)을 구분하여 支援를 集中할 필요가 있다.

- 3) 장애인의 經濟的 脆弱性은 그들의 낮은 就業率(1995년 전 등록장애인의 17.2%), 높은 生活保護對象比率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대책에서도 첫째, 소득계층별 편의시설의 필요성이 큰 對象施設에 대한 選好度가 다르므로 정책대상의 순위도 階層別 特性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및 이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병의원, 슈퍼마켓, 사회복지시설, 은행, 종교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 중상위계층 및 이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는 사업장, 학교, 공원/유원지, 식당 등을 편의시설 설치에서 비중을 두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 4) 年齡階層別로 便宜增進이 필요한 對象施設을 보면, 老人階層은 병의원이외에 동사무소, 보건소 등 근린공공시설, 공중목욕탕, 슈퍼마켓, 시장 등에 대해, 60세 미만의 계층에서는 사업장, 은행, 식당등, 그리고 복지시설, 학교의 편의시설에 대해 편의증진 요구가 더 크다. 便宜增進을 위해서 요구하는 支援方案으로는 장애인 거주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개조를 위한 資金融資·支援이 연령에 관계없이 제일 선호되고 있지만, 老齡障礙人의 경우 편의증진요원의 배치에

대한 요구가 많고, 非老人階層은 專用 혹은 指定施設制度의 導入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 따라서 老人階層을 위해서는 병원, 동사무소, 보건소 등 근린공공시설, 공중목욕탕, 슈퍼마켓, 시장 등에서 便宜増進要員의 支援이 어느 연령층보다 필요하다.

4. 政策의 效率性を 増大시키는 方案의 樹立

- 1) 便宜施設 設置支援은 모든 시설에 대한 無差別의 支援보다는 편의시설의 集中化로 政策 및 投資의 效率性を 増大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障碍人の 接近度 및 選好度가 높은 시설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단위 비용당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편의시설 설치 촉진정책 및 기금지원은 일정 범위의 지역안에 集中化할 필요가 있다. 즉, 접근이 용이하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 동사무소, 학교, 병원 등의 인접지역에 便宜施設의 設置를 集中하고, 接近度を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안내책자의 보급 및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投資의 效率性を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가능하면 일정 지역범위내에서 單位施設別로 障碍人 便宜増進施設(모범시설)을 指定하여 각종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인 주택 및 시설의 규모도 일정단위 이상으로 하여 規模의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주택의 편의시설 욕구에 대응하면서도, 가구집중에 의해 施設의 活用度を 높일 수 있으므로 장애인 가구간의 相互補完性を 가질 수 있는 가구들이 공동 입주하기 위한 住宅 및 便宜施設 購入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2) 편의시설에 接近度を 높여 편의시설이용의 利用度を 増大시킴으로써 政策의 效率性を 높여야 한다. 예컨대, 장애인용 도로 및 교통

수단의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장애인 전용 콜택시와 같은 서비스의 도입 및 費用을 지원하여 증대된 편의시설의 利用度를 높여 政策의 效率性을 기할 수 있다.

- 3) 便宜施設의 連繫性 增進을 통해 政策效果性을 增大시킬 수 있다. 개별적 편의시설의 설치로서는 설치 이후의 장애인의 便宜增進效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활동의 連繫性 確保에 의해 便宜城 및 投資效率性 增進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밀집지역의 근린시설, 사업장,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基礎調査가 필요하다.

5. 政府와 民間의 便宜增進施設 供給의 分擔을 통해 政府 財政負擔 縮小와 政策의 效率性 提高

공급자 측면의 優先順位 결정에서 費用節約의 原則이 중요하다. 첫째, 수요규모나 소득수준에서 볼 때 민간업자가 收益 事業化하기 어려우나 福祉性이 큰 便益施設에 대해 정책적 지원 및 障礙人施設 設置基金이 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福祉性도 크고 收益性도 있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는 民間이 시장의 필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하여 障礙人施設 및 設備産業 育成을 위한 각종 支援政策이 開發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별로 정부의 직접 공급, 민간 공급 유도를 위한 罰金(課稅)과 補助金支援, 官民의 共同投資方法 등이 편의시설 공급의 容易性과 效率性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6. 便宜施設 設置에 대한 事後 管理監督의 強化

첫째,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 노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안내되어야 하므로 편의시설 설치의 義務뿐 아니라 장애인 등 이용자의 조사를 기초로 事後管理 및 監督이 强

化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의미에서 매년 시·군·구 단위의 障礙人 便宜増進評價大會를 開催하여 포상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촉진과 사후관리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¹⁹⁾ 셋째, 民間專門家 및 自願奉仕자를 중심으로 시·군·구단위의 ‘장애인 생활환경개선촉진 자문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便宜施設 需給實態를 把握하고, 장애인 및 노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監視 및 方案을 開發토록 한다.²⁰⁾

7. 便宜施設 設置基金 運營方案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基金의 投資方案은 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優先順位와 시설간 選好度の 差異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²¹⁾

8. 便宜増進을 위한 政府支援政策에서 障礙人·老人의 選好度 反映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1순위로는 障礙人 住宅의 편의시설설치를 위한 資金融資 및 支援이 가장 필요하고, 다음 순위로는 便宜増進要員의 配置와 障礙人 專用 혹은 指定施設(슈퍼마켓, 병원, 약국 등)을 선정하여 政策의 順位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거주지역, 소득계층,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으므로 대도시지역 및 비아파트지역, 저소득층, 60세 이상의 老人階層에서는 便宜増進要員의 配置에 높은 정책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19) 예를 들면, 호주(한국아태장애인10년 연구모임, 效率的인 障礙人便宜施設 設置方案, 1997. 12쪽 참조).

20) 예를 들면, 스위스(위의 책, 16쪽 참조).

21) 대상시설의 투자순위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제3장의 <表 3-40>, 편의시설별 投資順位와 水準을 決定하기 위해서는 <表 3-45>, <表 3-46>과 <表 3-48>을 참조.

9. 便宜施設設置 關聯法令의 調整

첫째, 先進國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法令이 매우 광범위하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嚴格성이 不足하다. 따라서 현재의 일정기준 이상의 모든 건물에 대한 普遍的인 法令의 적용보다는 지정된 對象施設에 대해서는 美國 등의 예에서와 같이 최소의 便宜施設 개선 의무이행을 보다 強制化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경우 현재 단계에서는 설치대상 및 지역을 先進國보다 좁게 하되 기본적 편의시설 설치에 엄격히 하는 費用效果的인 政策을 펴야 한다.

둘째, 先進國에서는 편의시설 設置內容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具體的이고 立體的이다. 즉, 障礙人의 활동선상에 연계적으로 필요한 편의시설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便宜施設의 설치요건이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도 中長期的으로 이러한 추세를 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日常生活에 필요한 小規模 便宜施設에 대한 規定이 없다. 또한 대상시설의 대부분이 民間施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대책이 취약하다. 그리고 규제가 單位 建物 및 施設로 되어 있어 장애인의 연속적 활동을 보장하지 못하다. 따라서 小規模施設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동의 連續性을 強化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第 3 節 對象施設別 便宜施設 改善方案

對象施設別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행태와 욕구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調査에서 드러난 주요한 특징을 바탕으로 政策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1. 公共施設の 便宜施設の 擴充方案

첫째, 地下鐵이나 鐵道驛舍의 경우에는 계단과 승강기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階段의 문제점은 다른 모든 시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계단의 경우에는 손잡이나 유효폭 등의 정비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新築驛舍나 建物の 경우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交通手段인 철도·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노인, 장애인을 위한 指定席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으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정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승하차 보조, 승강대 높이(저상버스) 등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道路에 있어서는 현재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신호길이의 개선 필요성이 높으며, 일반인도 불편을 느끼는 陸橋나 地下道の 설치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抑制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公共業務施設인 시·군·구청, 동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 專用窓口的 설치와 便宜増進要員의 배치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대인적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對民業務를 담당하는 公共機關의 경우에는 障礙人 專用窓口를 설치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한편 障礙類型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便宜増進要員(직원이나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보조가 물리적인 시설의 설치보다 장애인의 施設接近을 더욱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넷째, 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醫療施設의 경우에는 안내인과 같은 편의증진요원의 배치와 장애인용 화장실의 요구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절반 정도가 이용하는 宗教施設의

경우 계단과 화장실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밖에 장애인의 이용도가 낮은 觀覽·集會施設의 경우 주차구역이나 지정관람석에 대한 요구가 높고, 展示施設에서는 편의증진요원의 배치, 대형 販賣·宿泊施設은 화장실과 편의증진요원의 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유형에 따라 공공시설의 특성상 視覺障礙人을 위한 점자안내판이나 觸指圖 등의 비치와 인적 서비스가 필요하며, 聽覺·言語障礙人의 경우에는 자막안내와 문자/증폭전화기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최소한 공공시설에서 이들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 事業場 關聯 便宜施設의 擴充方案

첫째, 事業場 關聯 편의시설의 확충은 經濟的 效果面에서 다른 투자에 비해 높다는 사실의 인식이 요구된다. 즉, 障礙人의 사업장 관련 편의시설은 직접적으로 生産活動과 연관되므로 經濟效果가 크며, 소득활동은 다른 대부분의 活動의 源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관련 편의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둘째, 사업장내 편의시설 설치가 부진한 中·小規模 事業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支援이 필요하다. 또한 출퇴근 등 사업장까지의 용이한 移動 및 接近을 위한 手段에 대한 지원이 다른 시설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더욱이 通勤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不便改善 方案으로 지적된 ‘직장근처로 이사를 위한 지원’, ‘장애인 승차가능버스의 운용’, ‘전용통근버스의 운용’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就業障礙人들이 지적한 사업장내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는 계단, 화장실, 주차구역, 경사로 등이므로 이들 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 住居施設 및 近隣生活施設の 便宜施設 擴充方案

住居施設の 편의시설 설치정도와 개선필요 정도, 설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결과들을 볼 때, 건물 내부의 편의시설인 계단, 화장실, 욕실 등에 대해 높은 改善必要度を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新築되는 住居施設은 물론 현재 장애인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시 資金을 融資하는 등의 支援方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障碍人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近隣生活施設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비해 편의시설의 설치정도가 매우 낮고, 특히 내부의 편의시설 설치정도는 10% 내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視覺이나 聽覺障碍人을 위한 시설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첫째, 公共施設에서 義務事項으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들을 近隣生活施設에도 同一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 은행 등의 대상시설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편의시설 규정 시에는 視覺과 聽覺·言語障碍人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내책자 등 홍보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近隣生活施設의 改善必要度에서 드러난 특징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勸奨한다. 예를 들면, 銀行에서의 현금입출금기 설치, 食堂/커피숍에서의 점자메뉴판, 公衆沐浴湯에서의 바닥미끄럼 방지, 銀行에서의 편의증진요원 배치 등이다.

參 考 文 獻

- 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충청남도,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연구』, 1996.
- 권오선, 『서울시내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국립재활원, 1993.
- 김은희, 『장애우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도시교통』, 한국도시연구소, 1997.
- 남세진,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나남, 1995.
- 박병록, 『장애자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분석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박옥희·권중돈, 『장애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995.
- _____, 『장애인복지 사업지침』, 1997.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초조사』, 1995.
- 서울특별시,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 조사 및 정책연구』, 1997.
- 서울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장래인 복지수요 실태조사 보고서』, 1992.
- 신동렬, 『시각장애인의 실태조사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임평남, 『장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 『연구논문집』, 한국아·태 장애인 10년연구모임, 1995.

정기원·권선진·계훈방,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정기원·권선진 외, 『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1996.

조철호 외,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지침』, 1995.

조철호,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항목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아·태장애인 10년연구모임,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년)에 대처할 국가적 장기전략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논문집』, 1995.

조성룡, 「도시환경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래상」,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7주년 기념심포지움 자료집, 1994.

_____, 「주거환경의 장애제거를 위한 검토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아·태장애인 10년연구모임,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년)에 대처할 국가적 장기전략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논문집』, 1995.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인의 고용관리 실태조사』, 1996.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1997.

한국아·태장애인 10년 연구모임, 『효율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방안』, 199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 1994.

_____, 『취업장애인 사후지도방안 연구』, 1995.

_____, 『장애인을 위한 총체적 기술지원』, 1995.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주요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1996.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연구소, 『건축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건축법규 체크리스트 및 행동지침 개발연구』, 1993.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의 사회통합: 장애인의 복지이념, 환경, 고용』, 1992.
- 한국재활재단, 『한국 장애인복지 변천사』, 1996.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자료집』, 1995.
- 日本 總理府編, 『障礙者白書』, 1997.
- Chouinard, Edward L. & Garrett James F., *Workshops for the Disabled - A Vocational Rehabilitaton Resource*,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Nelson, Nathan, *Workshops for the Handicapped in the United States*,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71.
- Nordiska Nämnden för Handikappfrågor, *Accessibility in the Built Environment: The Nordic Approach*, The Nordic Committee on Disability, 1994.
- Chapin F. Stuart Jr. & Edward J. Kaiser, *Urban Land Use Planning*,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9.
- Federal Register,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49 CFR Parts 27, 37 and 38, Transport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inal Rule, September 6, 1991.

附 錄

- 附錄 1. 우리나라의 對象施設別 便宜施設設置 義務·勸告事項과
地域別 障礙人 便宜施設 供給實態 / 216
- 附錄 2. 障礙人·老人·妊産婦 等の 便宜増進保障에 관한 法律 / 220
- 附錄 3. 1997年 全國 市·郡·區의 登錄障礙人數 分布 / 234
- 附錄 4. 障礙類型·對象施設別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 239
- 附錄 5. 障礙人의 便宜施設에 대한 欲求調査 調査票 / 245

附錄 1.

우리나라의 對象施設別 便宜施設設置 義務·勸告事項과
地域別 障礙人 便宜施設 供給實態

〈附表 1-1〉 우리나라의 對象施設別 便宜施設設置 義務 및 勸告事項
- 障礙人 老人 妊産婦 便宜增進保障에 관한 法律 施行令 草案-

附錄 1. 우리나라의 對象施設別 便宜施設設置 義務·勸告事項과 地域別 障礙人 便宜施設 供給實態

〈附表 1-1〉 우리나라의 對象施設別 便宜施設設置 義務 및 勸告事項 - 障礙人 老人 妊産婦 便宜増進保障에 관한 法律 施行令 草案-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단차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 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 블록	유도안내 및 설비	경보피난 및 설비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음료대 판매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기 숙 사 ¹⁾		◎	○	◎	◎	○	○	◎	○	◎	○				○	◎					
근린생활 시설	슈퍼마켓·일용품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일반목욕탕	◎	○	◎	◎	○	○	○	○	○											
	안마시술소	◎	○	◎	◎	○	○	○	○	○			○	○	○						
근린공공 시설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의료보험조합	◎	◎	◎	◎	◎	◎	○	○	○			◎	○	○			○			
	공공도서관	◎	◎	◎	◎	◎	◎	○	○	○			◎	○	○		○	○			
	대피소	◎		◎	◎								○								
	공중화장실	◎		◎	◎			◎	○	○			◎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	◎	◎	○	○	○	○	○							○				
노유자 시설	장애인시설 ²⁾	◎	◎	◎	◎	◎	◎	◎	◎	◎	◎	○	◎	○	◎	◎	○	○	○		
	노인시설(경로당제외)	◎	◎	◎	◎	◎	◎	◎	○	○	○	○				○					
	아동시설, 기타 사회복지 시설(경로당 포함) ³⁾	◎	○	◎	◎	◎	◎	○	○	○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	◎	◎	◎	◎	◎	◎	○	◎	○	○	◎	○	○			○	○		
교육연구 시설	학교(장애인특수학교 제외) ⁴⁾	◎	◎	◎	◎	◎	◎	◎	○	○				○	○		○	○			
	장애인특수학교 ⁵⁾	◎	◎	◎	◎	◎	◎	◎	◎	◎	○		◎	○	◎		○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⁶⁾	◎	◎	◎	◎	◎	◎	○	○	○								○			
	도서관	◎	◎	◎	◎	◎	◎	◎	○	○							◎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부수되는 건축물	◎	○	◎	◎	○	○	○	○	○		○					○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단차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 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 블록	유도안내 및 설비	경보피난 및 설비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음료대 판매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	◎	◎	◎	◎	◎	◎	○	◎			◎	○	○			○		
	일반업무시설 ⁶⁾	◎	◎	◎	◎	◎	◎	○	○	○			○				○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⁷⁾	◎	◎	◎	◎	◎	◎	◎	○	◎	○		◎	○	○	◎		○		
판매시설	슈퍼마켓·소매점	◎	◎	◎	◎	◎	◎	◎	○	○					○					
	대규모점포	◎	◎	◎	◎	◎	◎	◎	○	○			○	○						
관람집회 시설	공연장, 관람장 ⁸⁾	◎	◎	◎	◎	◎	◎	◎	○	○					○	◎		○		
	집회장 ⁶⁾	◎	◎	◎	◎	◎	◎	○	○	○				○						
전시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⁶⁾	◎	◎	◎	◎	◎	◎	◎	○	○			◎	○					○	
공장 및 산업시설		◎	◎	◎	◎	○	○	◎	○	○								○		
방송통신 시설	방송국	◎	◎	◎	◎	◎	◎	◎	○	○				○						
	전신전화국	◎	◎	◎	◎	○	○	○	○	○			○							
관광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	◎	◎	◎	○	○	○	○	○					○	○		○		
	휴게소	◎	◎	◎	◎	○	○	◎	○	○			○						○	
청소년 수련시설		◎	◎	◎	◎	◎	◎	◎	○	◎		○			○	◎				
교통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고속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	◎	◎	◎	◎	◎	◎	○	○			◎	○	○				◎	
	자동차정류장	개찰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되, 추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전면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택시승강장과 차도에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단차를 2센티미터 이하로 턱낫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註: ○ 의무사항, ○ 권장사항

- 1)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1개동에만 설치 가능, 장애인용 침실·화장실은 가능한 1층에 배치
- 2) 장애종별에 따라 설치기준 완화 가능
- 3)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 4) 장애인학생을 위한 교실·화장실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 5) 장애종별에 따라 설치기준 완화 가능
- 6)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 7) 장애인이용객실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 8)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관람석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附表 1-2〉 便宜施設 地域別 供給實態

시·도			편의시설	계	택낮추기	유도블럭	음향신호기	경사로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계	112,901	설치시설수		234,842	44,967	20,365	4,779	21,928	32,750	17,539	11,005	2,536	10,464	9,095
		대상시설수		637,776	64,429	86,348	38,133	54,737	57,708	34,546	34,937	11,019	37,428	16,495
		설치율		36.8	69.8	23.6	12.5	40.1	56.8	50.8	31.5	23.0	28.0	55.1
서울	20,337	42.4		53,431	9,083	7,593	1,204	3,403	5,571	3,610	2,018	1,151	4,105	4,834
				125,982	12,217	16,791	8,224	8,928	9,487	6,026	5,726	3,068	8,024	6,377
부산	6,024	29.4		8,831	1,682	312	400	908	1,131	668	320	164	639	433
				30,060	2,847	3,844	1,683	2,339	2,398	1,807	1,365	531	2,444	1,289
대구	5,359	36.5		12,141	3,456	1,129	618	697	2,405	1,709	647	118	171	116
				33,280	4,687	6,330	3,170	3,251	3,292	2,639	1,564	437	3,133	116
인천	5,557	44.9		12,336	3,296	2,150	273	941	1,227	753	373	132	489	244
				27,499	2,508	4,443	3,277	1,629	1,634	1,177	1,111	331	1,292	581
광주	2,312	34.4		4,576	1,156	674	132	520	576	217	172	74	185	104
				13,313	1,388	1,875	1,081	1,072	1,035	677	754	254	639	164
대전	2,276	40.2		5,902	1,784	646	290	536	798	370	217	63	152	109
				14,692	2,259	3,225	1,815	1,230	1,315	887	934	439	895	109
경기	15,260	34.2		33,611	9,518	3,755	212	2,849	4,477	2,543	1,473	309	1,139	775
				98,382	12,856	15,813	8,000	7,034	7,784	4,538	4,723	1,423	4,476	2,117
강원	5,149	31.6		8,610	1,510	427	173	768	1,452	1,107	385	84	398	321
				27,217	2,980	3,150	1,232	2,633	2,727	1,846	1,476	568	1,730	997

〈附表 1-2〉 계속

	육실	샤워실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주차장	유도 신호장치	전화기	접수대 등	판매기	매표소	음료대	안내표시	개찰구	추락방지 난간	휠체어 리프트	기타
계	402	394	12	721	9,849	5,799	4,936	3,846	2,602	446	3,503	26,264	281	212	127	20
	619	609	23	2,826	30,744	26,417	12,602	7,304	7,890	1,227	9,098	101,127	600	485	405	20
	64.9	64.7	52.2	25.5	32.0	22.0	39.2	52.7	33.0	36.3	38.5	26.0	46.8	43.7	31.4	100
서울	77	76	2	200	1,776	1,549	1,121	666	747	95	861	3,382	99	145	43	20
	111	114	2	380	5,728	5,489	2,508	1,487	2,051	251	2,172	20,254	185	217	145	20
부산	41	39	-	26	504	504	196	167	132	10	95	444	9	6	1	
	55	56	-	144	2,687	1,464	663	294	495	46	387	3,171	18	18	15	
대구	12	13	1	20	205	77	205	82	104	15	113	220	6	-	2	
	12	13	1	119	1,452	77	205	82	178	56	189	2,245	14	5	13	
인천	11	14	-	112	592	357	150	184	121	8	117	767	13	10	2	
	48	42	-	173	1,378	1,752	589	261	355	55	392	4,433	25	11	2	
광주	5	4	-	14	203	62	103	69	25	3	68	207	3	-	-	
	9	6	1	80	581	672	188	139	120	24	128	2,421	2	2	1	
대전	10	8	-	27	303	44	98	85	53	7	62	203	4	2	31	
	10	8	-	68	756	44	98	85	100	54	107	203	6	6	36	
경기	48	46	-	53	1,245	1,143	606	413	312	84	517	1,989	43	28	34	
	94	92	2	322	3,722	6,734	1,646	891	1,049	143	1,419	13,289	93	61	61	
강원	20	30	-	24	459	209	273	162	107	35	217	440	7	2	-	
	48	62	2	101	1,550	1,271	721	390	443	82	546	2,621	18	18	10	

附錄 2.

障礙人·老人·妊産婦 等の 便宜増進保障에 관한 法律案(代案)

1. 代案의 提出經緯

- 가. 障礙人·老人·妊産婦등 移動弱者의 自由로운 社會的 移動·接近과 社會的 情報에의 接近을 保障하기 위한 接近保障基本法案이 '96年 11月 30日 李聖宰, 李在善, 申樂均, 金한길 議員外 68人으로부터 제출되었고 障礙人 및 老弱者의 便宜増進에 관한 法律案이 '96年 12月 2日 白南治, 鄭泳薰, 黃性均, 金明燮, 徐廷和, 金燦于, 吳陽順, 鄭義和, 黃圭宣, 黃祐呂, 洪仁吉, 李在五, 李信範, 李相賢 議員 外 7人으로부터 제출되어 當 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음.
- 나. 當 委員會에 回附된 2件의 法律案에 대하여 第181回 國會(定期會) 第11次('96. 12. 10) 및 第12次('96. 12. 13) 委員會에서 각각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大體討論을 거쳐 法案審査小委員會에 回附하여 審査토록 하였음.
- 다. 法案審査小委員會는 同 法律案에 대하여 政府關係官을 출석시킨 가운데 4次에 걸친 진지하고 심도있는 審査를 거쳐 2件의 法律案을 統合·調整한 單一案을 마련, 이를 '96年 12月 16日 第181回 國會(定期會) 第13次 委員會에서 委員會 代案으로 提案하기로 議決하고 2件의 法律案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97年 3月 14日 第183回 國會(臨時會) 第6次委員會에서 法的 安定性을 위해 原則적으로 法施行後의 施設에만 이 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翻案議決하였음.

2. 代案의 提案理由

障 碍 人·老 人·妊 産 婦 등 이 생 활 을 영 위 함 에 있 어 安 全 하 고 便 利 하 게 施 設 및 設 備 를 利 用 하 고 情 報 에 용 이 하 게 接 近 함 으 로 써 이 들 의 社 會 活 動 參 與 와 福 祉 增 進 을 도 모 하 기 위 함

3. 代案의 主要骨子

- 가. 障 碍 人 등 의 施 設·設 備 및 情 報 에 대 한 接 近 권 을 인 정 함(案 第4條)
- 나. 便 宜 施 設 을 設 置 하 여 야 하 는 對 象 施 設 을 정 하 고 便 宜 施 設 의 種 류 는 大 統 領 令 으 로 정 하 며 세 부 적 인 設 置 基 準 은 保 健 福 祉 部 令 으 로 정 함(案 第8條)
- 다. 施 設 主 管 機 關 은 便 宜 施 設 實 態 조 사 를 실 시 하 여 야 하 며, 便 宜 施 設 設 置 촉 진 을 위 하 여 所 管 對 象 施 設 에 대 한 便 宜 施 設 設 置 計 劃 을 수 립·시 행 하 여 야 함(案 第11條, 第12條)
- 라. 國 家 등 은 民 間 의 便 宜 施 設 設 置 지 원 을 위 하 여 金 融·技 術 支 援 등 필 요 한 조 치 를 취 하 고 민 간 의 便 宜 施 設 設 置 費 用 에 대 하 여 는 租 稅 關 係 法 令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租 稅 減 免 을 하 도 록 함(案 第13條)
- 마. 構 造 的 으 로 細 部 基 準 에 따 른 便 宜 施 設 設 置 가 곤 란 한 對 象 施 設 에 대 하 여 세 부 기 준 을 완 화 한 별 도 의 기 준 을 정 하 고 施 設 主 管 機 關 의 承 認 을 얻 어 적 용 할 수 있 도 록 함(案 第15條)
- 바. 國 家 등 은 障 碍 人 등 의 利 用 이 많 은 公 共 建 物 및 公 衆 利 用 施 設 에 월 체 어 등 을 비 치 하 여 無 料 또 는 實 費 로 利 用 하 도 록 함(案 第16條).
- 사. 便 宜 施 設 의 設 置 를 활 성 화 하 기 위 해 便 宜 施 設 設 置 促 進 基 金 을 設 置 하 며, 그 財 源 은 政 府 出 捐 金, 履 行 强 制 金 등 으 로 함(案 第

18條~第21條)

아. 이 法을 위반한 경우의 罰則과 過怠料에 관한 사항을 정함(案 第25條~第27條)

자. 是正命令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便宜施設設置費用等을 고려하여 3千萬원 이하의 履行强制金을 부과하고 履行强制金의 금액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함(案 第28條)

차. 이 法은 공포한 후 1年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함(案 附則 第1條).

4. 法律 第5332號 障礙人·老人·妊産婦 등의 便宜增進保障에 관한 法律

第1條(目的) 이 法은 障礙人·老人·妊産婦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安全하고 便利하게 施設 및 設備를 利用하고 情報에 接近하도록 保障함으로써 이들의 社會活動參與와 福祉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障礙人등”이라 함은 障礙人·老人·妊産婦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移動과 施設利用 및 情報에의 接近등에 不便을 느끼는 者를 말한다.
2. “便宜施設”이라 함은 障礙人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移動과 施設利用의 편의를 도모하고 情報에의 接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施設과 設備를 말한다.
3. “施設主”라 함은 이 法에서 정하는 對象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당해 對象施設에 대한 별도의 管理義務者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施設主管機關”이라 함은 便宜施設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하여

指導와 監督을 행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및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道路”라 함은 道路法 第2條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 및 그 附屬物과 地下道路의 구조 및 設置에 관한 建設交通部令에서 規定하고 있는 地下道路를 말한다.
6. “公園”이라 함은 自然公園法 第2條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公園 및 同條 第7號의 規定에 의한 公園施設과 都市公園法 第2條 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公園 및 同條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園施設을 말한다.
7.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이라 함은 不特定多數人이 利用하는 建築物, 施設 및 그 附帶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建物 및 施設을 말한다.
8. “共同住宅”이라 함은 住宅建設促進法 第3條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共同住宅을 말한다.
9. “交通手段”이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2條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 鐵道法 第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鐵道の 運行에 사용되는 車輛 및 都市鐵道法 第3條 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 運行에 사용되는 車輛을 말한다.
10. “通信施設”이라 함은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 第2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과 郵便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郵便物등 通信을 利用하는데 필요한 施設을 말한다.

第3條(便宜施設 設置의 基本原則) 施設主는 障礙人등이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을 利用함에 있어 가능한 最短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4條(接近權) 障礙人등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을 추구할 權利를 保障받기 위하여 障礙人등이 아닌 사람들이 利用하는 施設과 設備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利用하고 障礙人등이 아닌 사람이 接近할 수 있는 情報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接近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第5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便宜施設에 관한 사항은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6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礙人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施設 및 設備을 利用하고 情報에 接近할 수 있도록 각종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第7條(對象施設)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對象施設”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道路
2. 公園
3.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
4. 共同住宅
5. 交通手段
6. 通信施設
7. 기타 障礙人등의 便宜를 위하여 便宜施設의 設置가 필요한 建物·施設 및 그 附帶施設

第8條(便宜施設의 設置基準) ① 對象施設別로 設置하여야 하는 便宜施設의 종류는 對象施設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便宜施設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細部基準(이하 “細部基準”이라

한다)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9條(施設主의 義務) ① 施設主는 對象施設을 設置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變更하는 때에는 障礙人등이 항상 對象施設을 편리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便宜施設을 第8條의 規定에 적합하게 設置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施設主는 障礙人등이 便宜施設을 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便宜施設이 設置된 곳에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案内表示를 하여야 한다.

第10條(便宜施設에 관한 指導·監督)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便宜施設의 設置·運營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施設主管機關은 그 소관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指導와 監督을 행하여야 한다.

第11條(實態調査) ① 施設主管機關은 便宜施設 活性化 政策의 基礎資料 확보등을 위하여 便宜施設 設置에 관한 實態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의 실시시기, 實施方法 등에 관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③ 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施設主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第12條(設置計劃의 수립·施行 및 보고) ① 施設主管機關은 便宜施設 設置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設置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便宜施設設置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對象施設の 便宜施設 設置實態 및 整備計劃
2. 對象施設の 建築·大修繕·用途變更의 경우 또는 交通手段 구입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便宜施設設置計劃
3. 對象施設 및 便宜施設 設置基準에 관한 弘報
4. 기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사항

③ 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便宜施設 設置計劃과 그 施行實績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保健福祉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計劃등을 종합하여 便宜施設 設置에 관한 國家綜合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第13條(設置의 지원)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의 便宜施設 設置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設置를 촉진하기 위하여 金融支援과 技術支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法人 및 개인이 이 法에서 정하는 便宜施設을 設置한 경우에는 당해 施設の 設置에 소요된 金額에 대하여 租稅減免規制法, 地方稅法등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한다.

第14條(研究開發의 촉진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便宜施設에 관한 研究開發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便宜施設 設置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便宜施設 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이를 普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築物에 대한 便宜施設 詳細標準圖는 해당 便宜施設에 관하여 建築法 第19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設計圖書로 본다.

第15條(適用의 緩和) ① 施設主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第8條 第2項의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의 設置가 곤란하거나 不合理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

고 施設主管機關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便宜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1.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 設置가 構造的으로 곤란한 경우
 2. 細部基準에 적합하게 便宜施設을 設置할 경우 安全管理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對象施設의 用途 및 周邊與件에 비추어 細部基準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
- ② 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障礙人 등의 利用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施設利用상의 편의제공) ① 障礙人등의 利用이 많은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의 施設主는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 障礙人등이 당해 施設을 편리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의 범위와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의 利用料는 無料를 원칙으로 하되 修理에 소요되는 費用등을 감안하여 實費로 할 수 있다.

第17條(障礙人專用駐車區域등) ①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의 施設主는 駐車場法令이 정하는 設置比率에 따라 障礙人專用駐車區

域을 設置하여야 한다.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障礙人의 申請이 있는 경우 運轉者가 障礙人이거나 障礙人을 乘車시키기 위한 自動車임을 식별하는 標識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가 부착되지 아니한 自動車를 障礙人專用駐車區域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8條(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의 設置) 保健福祉部長官은 便宜施設設置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19條(基金의 財源)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조성한다.

- 1.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로부터의 出捐金 또는 寄附金
- 2.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徵收額의 100分の 50
- 3. 基金의 運用에 의하여 생기는 收益金
- ② 政府외의 者가 基金에 出捐 또는 寄附한 金額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地方稅法 기타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計算의 特例를 적용한다.

第20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便宜施設 詳細標準圖의 작성등 研究開發事業
- 2. 便宜施設 設置등과 관련한 技術支援事業
- 3. 便宜施設에 관한 教育 및 弘報事業
- 4. 便宜施設 設置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및 補助事業
- 5.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便宜施設設置促進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第21條(基金의 運用·管理) ① 基金은 保健福祉部長官이 管理·運用하되,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第1項의 基金에 대하여는 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5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2條(資料提出 요구 및 檢査) ① 保健福祉部長官과 施設主管機關은 施設主에게 便宜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련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便宜施設設置 및 設置된 便宜施設의 細部基準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3條(是正命令등) ① 施設主管機關은 對象施設이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施設主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法에 적합하도록 便宜施設의 設置 및 改善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施設主管機關에게 소관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 및 改善등 是正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施設主管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4條(聽聞) 施設主管機關은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施設主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施設主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5條(罰則) 第9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로서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是正期間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26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벌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第25條의 罰金刑을 과한다.

第27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第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案内表示를 하지 아니하거나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者로서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是正期間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正當한 사유없이 第11條 第3項 및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 要求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기피·방해한 者
- ② 第17條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障礙人自動車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한 自動車를 障礙人專用駐車區域에 주차한 者는 20萬 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主管機關이 賦課·徵收한다.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당해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賦課權者는 肢體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

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28條(履行强制金) ① 施設主管機關은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후 是正期間내에 당해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施設主에 대하여 便宜施設 設置費用등을 고려하여 3千萬원이하의 履行强制金を 賦課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履行强制金を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위반정도에 따른 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を 賦課하기 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を 賦課·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④ 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を 부과하는 경우에는 履行强制金の 金額·賦課事由·納付期限 및 收納機關·異議提起方法 및 異議提起機關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행하여야 한다.

⑤ 施設主管機關은 최초의 是正命令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하여 매년 1회 당해 是正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を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⑥ 施設主管機關은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是正命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の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履行强制金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⑦ 第27條 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履行强制金の 徵收 및 異議節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 徵收額의 100分の 50은 賦課

權者が 사용하되, 다음 各號 외의 用途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便宜施設에 관한 教育 및 弘報事業
 2. 便宜施設 設置費用의 融資 또는 補助事業
 3.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障礙人등의 生活便宜增進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⑨ 第8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⑩ 履行强制金の 賦課權者は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履行强制金으로 징수한 금액의 運用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第29條(權限의 委任·委託)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5.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便宜施設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障礙人福祉法 第33條의 規定을 적용하여 建築許可申請등 對象施設의 設置·變更을 위한 行政節次가 진행중이거나 시공 중인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에 관하여는 종전의 障礙人福祉法 第33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 ② 이 法 施行전에 設置된 對象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이 法 施行日부터 2년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對象施設의 施設主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③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施設主에 대하여 第23條, 第25條 및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基金管理基本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에 第120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20. 障礙人·老人·妊産婦등의 便宜增進保障에 관한 法律

② 障礙人福祉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 第2項 내지 第5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57條 第3號를 削除한다.

附錄 3.

1997年 全國 市·郡·區의 登錄障礙人數 分布¹⁾

1. 서울: 65,906名(1997年 3月 31日 現在)

(단위: 명)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강남구	2,973	도봉구	2,095	양천구	2,523
강동구	2,981	동대문구	2,423	영등포구	2,457
강북구	3,050	동작구	3,006	용산구	1,527
강서구	4,822	마포구	2,703	은평구	2,650
관악구	3,094	서대문구	2,006	종로구	1,321
광진구	2,090	서초구	1,651	중구	993
구로구	2,441	성동구	1,823	중랑구	3,324
금천구	1,769	성북구	2,897		
노원구	6,033	송파구	3,254	계	65,906

2. 釜山: 27,934名(1997年 3月 3日 現在)

(단위: 명)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강서구	660	사상구	2,429	중구	408
금정구	1,887	사하구	2,669	진구	3,134
남구	2,519	서구	1,299	해운대구	2,470
동구	1,347	수영구	1,184	기장군	692
동래구	1,582	연제구	1,568		
북구	2,199	영도구	1,887	계	27,934

1) 자료는 1997년 8월 각 시도에서 제공됨.

3. 大邱: 16,918명(1997年 2月 28日 現在)

(단위: 명)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남구	1,213	북구	2,658	중구	811
달서구	3,642	서구	1,842	달성군	925
동구	2,606	수성구	3,221	계	6,918

4. 光州: 9,915名(1997年 6月 30日 現在)

(단위: 명)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광산구	2,170	동구	1,188	서구	1,660
남구	1,867	북구	3,030	계	9,915

5. 大田: 10,050名(1997年 3月 31日 現在)

(단위: 명)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대덕구	1,115	서구	2,727	중구	1,894
동구	2,396	유성구	918	계	10,050

6. 江原: 17,795名(1997.3.31.)

(단위: 명)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강릉시	1,769	고성군	471	평창군	959
동해시	1,157	양구군	310	홍천군	998
삼척시	1,219	양양군	424	화천군	346
속초시	686	영월군	932	횡성군	613
원주시	2,590	인제군	338		
춘천시	2,447	정선군	1,118		
태백시	1,324	철원군	458	계	18,159

7. 京畿: 51,556名(1997年 3月 現在)

(단위: 명)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수원시	4,387	구리시	1,193	여주군	916
성남시	5,188	남양주시	2,386	화성군	1,578
의정부시	1,944	오산시	739	광주군	1,148
안양시	3,301	시흥시	1,107	포천군	1,159
부천시	5,446	군포시	1,489	가평군	-
광명시	2,313	의왕시	776	양평군	1,014
평택시	2,725	하남시	996	안성군	679
동두천시	652	용인시	1,605	김포군	951
안산시	3,860	파주시	1,844		
고양시	3,706	이천시	1,111		
과천시	291	양주군	904	계	51,556

8. 忠北: 14,347名(1997年 5月 31日 現在)

(단위: 명)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제천시	1,769	보은군	2,590	청원군	932
청주시	1,157	영동군	1,324	충평	338
충주시	1,219	옥천군	471		
괴산군	686	음성군	310		
단양군	2,447	진천군	424	계	14,347

9. 忠南: 21,274名(1997年 6月 30日 現在)

(단위: 명)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공주시	2,022	금산군	950	태안군	617
논산시	1,922	당진군	1,376	홍성군	997
보령시	2,332	부여군	1,551		
서산시	1,295	서천군	1,152		
아산시	1,583	연기군	948		
천안시	2,547	예산군	1,275		
계룡출장소	91	청양군	616	계	1,274

10. 慶北: 28,286名(1997年 6月 30日 現在)

(단위: 명)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경산시	1,776	포항시	4,090	울진군	820
경주시	2,546	고령군	529	의성군	1,097
구미시	1,712	군위군	402	청도군	624
김천시	1,659	봉화군	612	청송군	481
문경시	1,210	성주군	621	칠곡군	958
상주시	1,522	영덕군	803		
안동시	2,836	영양군	332		
영주시	1,410	예천군	929		
영천시	1,239	울릉군	78	계	28,286

11. 慶南: 32,639名(1997年 3月 31日 現在)

(단위: 명)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거제시	1,936	진해시	913	창녕군	817
김해시	2,055	창원시	2,452	하동군	866
마산시	2,892	통영시	1,199	함안군	948
밀양시	1,509	거창군	950	함양군	654
사천시	1,418	고성군	867	합천군	835
양산시	1,348	남해군	989		
울산시	5,454	산청군	1,072		
진주시	2,835	의령군	630	계	32,639

12. 全北: 25,209名(1997年 3月 31日 現在)

(단위: 명)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전주시	4,608	완주군	1,332	고창군	1,233
군산시	3,401	진안군	585	부안군	1,396
익산시	4,027	무주군	429		
정읍시	2,161	장수군	503		
남원시	1,446	임실군	783		
김제시	2,559	순창군	746	계	25,209

13. 濟州: 6,006名(1997年 6月 31日 現在)

(단위: 명)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지역	등록장애인수
서귀포시	937	남제주군	1,020		
제주시	2,408	북제주군	1,641	계	6,006

附錄 4. 障礙類型·對象施設別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

〈附表 4-1〉 地下鐵·鐵道 驛舍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礙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290)	계단(34.1)	승강기(22.4)	편의증진요원(10.7)
시각장애(40)	계단(30.0)	편의증진요원(20.0)	점자표지판(15.0)
청각·언어장애(47)	자막안내방송(51.1)	비상등(21.3)	증폭전화기(17.0)

〈附表 4-2〉 버스터미널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礙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170)	계단(22.9)	편의증진요원(20.6)	단차제거(14.1)
시각장애(27)	편의증진요원(29.6)	점자블럭(22.2)	승강기(11.1)
청각·언어장애(32)	자막안내방송(65.6)	증폭전화기(15.6)	비상등(9.4)

〈附表 4-3〉 電鐵·鐵道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礙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228)	장애인지정석(58.3)	승하차보조(17.5)	승강대높이(11.0)
시각장애(33)	장애인지정석(57.6)	음성안내방송(24.2)	승하차보조(15.2)
청각·언어장애(37)	자막안내방송(86.5)	장애인지정석(8.1)	승강대높이(2.7)

〈附表 4-4〉 버스·택시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礙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227)	승강대높이(36.1)	장애인지정석(31.3)	승하차보조(24.7)
시각장애(34)	음성안내방송(50.0)	승하차보조(23.5)	장애인지정석(23.5)
청각·언어장애(42)	자막안내방송(88.1)	장애인지정석(7.1)	승강대높이(2.7)

〈附表 4-5〉 주로 이용하는 道路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408)	신호길이(32.8)	턱낮추기(20.3)	노면상태(16.7)
시각장애(54)	점자블럭(18.5)	신호길이(14.8)	노면상태(14.8)
청각·언어장애(31)	신호길이(77.4)	노면상태(6.5)	육교/지하도(6.5)

〈附表 4-6〉 公共業務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125)	계단(25.6)	전용창구(16.8)	편의증진요원(16.0)
시각장애(12)	점자표지판(41.7)	편의증진요원(25.0)	계단(16.7)
청각·언어장애(15)	자막안내방송(40.0)	편의증진요원(20.0)	증폭전화기(13.3)

〈附表 4-7〉 近隣公共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286)	전용창구(26.2)	편의증진요원(18.2)	계단(11.2)
시각장애(33)	편의증진요원(48.5)	점자안내판(21.2)	전용창구(9.1)
청각·언어장애(31)	자막안내방송(45.2)	증폭전화기(16.1)	전용창구(12.9)

〈附表 4-8〉 住居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367)	계단(19.6)	욕실(15.5)	화장실(13.1)
시각장애(49)	유도벨·점자블럭(22.4)		계단(18.4)
청각·언어장애(54)	착신램프(35.2)	가스경보 비상등(31.5)	문자/증폭전화기(20.4)

〈附表 4-9〉 슈퍼마켓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단위: %, 명)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325)	계단(20.0)	단차제거(15.1)	경사로(14.5)
시각장애(38)	계단(21.1)	단차제거(18.4)	점자블럭(15.8)
청각·언어장애(38)	비상등(73.7)	승강기/리프트(7.9)	주출입구접근로(2.6)

〈附表 4-10〉 藥局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238)	출입구(20.2)	단차제거(19.3)	경사로(15.1)
시각장애(36)	점자블럭(19.4)	단차제거·경사로(19.4)	
청각·언어장애(34)	비상등(64.7)	승강기/리프트(5.8)	계단·경사로(2.9)

〈附表 4-11〉 理·美容室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289)	계단(36.3)	단차제거(14.9)	출입구(13.8)
시각장애(36)	계단(44.4)	단차제거(16.7)	점자블럭(11.1)
청각·언어장애(38)	비상등(63.2)	승강기/리프트(7.9)	-

〈附表 4-12〉 銀行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287)	계단(22.0)	현금입출금기(17.1)	편의증진요원(15.0)
시각장애(34)	편의증진요원(47.1)	점자블럭·점자안내판(11.8)	
청각·언어장애(43)	자막안내방송(53.5)	편의증진요원(16.3)	현금입출금기(11.6)

〈附表 4-13〉 시장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117)	경사로(32.4)	유효폭(23.0)	편의증진요원(21.3)
시각장애(24)	편의증진요원(41.7)	점자블럭(25.0)	점자안내판(16.7)
청각·언어장애 (26)	공중FAX/증폭전화기 (42.3)	비상등 (23.1)	화장실사용식별램프 (15.4)

〈附表 4-14〉 公衆沐浴湯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101)	바닥미끄럼방지 (37.6)	계단(22.7)	샤워기 보조손잡이 (15.8)
시각장애(11)	바닥미끄럼방지 (36.4)	계단(18.2)	단차제거, 점자표지판(9.1)
청각·언어장애(29)	비상등 (69.0)	화장실사용 식별램프(20.7)	계단, 바닥미끄럼 방지 (3.4)

〈附表 4-15〉 食堂·커피숍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166)	장애인용화장실 (26.5)	단차제거 (25.3)	장애인용 주차구역(24.1)
시각장애(18)	점자메뉴판(44.4)	단차제거(27.8)	출입구(11.1)
청각·언어장애(27)	비상등 (33.3)	화장실사용식별램프 (25.9)	공중FAX/증폭 전화기(18.5)

〈附表 4-16〉 事業場 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단위: 명, %)

구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123)	계단(44.3)	화장실(36.6)	주차구역(31.7)
시각장애(15)	점자표지판(50.0)	점자블럭(42.9)	편의증진요원(20.0)
청각·언어장애 (17)	상황인식램프 (100.0)	공중Fax/증폭전화기 (43.8)	욕실/샤워실 (17.6)

〈附表 4-17〉 綜合病院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礙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163)	편의증진요원(28.2)	계단(15.3)	승강기(14.1)
시각장애(17)	편의증진요원(35.3)	점자안내판·승강기(11.8)	
청각·언어장애(23)	편의증진요원(30.4)	자막안내방송(26.1)	비상등(21.7)

〈附表 4-18〉 病·醫院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礙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249)	계단(29.3)	승강기(20.5)	편의증진요원(16.5)
시각장애(34)	편의증진요원(26.5)	계단(14.7)	점자안내판(11.8)
청각·언어장애(38)	자막안내방송(52.6)	비상등(13.2)	편의증진요원(10.5)

〈附表 4-19〉 宗教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礙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189)	계단(34.4)	경사로(15.9)	화장실(14.3)
시각장애(24)	점자블럭(29.2)	계단(25.0)	편의증진요원(20.8)
청각·언어장애(33)	자막안내방송(51.5)	비상등(12.1)	증폭전화기(12.1)

〈附表 4-20〉 社會福祉施設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礙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67)	편의증진요원(26.9)	계단(19.4)	경사로(9.0)
시각장애(12)	편의증진요원(50.0)	점자블럭(25.0)	점자표지판(8.3)
청각·언어장애(6)	자막안내방송(50.0)	증폭전화기(33.3)	비상등(16.7)

〈附表 4-21〉 運動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26)	장애인용화장실(34.6)	주출입구 주차구역(19.2)	계단(11.2)
시각장애(2)	점자표지판(50.0)	주출입구 주차구역(50.5)	-
청각·언어장애(4)	비상등(75.0)	주출입구 주차구역(25.0)	-

〈附表 4-22〉 公園/遊園地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215)	장애인용화장실(17.2)	주차구역(13.5)	편의증진요원(11.6)
시각장애(22)	편의증진요원(31.8)	점자표지판·점자블럭(13.2)	
청각·언어장애(29)	자막안내방송(37.3)	편의증진요원(13.8)	비상등·증폭전화기(18.5)

〈附表 4-23〉 動物園/植物園의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인(28)	주출입구주차구역(32.1)	편의증진요원배치(25.0)	단차제거, 경사로, 매표소, 화장실(7.1)
시각장애인(1)	점자표지판(100.0)	-	-
청각·언어장애인(6)	자막안내방송(66.7)	공중FAX/증폭전화기·장애인용공중전화(16.7)	

〈附表 4-24〉 販賣施設の 便宜施設 設置 優先順位(障碍類型別)

(단위: 명, %)

구 분(N)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50)	주차구역(20.0)	화장실(20.0)	편의증진요원(16.0)
시각장애(4)	점자표지판(50.0)	단차제거(25.0)	복도(25.0)
청각·언어장애(10)	자막안내방송(50.0)	증폭전화기(20.0)	비상등(10.0)

附錄 5. 障礙人의 便宜施設에 대한 欲求調査 調査票

구 분	조사구 번호	조사표번호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욕구조사

주 소	시 구 동 번지(아파트 동 호) 도 시 동 번지(아파트 동 호)			
응답자성명			전화번호	
방문회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지도원검토결과
1차	월 일	☐ 1. 완료 ☐ 4. 응답거절		☐ 양호
	시 분부터	☐ 2. 장기출타 ☐ 5. 이사		☐ 약간 수정
	시 분까지	☐ 3. 외출 ☐ 6. 기타()		☐ 재방문 지시
2차	월 일	☐ 1. 완료 ☐ 4. 응답거절		☐ 양호
	시 분부터	☐ 2. 장기출타 ☐ 5. 이사		☐ 약간 수정
	시 분까지	☐ 3. 외출 ☐ 6. 기타()		☐ 재방문 지시
3차	월 일	☐ 1. 완료 ☐ 4. 응답거절		☐ 양호
	시 분부터	☐ 2. 장기출타 ☐ 5. 이사		☐ 약간 수정
	시 분까지	☐ 3. 외출 ☐ 6. 기타()		☐ 재방문 지시
조사원성명	(인)		지도원성명	(인)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___① 남 ___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학력은(재학중이거나 중퇴 포함)?
 ① 다니지 않았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 ⑥ 대학교이상 ⑦ 특수학교 초등부
 ⑧ 특수학교 중등부 ⑨ 특수학교 고등부 ⑩ 특수학교 전공과
4. 귀하의 장애종류 및 등급은? (_____ 장애 _____ 급)

4-1. 장애부위 또는 형태는?

지체장애	___① 상지(팔) ___② 하지(다리) ___③ 상지+하지 ___④ 척추 ___⑤ 변형(왜소증, 척추후만증 등) ___⑥ 기타()
시각장애	___⑦ 전맹 ___⑧ 약시 ___⑨ 기타()
청각·언어장애	___⑩ 청각+언어 ___⑪ 청각 ___⑫ 언어 ___⑬ 기타

5. 현재 등록된 장애 외에 다른 불편한 데가 있으십니까?
 ___① 예(어디:) ___② 아니오
6. 귀하의 결혼상태는?
 ___① 미혼 ___② 유배우 ___③ 이혼
 ___④ 사별 ___⑤ 별거
7. 귀댁의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총 명)
8. 귀댁의 총 가구소득은 한달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___① 50만원 미만 ___② 50만원 ~ 99만원 미만
 ___③ 100만원~149만원 미만 ___④ 150만원 ~200만원 미만
 ___⑤ 200만원 이상
9. 귀하의 택에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다른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분입니까?
 ___① 예 (명) ___② 아니오
10. 귀하의 주거형태는?
 ___① 아파트 ___② 단독주택 ___③ 연립주택

___④ 다세대/다가구주택 ___⑤ 상가주택 ___⑥ 기숙사
___⑦ 공동숙소 ___⑧ 장애인전용주택 ___⑨ 기타

11. 귀하의 주택소유 여부는?

__① 자가 __② 전세 __③ 월세 __④ 영구임대
 __⑤ 보증부 월세 __⑥ 무료임대 __⑦ 기타()

12. 귀하는 소득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___① 예 ----> 질문 12-1로
___② 아니오 ----> 질문 13으로

12-1. 현재는 직업이 없지만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우, 취업하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① 편의시설 부족 ___② 기술·기능 부족 ___③ 정보부족
 ___④ 장애로 인해 ___⑤ 장애인고용 기피 ___⑥ 기타()

13. 귀하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이십니까?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2. 외출관련 사항

1. 귀하께서는 직장이나 학교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자주 외출하십니까?

[illegible]

2. 외출의 목적은 주로 무엇입니까(직장, 학교 제외)?

- ☐ ① 사고/단체활동 ☐ ② 문화/여가/체육활동
☐ ③ 봉사활동 ☐ ④ 일상활동
☐ ⑤ 직업/교육관련활동 ☐ ⑥ 의료/보건활동
☐ ⑦ 종교활동 ☐ ⑧ 기타()

3. 외출시 주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직장, 학교 제외)?

- ☐ ① 도보 ☐ ② 버스 ☐ ③ 택시 ☐ ④ 지하철
☐ ⑤ 승용차(자가용 포함) ☐ ⑥ 오토바이 ☐ ⑦ 자전거
☐ ⑧ 휠체어 ☐ ⑨ 기타()

4. 집밖으로 외출시 보장구가 필요하십니까(필요한 경우 모두 표시)?

- ☐ ① 보장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 ② 목발/지팡이
☐ ③ 휠체어 ☐ ④ 전동휠체어 ☐ ⑤ 보조기
☐ ⑥ 의수족 ☐ ⑦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⑧ 저시력보조기(안경, 돋보기) ☐ ⑨ 보청기
☐ ⑩ 체외용전기후두 ☐ ⑪ 안내인 ☐ ⑫ 기타()

5. 대중교통 이용시 편의증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① 지하철의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설치
☐ ② 장애인 전용버스의 운영/활성화
☐ ③ 장애인 전용택시의 운영
☐ ④ 교통비(택시·버스) 일부지원
☐ ⑤ 장애인 차량구입 용자확대 ☐ ⑥ 오토바이 구입/이용지원
☐ ⑦ 자막안내방송 설치지원 ☐ ⑧ 정차호출램프 설치지원
☐ ⑨ 편의증진요원(도우미) 배치 ☐ ⑩ 기타 ()

◆ 각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조사에 있어서 편의시설 항목들은 법정시설의 경우 * 표시로, 시각장애인 전용시설의 경우는 ☐, 청각장애인 전용시설의 경우는 ☒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지체장애인의 경우 ☐, ☒표시의 항목에는 응답할 필요 없음.

3. 교통시설

* 주 이용 교통관련 편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하여 주십시오.

1. 지하철·철도역사/버스터미널

편의시설항목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항에 모두 V 표시하여 주십시오(불필요한 경우는 X표)	우선순위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 지하철/철도역사 1순위() 2순위() 3순위()
* 2. 장애인용 주차구역		
* 3. 주출입구 단차제거		
* 4. 출입구(문)		
* 5. 복도(유효폭, 손잡이)		
* 6. 계단(유효폭, 손잡이)		
* 7. 장애인용 화장실		
* 8. 매표소/판매기 높이		
* 9. 승강기/리프트		
10. 개찰구 높이/폭		○ 버스터미널 1순위() 2순위() 3순위()
11. 점자표지판 ☒		
*12. 점자블럭 ☒		
13. 비상등(경보등) ☒		
14. 화장실사용식별램프 ☒		
15. 자막안내방송 ☒		
16. 공중FAX, 증폭전화기 ☒		
17. 편의증진요원 배치		
18. 기타()		

2. 지하철(전철) · 철도

편의시설항목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항에 모두 V 표시하여 주십시오(불필요한 경우는 X표)	우선순위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3가지 기입
1. 승강대 높이		○ 지하철/전철 1순위() 2순위() 3순위()
2. 장애인지정석		
3. 자동문		
4. 보장구 보관공간		
5. 승하차 보조		
6. 휠체어리프트		○ 버스/택시 1순위() 2순위() 3순위()
7. 음성안내방송 ☒		
8. 자막안내방송 ☒		
9. 기타()		

4. 도로

* 귀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도로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하여 주십시오

☐ 도로(보도, 지하도, 횡단보도)

편의시설항목	설치유무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우선순위
	○ 대체로 설치 △ 부분적 설치 · 설치안된 경우 공란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항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불필요한 경우는 ×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3가지 기입
*1. 턱낮추기			1순위() 2순위() 3순위()
*2. 도로 노면상태			
*3. 경사도(기울기)			
*4. 보도의 유효폭			
*5. 점자블럭 ☒			
*6. 음향신호기 ☒			
7. 신호길이			
8. 육교/지하도계단			
9. 기타()			

5. 공장 및 산업시설

* 다음은 소득이 있는 직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현재 하고 계신 일은 자영업입니까?

___① 예 ___② 아니오

2. 현재 하고 계신 일은 사무직입니까?

___① 예 ___② 아니오

3. 다음중 구체적인 직종은 무엇입니까?

___① 컴퓨터(정보처리/전산) ___② 일반사무직 ___③ 전자/전기
___④ 공예(목공/도자기/금속) ___⑤ 봉제/의상 ___⑥ 복지시설종사자
___⑦ 지압/안마 ___⑧ 교사 ___⑨ 피아노 조율사

- ___ ⑩ 침술 ___ ⑪ 역학 ___ ⑫ 시계수리/도장
 ___ ⑬ 농·어업 ___ ⑭ 판매업 ___ ⑮ 단순노무직
 ___ ⑯ 단순생산직 ___ ⑰ 성직자 ___ ⑱ 기타()

4. 현 직장의 종업원 규모는?

- ___ ① 4인 이하 ___ ② 5~9인 ___ ③ 10~49인
 ___ ④ 50~299인 ___ ⑤ 300인 이상

5. 귀하께서 다니시는 직장(자영업 포함)의 편의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난
에 답하여 주십시오.

편의시설 항목	설치유무	편의시설 개선필요정도	우선순위
	○ 대체로 설치 △ 부분적 설치 · 설치안된 경우 공란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 항에 모두 V표시하여 주십 시오(불필요한 경우는 X 표)	설치가필요한 순 서대로 번호 3가 지기입
*1. 주출입구 접근로			1순위() 2순위() 3순위()
*2. 장애인용 주차구역			
*3. 주출입구 단차제거			
*4. 출입구(문)			
*5. 복도(유효폭, 손잡이)			
*6. 계단(유효폭, 손잡이)			
*7. 경사로			
*8. 장애인용 화장실			
*9. 승강기/리프트			
*10. 욕실/샤워실			
*11. 비상등(경보등)			
*12. 자동판매기 높이			
*13. 의자/작업대 높이			
14. 장애인용 공중전화			
*15. 점자블럭 ☐			
*16. 점자표지판 ☐			
17. 화장실사용식별램프 ☐			
18. 기숙사/작업장내 상황인식램프 설치 ☐			
19. 청각장애인용 FAX/ 증폭전화기 ☐			
20. 편의증진요원(도우미) 배치			
21. 기타()			

6. 직장까지의 주요 출퇴근 수단은?

- ☐ ① 자택에서 자영업 ☐ ② 혼자걸어서 ☐ ③ 타인의 도움으로 걸어서
☐ ④ 버스 ☐ ⑤ 지하철/전철 ☐ ⑥ 택시 ☐ ⑦ 자가용
☐ ⑧ 오토바이(스쿠터) ☐ ⑨ 전동휠체어 ☐ ⑩ 기타()

7. 직장까지 출퇴근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7-1번으로
☐ ② 없다

7-1.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보행상의 불편(노면, 신호길이 등)해소
☐ ② 직장근처로 이사를 위한 지원
☐ ③ 승용차 구입지원 ☐ ④ 택시이용을 위한 지원
☐ ⑤ 지하철 전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 설치
☐ ⑥ 장애인 승차가능버스의 운용 ☐ ⑦ 전용통근버스 운용
☐ ⑧ 보조요원(도우미)의 지원 ☐ ⑨ 맹인 안내견 지원
☐ ⑩ 기타()

6. 주거시설

1. 귀하께서 살고 계시는 집(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하여 주십시오.

편의시설항목	설치유무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우선순위
	○ 대체로 설치 △ 부분적 설치 · 설치안된 경우공란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 항에 모두 √ 표시하여 주십 시오(불필요한 경우는 ×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 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1순위() 2순위() 3순위()
* 2. 장애인용 주차구역			
* 3. 주출입구 단차제거			
* 4. 출입구(문)			
* 5. 복도(유효폭, 손잡이)			
* 6. 계단(유효폭, 손잡이)			
* 7. 경사로			
* 8. 승강기/리프트			
9. 욕실			
10. 화장실(대변기·세면대)			
11. 부엌설비			
12. 유도벨	☒		
*13. 점자블럭	☒		
14. 착신램프(초인종등)	☒		
15. 경보비상등/진동식식별장치	☒		
16. 문자/중폭전화기	☒		
17. 기타()			

2.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주택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음중 어떤 방안이 바람직하겠습니까? ()

- [illegible]

7. 공공업무시설

* 다음은 귀하가 주로 이용하시는 공공업무시설들의 편의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하여 주십시오.

☐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군·구청 등)

편의시설항목	편의시설 개선필요 정도	우선순위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항에 모두 V표시하여 주십시오(불필요한 경우는 X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1순위() 2순위() 3순위()
* 2. 장애인용 주차구역		
* 3. 주출입구 단차제거		
* 4. 출입구(문)		
* 5. 복도(유효폭, 손잡이)		
* 6. 계단(유효폭, 손잡이)		
* 7. 경사로		
* 8. 장애인용 승강기/리프트		
* 9. 장애인용 화장실		
* 10. 접수대 높이		
11. 장애인용 공중전화		
12. 전용창구		
* 13. 점자표지판 ☐		
* 14. 점자블럭 ☐		
* 15. 비상등(경보등) ☒		
16. 화장실사용식별램프 ☒		
17. 공중FAX/증폭전화기 ☒		
18. 자막안내방송 ☒		
19. 편의증진요원(도우미)배치		
20. 기타()		

8. 근린공공시설

* 다음은 귀하가 주로 이용하시는 근린공공 시설들의 편의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하여 주십시오.

☐ 근린공공시설(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보건(지)소, 전신전화국, 공공도서관)

편의시설항목	편의시설 개선필요 정도	우선순위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항에 모두 √표 시하여 주십시오(불필요한 경우는 ×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 로 번호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1순위() 2순위() 3순위()
* 2. 장애인용 주차구역		
* 3. 주출입구 단차제거		
* 4. 출입구(문)		
* 5. 복도(유효폭, 손잡이)		
* 6. 계단(유효폭, 손잡이)		
* 7. 경사로		
* 8. 장애인용 승강기		
* 9. 장애인용 화장실		
*10. 접수대 높이		
*11. 점자안내판 ☐		
*12. 점자블럭 ☐		
*13. 비상등(경보등) ☐		
14. 자막안내방송 ☐		
15. 화장실사용식별램프 ☐		
16. 공중FAX/증폭전화기 ☐		
17. 장애인용 공중전화		
18. 장애인용 창구		
19. 편의증진요원(도우미) 배치		
20. 기타()		

9. 근린생활시설

* 귀하가 주로 이용하시는 근린시설들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하여 주십시오.

1. 슈퍼마켓, 약국, 이·미용실

편의시설항목	설치유무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우선순위
	○ 대체로 설치 △ 부분적으로 설치 · 설치안된 경우 공란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 항에 모두 V 표시하여 주십 시오(불필요한 경우는 ×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슈퍼마켓
* 2. 장애인용 주차구역			1순위()
* 3. 주출입구 단차제거			2순위()
* 4. 출입구(문)			3순위()
* 5. 계단(유효폭, 손잡이)			
* 6. 경사로			○약국
* 7. 장애인용승강기/리프트			1순위()
* 8. 장애인용 화장실			2순위()
* 9. 점자블럭 ☐			3순위()
*10. 비상등(경보등) ☐			
*11. 통로폭			○이·미용실
*12. 진열대/계산대 높이			1순위()
*13. 자동판매기 높이			2순위()
14. 기타()			3순위()

2. 은행

편의시설항목	설치 유무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우선순위
	○ 대체로 설치 △ 부분적 설치 · 설치안된경우공란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 항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 시오(불필요한 경우는 ×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 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1순위() 2순위() 3순위()
* 2. 장애인용 주차구역			
* 3. 주출입구 단차제거			
* 4. 출입구(문)			
* 5. 계단(유효폭, 손잡이)			
* 6. 경사로			
* 7. 장애인용승강기/리프트			
* 8. 장애인용 화장실			
* 9. 접수대 높이			
10. 장애인용 공중전화			
*11. 점자블럭 ☐			
*12. 점자안내판 ☐			
*13. 비상등(경보등) ☐			
14. 화장실사용 식별램프 ☐			
15. 자막안내방송 ☐			
16.편의증진요원(도우미)배치			
17. 현금입출금기의 주거지 설치			

3. 시장

편의시설항목	설치유무	편의시설개선필요정도	우선순위
	○ 대체로 설치 △부분적 설치 · 설치안된 경우 공란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항 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불필요한 경우는 ×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1순위() 2순위() 3순위()
* 2. 장애인용 주차구역			
* 3. 장애인용 화장실			
* 4. 경사로			
* 5. 유효폭			
* 6. 자동판매기 높이			
7. 장애인용 공중전화			
* 8. 점자블럭 ☒			
* 9. 점자안내판 ☒			
* 10. 비상등(경보등) ☒			
11. 화장실사용식별램프 ☒			
12. 청각장애인용 공중FAX /문자·증폭전화기 ☒			
13. 편의증진요원(도우미) 배치			
14. 기타()			

4. 공중목욕탕

편의시설항목	설치유무	편의시설 개선필요정도	우선순위
	○ 대체로 설치 △ 부분적 설치 · 설치안된 경우 공란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 항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 시오(불필요한 경우는 ×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1순위() 2순위() 3순위()
* 2. 주출입구 단차제거			
* 3. 출입구(문)			
* 4. 계단(유효폭, 손잡이)			
* 5. 복도(유효폭, 손잡이)			
* 6. 장애인용화장실			
* 7. 샤워기/수도꼭지 높이			
* 8. 매표소/판매기 높이			
* 9. 바닥미끄럼방지			
* 10. 점자표지판 ☒			
* 11. 비상등(경보등) ☒			
12. 화장실사용식별램프 ☒			
13. 샤워기 보조손잡이			
14. 기타()			

5. 식당/커피숍

편의시설항목	설치유무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우선순위
	○ 대체로 설치 △ 부분적 설치 · 설치안된 경우 공란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 항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 시오(불필요한 경우는 ×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1순위() 2순위() 3순위()
* 2. 주출입구 단차제거			
* 3. 출입구(문)			
* 4. 화장실(대변기, 세면대)			
* 5. 장애인용 주차장			
* 6. 비상등(경보등) ☒			
7. 화장실사용식별램프 ☒			
8. 공중FAX/중폭전화기 ☒			
9. 점자메뉴판 ☒			
10. 장애인용 공중전화			
11. 장애인 지정좌석			
12. 기타()			

6.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근린시설을 다니는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 ___① 걸어서(휠체어 포함) ___② 마을버스 ___③ 일반버스
 ___④ 택시 ___⑤ 승용차 ___⑥ 오토바이 ___⑦ 전철
 ___⑧ 좌석버스 ___⑨ 자전거 ___⑩ 기타()

10. 종교시설

* 귀하가 주로 이용하시는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들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하여 주십시오(다니는 경우만 해당).

1. 다음중 귀하가 주로 다니는 종교시설은?

___① 교회 ___② 성당 ___③ 사찰 ___④ 기도원 ___⑤ 기타

2.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편의시설항목	설치유무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우선순위
	○ 대체로 설치 △ 부분적 설치 · 설치안된 경우공란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 항에 모두 √표하여 주십시오 (불필요한 경우는 ×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 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1순위() 2순위() 3순위()
* 2. 장애인용 주차구역			
* 3. 주출입구 단체제거			
* 4. 출입구(문)			
* 5. 복도(유효폭, 손잡이)			
* 6. 계단(유효폭, 손잡이)			
* 7. 경사로			
8. 공중전화			
9. 지정좌석			
*10. 장애인용화장실			
*11. 점자블럭 ☐			
*12. 점자표지판 ☐			
*13. 비상등(경보등) ☐			
14. 화장실사용식별램프 ☐			
15. 청각용공중FAX/ 중폭전화기 ☐			
16. 자막안내방송 ☐			
17. 편의증진요원(도우미)배치			
18. 기타()			

11. 사회복지시설

* 귀하가 주로 이용하시는 사회복지시설들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하여 주십시오.

☐ 사회복지시설(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등)

편의시설항목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우선순위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항에 모두 V표시하여 주십시오(불필요한 경우는 X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1순위() 2순위() 3순위()
* 2. 장애인용 주차구역		
* 3. 주출입구 단차제거		
* 4. 복도(유효폭, 손잡이)		
* 5. 계단(유효폭, 손잡이)		
* 6. 경사로		
* 7. 장애인용 화장실		
* 8. 침실/객실		
9. 세면대·식수대 높이		
10. 장애인용 공중전화		
*11. 점자블럭 ☐		
*12. 점자안내판 ☐		
*13. 비상등(경보등) ☐		
14. 화장실사용식별램프 ☐		
15. 청각장애인용 공중 FAX/증폭전화기 ☐		
16. 자막안내방송 ☐		
17. 편의증진요원(도우미)배치		
18. 기타()		

12. 의료시설

* 귀하가 주로 이용하시는 의료시설들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하여 주십시오.

☐ 종합병원, 병·의원, 격리병원 등

☐ 설치유무난에는 병·의원의 편의시설 설치유무만을 조사 기재

편의시설항목	설치유무	편의시설 개선필요정도	우선순위
	○ 대체로 설치 △ 부분적 설치 · 설치안된경우 공란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 항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 시오(불필요한 경우는 ×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 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 종합병원 1순위() 2순위() 3순위()
* 2. 장애인용 주차구역			
* 3. 주출입구 단차제거			
* 4. 출입구(문)			
* 5. 복도(유효폭, 손잡이)			
* 6. 계단(유효폭, 손잡이)			
* 7. 경사로			
* 8. 장애인용 승강기			
* 9. 장애인용 화장실			
*10. 욕실			
*11. 샤워실/탈의실			○ 병의원 1순위() 2순위() 3순위()
*12. 접수대/안내대			
*13. 판매기/음료대			
14. 장애인용 공중전화			
*15. 점자블럭 ☒			
*16. 점자안내판 ☒			
*17. 비상등(경보등) ☒			
18. 화장실사용식별램프 ☒			
19. 청각장애인용 공중 FAX/증폭전화기 ☒			
20. 자막안내방송 ☒			
21. 편의증진요원(도우미) 배치			
22. 기타()			

13. 관람집회 및 전시시설

* 귀하가 주로 이용하시는 관람집회 및 전시시설들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하여 주십시오.

☐ 관람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시설(박물관/미술관/기념관)

편의시설항목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우선순위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항에 모두 √ 표시하여 주십시오(불필요한 경우는 ×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 관람집회시설
* 2. 장애인용 주차구역		
* 3. 주출입구 단차체거		
* 4. 출입구(문)		
* 5. 복도(유효폭, 손잡이)		
* 6. 계단(유효폭, 손잡이)		
* 7. 경사로		
* 8. 승강기/리프트		
9. 장애인용 공중전화		
*10. 매표소/판매기/음료대		
*11. 장애인용 화장실		
*12. 지정관람석		
*13. 점자표지판 ☐		○ 전시시설
14. 점자블럭 ☐		
*15. 비상등(경보등) ☐		
16. 화장실사용식별램프 ☐		
17. 청각장애인용 공중 FAX/중폭전화기 ☐		
18. 자막안내방송 ☐		
19. 편의증진요원(도우미) 배치		
20. 기타()		

14. 운동시설

* 귀하가 주로 이용하시는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 운동시설내 편의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하여 주십시오.

1. 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의 건물 등)

편의시설항목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우선순위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항에 모두 √ 표시하여 주십시오(불필요한 경우는 ×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1순위() 2순위() 3순위()
* 2. 장애인용 주차구역		
* 3. 주출입구 단차체거		
* 4. 출입구(문)		
* 5. 계단(유효폭, 손잡이)		
* 6. 경사로		
* 7. 승강기/리프트		
8. 장애인용 공중전화		
* 9. 매표소/판매기/음료대		
*10. 장애인용 화장실		
*11. 점자표지판	☒	
*12. 점자블럭	☒	
*13. 비상등(경보등)	☒	
14. 화장실사용식별램프	☒	
15. 청각장애인용 공중 FAX/증폭전화기	☒	
16. 기타()		

2. 운동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어떤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일반운동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___ ② 장애인 전용 운동시설(체육관)을 별도로 설치
 ___ ③ 기타()

15. 공원 및 유원지

* 귀하가 주로 이용하시는 공원 및 유원지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하여 주십시오.

☐ 공원,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편의시설항목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우선순위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항에 모두 √ 표시하여 주십시오(불필요한 경우는 ×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 공원/유원지 1순위() 2순위() 3순위()
* 2. 장애인용 주차구역		
* 3. 주출입구 단차체거		
* 4. 출입구(문)		
* 5. 복도(유효폭, 손잡이)		
* 6. 계단(유효폭, 손잡이)		
* 7. 경사로		
* 8. 승강기/리프트		
9. 장애인용 공중전화		
*10.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동물원/식물원 1순위() 2순위() 3순위()
*11. 장애인용 화장실		
*12. 점자표지판 ☐		
13. 점자블럭 ☐		
*14. 비상등(경보등) ☐		
*15. 화장실사용식별램 ☐		
16. 청각장애인용 공중 FAX/증폭전화기 ☐		
17. 자막안내방송 ☐		
18. 편의증진요원(도우미) 배치		
19. 기타()		

16.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 귀하가 주로 이용하시는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들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하여 주십시오.

☐ 백화점,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등

편의시설항목	편의시설 개선 필요정도	우선순위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항에 모두 √ 표시하여 주십시오(불필요한 경우는 ×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 판매시설(백화점) 1순위() 2순위() 3순위()
* 2. 장애인용 주차구역		
* 3. 주출입구 단차제거		
* 4. 출입구(문)		
* 5. 복도(유효폭, 손잡이)		
* 6. 계단(유효폭, 손잡이)		
* 7. 승강기/에스컬레이터		
* 8. 장애인용 화장실		
9. 장애인용 공중전화		
*10. 접수대/판매대		
*11. 객실/침실		○ 숙박시설 (호텔/여관) 1순위() 2순위() 3순위()
*12. 욕실		
*13. 점자블럭 ☐		
*14. 점자표지판 ☐		
15. 자막안내방송 ☐		
*16. 비상등(경보등) ☐		
17. 화장실사용식별램프 ☐		
18. 청각장애인용 공중 FAX/중폭전화기 ☐		
19. 편의증진요원(도우미)배치		
20. 기타()		

17. 교육연구시설

* 귀하가 주로 이용하시는 교육연구시설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답하여 주십시오.

1. 학교: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만 해당

편의시설항목	설치정도	편의시설 개선정도	우선순위
	○ 대체로 설치 △부분적 설치 · 설치안된 경우공란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 항에 모두 V표시하여 주십 시오(불필요한 경우는 X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 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1순위() 2순위() 3순위()
* 2. 장애인용 주차구역			
* 3. 주출입구 단차제거			
* 4. 출입구(문)			
* 5. 복도(유효폭, 손잡이)			
* 6. 계단(유효폭, 손잡이)			
* 7. 경사로			
* 8. 승강기/리프트			
* 9. 장애인용 화장실			
10. 장애인용 공중전화			
*11. 접수대/작업대			
12. 자막안내방송 ☐			
*13. 점자블럭 ☐			
*14. 점자표지판 ☐			
*15. 비상등(경보등) ☐			
16. 화장실사용식별램프 ☐			
17. 청각장애인용 공중 FAX/증폭전화기 ☐			
18. 편의증진요원(도우미) 배치			
19. 기타()			

2. 학원(직업훈련원 포함): 학원이나 직업훈련원에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

편의시설항목	설치유무	편의시설 개선정도	우선순위
	○ 대체로 설치 △ 부분적 설치 · 설치안된 경우공란	시설설치가 매우 필요한 문 항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 시오(불필요한 경우는 ×표)	설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 를 3가지 기입
* 1. 주출입구 접근로			1순위() 2순위() 3순위()
* 2. 장애인용 주차구역			
* 3. 주출입구 단차제거			
* 4. 출입구(문)			
* 5. 복도(유효폭, 손잡이)			
* 6. 계단(유효폭, 손잡이)			
* 7. 경사로			
* 8. 승강기/리프트			
* 9. 장애인용 화장실			
*10. 접수대/작업대			
11. 장애인용 공중전화			
*12. 점자블럭 ☒			
*13. 점자표지판 ☒			
14. 화장실사용식별램프 ☒			
*15. 비상등(경보등) ☒			
16. 청각장애인용 공중 FAX/증폭전화기 ☒			
17. 자막안내방송 ☒			
18. 편의증진요원(도우미) 배치			
19. 기타()			

3. 집에서 학교까지의 교통수단은?

- ___① 걸어서 ___② 스쿨버스 ___③ 일반버스 ___④ 택시
 ___⑤ 승용차 ___⑥ 오토바이 ___⑦ 전철 ___⑧ 스쿠터
 ___⑨휠체어(전동휠체어) ___⑩ 기타()

18. 종합: 시설확충방안

1. 우리나라 각종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①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___②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전시효과에 불과하다
 ___③ 일부 시설은 도움이 된다
 ___④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다 ___⑤ 기타 ()

2. 다음 시설 중 편의시설이 가장 잘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어느 것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1, 2, 3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illegible]

3. 다음의 시설 중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장 필요한 시설은 어느 것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1, 2, 3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illegible]

4.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____ ① 편의시설 설치 건물주에 대한 자금 융자·세제 감면
 ____ ② 장애인 거주주택의 시설·설치·개조의 자금지원·융자
 ____ ③ 장애인도우미 등 편의증진요원 배치
 ____ ④ 일반인·건물주에 대한 홍보와 교육
 ____ ⑤ 장애인 전용시설(슈퍼, 병원, 약국 등)제도의 도입
 ____ ⑥ 기타(구체적으로)

5. 정부에서는 ‘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주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편의시설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 이 기금의 용도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 ____ 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주에 대한 자금용자
 ____ ② 장애인에 대한 주택개조비 용자
 ____ ③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
 ____ ④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____ ⑤ 기타(구체적으로)